

주요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

2013. 12

세 법 연 구 센 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박 명 호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최 정 욱 공인회계사

정 훈 공인회계사

목 차

I. 서론	7
II.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10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세부내용	10
가. 신고의무자	10
나. 신고대상	14
다. 미신고 및 과소신고 등에 따른 제재	18
2.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	21
III. 주요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24
1. 미국	24
가. 납세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24
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하의 해외자산 신고의무	39
다. FBAR과 FATCA에 따른 Form 8938의 비교	45
2. 일본	48
가. 신고의무자	48
나. 신고대상	49
다. 미신고 및 과소신고 등에 따른 제재	58
3. 호주	59
가. 신고의무자	60
나. 신고대상	61
다. 미신고 및 과소신고 등에 따른 제재	63
4. 아일랜드	64

가. 신고의무자	64
나. 신고대상	66
다. 미신고 및 과소신고 등에 따른 제재	70
5. 프랑스	71
가. 신고의무자	72
나. 신고대상	72
다. 미신고 및 과소신고 등에 따른 제재	73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74
1. 국제비교	74
가. 신고의무자	74
나. 신고대상	77
다. 미신고 및 과소신고 등에 따른 제재	80
라. 신고서식의 비교	85
2. 시사점	96
가. 신고의무 기준금액 적용 방법의 강화	96
나. 신고의무 기준금액의 적정성 고려	97
다. 신고대상자산의 확대 고려	98
라. 성실신고 유도방안 도입	99
마. 신고의무 해태에 대한 제재수위의 조정	100
바. 납세자의 정보제공방식(서식의 비교)	101
참고문헌	103
부 록	105

표 목 차

〈표 II -1〉 신고의무자 범위의 축소.....	12
〈표 II -2〉 신고면제자의 축소.....	14
〈표 II -3〉 신고대상계좌의 확대.....	15
〈표 II -4〉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기재사항.....	17
〈표 II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재사항.....	20
〈표 II -6〉 신고포상금.....	21
〈표 II -7〉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21
〈표 II -8〉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금액대별 현황.....	22
〈표 II -9〉 해외금융계좌 유형별 현황.....	22
〈표 II -10〉 해외금융계좌 국가별 분포.....	23
〈표 III -1〉 FBAR 신고서 기재사항.....	35
〈표 III -2〉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계좌기록 보관의무 위반 시 주요 제재사항.....	39
〈표 III -3〉 해외금융자산의 종류별 신고대상 여부 구분.....	42
〈표 III -4〉 Form 8938 신고서 기재사항.....	44
〈표 III -5〉 FBAR제도와 FATCA의 Form 8938의 기본사항 비교.....	46
〈표 III -6〉 FBAR과 FATCA의 Form 8938의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및 자산 비교.....	47
〈표 III -7〉 국외재산의 소재지 판정기준.....	51
〈표 III -8〉 유가증권의 소재지판정 예시.....	53
〈표 III -9〉 견적가격의 예시.....	54
〈표 III -10〉 국외재산조서의 기재사항.....	58
〈표 III -11〉 확장소득신고서 서식.....	61

〈표 IV-1〉 신고의무자의 비교.....	77
〈표 IV-2〉 신고대상자산의 비교.....	80
〈표 IV-3〉 제재사항의 비교.....	84
〈표 IV-4〉 제재사항 세부내역 비교.....	84
〈표 IV-5〉 신고서 기재사항 비교.....	90
〈표 IV-6〉 우리나라의 신고사항을 주요 국가에서도 요구하는지 여부.....	95

I. 서론

-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분야의 재정수요는 크게 증가한 반면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세수입은 정체되어 추가적인 세원 발굴이 필요한 상태임
 - 2013년 국세수입은 예산 210.4조원 대비 8.5조원 부족한 201.9조원, 2012년 예산 205.8조원 대비 2.8조원 부족한 203.0조원임¹⁾
 - 2013년 국세수입의 부족 원인은 경기 침체에 따른 법인세 세수감소와 2013년 자산시장 침체에 따른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의 부진에 기인
 - 관리재정수지의 경우 2008년 이후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13년 11월 누적 관리재정수지는 15.6조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년 동기 대비 9.4조원의 적자폭이 증가
 -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금융위기인 2009년 -4.1% 이후 매년 -1%대를 기록하고 있음
 - 2013년 11월 국가채무는 486.5조원으로 전년 말 443.1조원에서 43.3조원 증가
 -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08년 30.1%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말 기준 36.2%로 예상됨

- 이에 우리나라 과세당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원확보와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무조사 전문인력을 증원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 중점 관리 대상을 “대규모납세자,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탈세자, 지능적 역외탈세자”로 정하였음

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 2014.2.10.; “201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 마감”, 2013.2.8.

-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에서는 대재산가의 역외탈세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조세피난처 지역을 경유하는 등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져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정보의 비대칭이 현저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음의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논의한 바 있음²⁾
 - 고액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명단공개, 형사처벌제도의 적극적 홍보
 - 조세피난처 재산은닉, 해외투자를 가장한 지능적인 역외탈세자에 대한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역외정보활동 및 주요국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역외탈세 대응의 지속

- 한편, 역외탈세와 관련된 과세당국의 노력은 최근 다른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각 국가의 과세당국은 자체적인 역외세원정보의 획득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한 세원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과세당국은 외국의 과세당국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세원자료를 수집하는 노력과 함께 역외탈세 방지 및 해외금융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2011년 6월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시행하였음
 - 동 신고제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외금융회사를 통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에 그 계좌정보를 과세당국에 신고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앞서 시행한 미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및 최근 제도를 도입한 일본³⁾의 제도는 우리나라에 비해 신고대상의 범위가 넓고, 미신고나 허위신고시 제재수단은 더 강력한 것으로 알려짐⁴⁾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제도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신고의

2) 국세청 보도자료, “국세청, 첫「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개최”, 2013.4.25.

3)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2013.

4) 중앙일보, “역외탈세 막는다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선진국과 비교하니...”, 2013.5.29.

무자 및 신고대상 자산의 범위, 그리고 미신고나 허위신고시 제재수단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개선방안을 살펴봄

- 최근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을 도입하는 등 역외세원정보 획득에 가장 적극적인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과 FATCA하의 해외금융자산 신고제도(Form 8938)의 현황을 상세히 검토함
- 한편, 우리보다 늦게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신고대상 자산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의 제도를 살펴보고, 호주, 아일랜드, 프랑스의 제도도 함께 조사함

□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제도를 소개한 제Ⅱ장부터 국제비교와 시사점을 제시한 제Ⅳ장까지 3개의 장으로 구성됨

-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현황 및 도입 그리고 법 개정사항을 살펴봄
- 제Ⅲ장에서는 미국, 일본, 호주, 아일랜드, 프랑스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조사함
-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조사대상국가들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신고의무자, 신고대상 자산의 범위 및 미신고 및 허위신고시 제재사항에 대해 비교·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함

II.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프랑스·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해외 탈루세원의 회복과 해외유출자본의 회수·유입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하였음⁵⁾
- 우리나라에서도 역외세원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고 탈루된 세원을 파악하여 해외로 부당 유출된 자본을 정상적인 과세권 내로 유인하고,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탈루세원을 사전에 억제하여 역외탈세 방지와 과세형평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하였음⁶⁾
-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2010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신설되었으며, 2010년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를 첫 신고 대상으로 하였음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세부내용

가. 신고의무자

-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⁷⁾나 및 내국법인 중 해당 연도

5) 국세청,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2012.5.

6) 기획재정부, 『2010 간추린 개정세법』, 2011.6; 국세청,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2012.5.

7) 거주자에 대한 판정은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居所(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居所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

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법에서 정하는 내용을 신고하여야 함⁸⁾

-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대상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함⁹⁾
-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를 의미함
 -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포함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함
-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의미함

□ 우리나라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1년에는 해당 연도 중에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잔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의무를 부여하였음

□ 이후 우리나라는 세법 개정을 통해 신고의무자의 신고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¹⁰⁾로 2014년 신고분부터는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개정 2010.2.18.>
-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1항

10) 기획재정부, 『2012 간추린 개정세법』, 2013.3.

〈표 II-1〉 신고의무자 범위의 축소

종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자·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연중 최고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좌내역을 신고하여야 함 - 연중 최고잔액 계산기준: 계좌별 1일 보유계좌잔액을 합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최고잔액 계산기준 변경: 계좌별 월말계좌잔액을 합산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2 간추린 개정세법』, 2013. 3

- 신고의무자의 매월 말일 보유계좌잔액은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자산 구분별로 산정한 금액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 후 합산하고, 합산금액으로 신고의무 여부를 판정함
- 현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된 예탁증서: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에 말일의 최종가격을 곱한 금액
 - 증권시장에 상장된 채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에 말일의 최종가격을 곱한 금액
 - 집합투자증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에 말일의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
 - 보험상품: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 이때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거래실적이 없는 계좌, 연도 중 해지된 계좌 등 해당 연도 전체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함
- 한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해당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각각 신고의무를 가짐¹¹⁾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란 실지명의로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를 의미하고,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을 의미함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 실질적 소유자란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의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임¹²⁾
- 다만, 법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법에서 정한 투자중개업자인 경우는 실질적 소유자에서 제외함
-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을 각자의 지분율과 관계없이 잔액 전부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담함¹³⁾

□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자는 다음과 같음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금융회사
- 공동명의자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공동명의자의 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함에 따라 다른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명의자¹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
-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외국환중개회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 한편, 효과적인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신고의무면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축소된 바

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4항

13) 국세청,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2012.5.

14) 국세청,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2012.5.

있음

〈표 II-2〉 신고면제자의 축소

종전 면제자	개정
○ 국내 또는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	○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외국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는 제외 - 등록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 제1항에 따른 것을 의미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2 간추린 개정세법』, 2013. 3

나. 신고대상

1) 신고대상계좌

- 우리나라의 신고대상계좌는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서 구체적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음
 -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 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 그 밖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

- 한편, 신고대상계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도입 초기에 비하면 그 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현재는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모든 금융자산 관련 계좌가 신고대상계좌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됨

〈표 II-3〉 신고대상계좌의 확대

종전 신고대상계좌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다음 계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업무 관련 개설 계좌 - 증권거래 관련 개설 계좌 - (신설)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다음 계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좌동) - 채권, 파생상품, 보험 등 계좌 - 그 밖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

자료: 기획재정부, 『2012 간추린 개정세법』, 2013. 3

2)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기재사항

-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서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해외금융계좌 보유 현황,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신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여권번호를 기재하도록 함
 -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함
 - 신고인이 개인 거주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를 기재함
 - 거주자의 성명은 국문과 영문을 모두 기재하는데, 영문 성명은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동일해야 함
 - 신고인이 법인이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기재하도록 함

- 해외금융계좌 보유 현황은 총신고계좌 수, 보유계좌 잔액의 연중 매월 말일의 최고금액의 기준일과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기준일이란 보유 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의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했을 때 가장 큰 금액이 되는 날을 기재하도록 함
 - 금액은 원단위로 기재하는데, 기간의 이자 등이 실제 해당계좌로 지급되지 않은 경

우에는 합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해외금융계좌 정보는 해외금융계좌별 명세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계좌 관련자 유무 및 관련 정보, 금융회사명, 계좌종류, 계좌번호, 표시통화, 계좌 명의자, 현지기업 고유번호, 기준일 잔액(원화, 외화), 개설일, 해지일, 금융회사 소재지(국가, 지역, 도시, 상세주소)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음
 - 계좌 관련자가 있거나, 공동명의 계좌이거나,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별지 제21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에 관련 내용을 따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에는 해당 계좌가 공동명의인지, 아니면 신고인이 계좌 명의자이고 실소유자 정보를 기재하는 것인지, 혹은 신고인이 실소유자이고 계좌 명의자의 정보를 기재하는지 구분하도록 하고 있음
 - 관련자에 대해서는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표시 통화는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예시: 미국 USD)로 작성함
 - 현지기업 고유번호는 세무서장이 해외현지기업(해외지점, 연락사무소 등)에 부여한 번호를 의미함
 - 해당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의 소재지를 국가, 지역[주(州), 성(省) 등], 도시, 그 밖의 상세 주소로 나누어 영문으로 작성하며, 영문으로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한글로 작성함

〈표 II-4〉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기재사항

구분	내용	세부내용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 신고인 인적사항	○ 성명(법인명), 주민번호(사업자등록번호), 여권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 해외금융계좌 보유 현황	○ 총신고계좌 수, 보유계좌 잔액의 연중 매월 말일의 최고금액 및 그 기준일
	○ 내국인과 특정의 국법인의 특수관계인 판정기준	○ 주식소유(내국인과 비거주자의 직·간접 비율) ○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지배관계가 있는지 체크
	○ 해외 금융 계좌별 명세	○ 보유계좌 일련번호 부여후 기재 ○ 계좌관련자 정보 ○ 금융회사명, 계좌종류, 계좌번호, 표시 통화, 계좌 명의자, 현지기업 고유번호, 기준일 잔액(원화, 외화), 개설일, 해지일, 금융회사 소재지(국가, 지역, 도시, 상세주소)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	○ 관련자별 정보	○ 관련 계좌번호의 일련번호 기재 ○ 계좌 관련자 유형구분 - 공동명의자인지, 아니면 신고인이 실소유자 혹은 명의자인지 여부 ○ 관련자 정보: 성명(법인명), 주민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3)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

- 매년 6월 30일인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자나 과소신고한 자는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 무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한 시점에 따라 과태료가 경감될 수 있음
 - 과태료에 대해서는 “다. 미신고 및 과소신고 등에 따른 제재”에서 기술함

4) 신고위반 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 거주자인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고의무자에게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음

- 소명을 요구받은 신고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하며, 자료 수집·작성에 상당시간이 걸리는 경우를 사유로 한 차례에 걸쳐 60일을 연장할 수 있음
 - 신고의무자가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됨
 - 과태료에 대해서는 “다. 미신고 및 과소신고 등에 따른 제재”에서 기술함

다. 미신고 및 과소신고 등에 따른 제재

- 우리나라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미신고 및 과소신고에 대한 제재사항과 과세관청의 소명요구에 대한 불응 또는 허위소명시의 제재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납세자들의 자진 신고를 독려하기 위하여 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안에 수정신고 및 기한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경감하고 있음
- 한편, 「국세기본법」에서도 성실한 신고를 독려하고 역외세원관리를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정보제공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와 미신고 및 과소신고자를 고액상습제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법을 신설하였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미신고금액(과소신고금액)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음
 - 미신고 및 과소신고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의 4%
 - 미신고 및 과소신고금액이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경우: 8천만원 + 20억 초과금액의 7%
 - 미신고 및 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 초과인 경우: 2억 9천만원 + 50억 초과금액의 10%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에 대해서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한 일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경감함
 -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해당 과태료의 50%
 -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 해당 과태료의 20%
 -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 해당 과태료의 10%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에 대해서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 기한 후 신고한 일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경감함
 -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해당 과태료의 50%
 -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해당 과태료의 20%

- 한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와 관련해서 시행령에서는 보유계좌잔액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그리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서는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위반 금액의 출처 소명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거짓소명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 한편, 우리나라는 제재 강화를 통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¹⁵⁾, 미신고 및 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2013년 신고분부터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고¹⁶⁾, 2014년에 신고분부터는 형사처벌을 도입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가 가능하도록¹⁷⁾ 하였음

15) 기획재정부, 『2012 간추린 개정세법』, 2013. 3

16)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제1항

1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2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됨
 -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음
 - 내국법인의 대표자,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고, 그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함
 - 동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2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 앞서 설명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되지 아니함

- 위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관련된 제재사항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II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재사항

미신고 과소신고금액	국조법 제35조 제1항 과태료		국조법 제34조의2 제1항 벌칙		비고
	과태료	수정신고 등 경감적용 여부	벌칙	수정신고 등 경감적용 여부	
20억원 이하	4%	수정 및 기한후신고시 신고일자별 경감률 적용	미적용	-	34조의2 적용시 35조 적용안함
50억원 이하	7%		미적용	-	
50억원 초과	10%		전체금액의 10%, 2년 이하 징역형	미적용	

- 한편,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제1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의 인적 사항, 신고의무 위반금액은 고액상습체납자와 함께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와는 별개로 우리나라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정보제공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금액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함
 - 다만, 징역형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과태료금액을 “2억 9천만원 + 해당 금액 중 5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보고 신고포상금을 산정함

〈표 II-6〉 신고포상금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	지급률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1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원 초과	6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자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4 제15항

2.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

- 2011년 6월 해외금융계좌의 첫 신고 이후 계속적으로 신고인원 및 신고금액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신고인원은 2011년 525명 대비 2013년도에 약 29%가 증가한 678명으로 나타남
 - 신고금액은 2011년 11.5조원 대비 2013년도에 약 98%가 증가한 22.8조원이 신고됨

〈표 II-7〉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단위: 명, 건, 조원)

구분	2013년			2012년			2011년		
	인원수	계좌수	금액	인원수	계좌수	금액	인원수	계좌수	금액
개인	310	1,124	2.5	302	1,059	2.1	211	768	10.5
법인	368	5,594	20.3	350	4,890	16.5	314	4,463	1.0

자료: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1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및 미신고자 점검 계획”, 2013.8.20. 재구성.

- 2013년 개인은 20억원 이하의 신고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법인은 50억원 초과 신고건수가 가장 많으며 해당 고액신고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음
 - 50억원 초과 신고자의 수는 2012년 대비 개인이 13%, 법인이 17% 증가하여 전체 신고자 수의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표 II-8〉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금액대별 현황

(단위: 명)

구분	개인		법인	
	2013년	2012년	2013년	2012년
20억 이하	136	144	88	85
20억 ~ 50억	96	89	81	95
50억 초과	78	69	199	170
합계	310	302	368	350

자료: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1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및 미신고자 점검 계획”, 2013.8.20. 등의 보도참고자료 재구성.

- 계좌 유형별로는 금액기준으로 2011년 주식이 신고금액 2.5조원에 비해 2013년 10.6조원으로 약 324% 증가함

〈표 II-9〉 해외금융계좌 유형별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13		2012		2011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주식	10.6	46.6	9.2	49.4	2.5	21.7
예금	11.6	51.0	9.1	48.9	9.0	78.3
기타	0.6	2.4	0.3	1.7		
합계	22.8	100.0	18.6	100.0	11.5	100.0

자료: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1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및 미신고자 점검 계획”, 2013.8.20. 등의 보도참고자료 재구성.

- 계좌의 국가별 분포는 개인과 법인이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개인의 경우 미국이 가장 많은 개인이 신고한 국가였으며 2011년에 미국에서 2012년부터는 일본에 가장 많은 금액이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법인의 경우 아랍에미리트가 가장 많은 법인이 신고한 국가였으며 2011년에 말레이시아에서 2012년부터는 일본에 가장 많은 금액이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신고 시 OECD 조세피난처 지정 이력이 있는 국가 중 13개국에서 총 789개 계좌가 신고되었으며 총신고금액은 2.5조원에 달함
 - 국세청에서는 싱가포르, 바레인, 스위스, 필리핀, 벨기에가 OECD 조세피난처 지정 이력이 있는 국가 중 신고금액 상위 5개국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음

〈표 II-10〉 해외금융계좌 국가별 분포

(단위: 명, 개, 억원)

구분	2013		2012		2011	
	국가	인원수	국가	인원수	국가	계좌의 수
개인	미국	158	미국	144	미국	408
	홍콩	43	홍콩	36	캐나다	68
	싱가포르	34	일본	34	일본	63
	일본	32	싱가포르	29	홍콩	59
	중국	25	중국	21	싱가포르	48
법인	아랍에미리트	99	아랍에미리트	87	아랍에미리트	405
	중국	98	중국	82	베트남	389
	미국	74	미국	73	중국	364
	일본	71	일본	70	미국	295
	베트남, 홍콩	68	베트남	63	일본	275
구분	2013		2012		2011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개인	일본	11,387	일본	9,188	미국	4,973
	미국	6,582	미국	5,680	싱가포르	1,509
	싱가포르	1,653	싱가포르	1,465	일본	795
	홍콩	1,546	스위스	1,003	홍콩	653
	스위스	968	홍콩	943	캐나다	402
법인	일본	60,417	일본	52,234	말레이시아	17,773
	미국	24,248	말레이시아	15,361	아랍에미리트	14,448
	중국	16,910	미국	14,389	싱가포르	12,339
	싱가포르	16,904	싱가포르	13,518	미국	7,917
	아랍에미리트	15,655	아랍에미리트	11,517	영국	6,758

자료: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1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및 미신고자 점검 계획”, 2013.8.20. 등의 보도참고자료 재구성.

Ⅲ. 주요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1. 미국

- 미국의 경우 해외금융정보에 대하여 납세자의 정기적인 신고제도를 통한 해외금융계좌 정보의 수집과 그간에 누락한 해외소득 신고를 정해진 기간에 신고하는 경우 관련 과태료 등을 사면해 주는 비정기적인 신고기간제도를 같이 운영할 뿐만 아니라, 해외금융 자산에 대해서도 납세자에게 보고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음
 - 본 연구는 정기적인 납세자의 신고의무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함¹⁸⁾

가. 납세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1) FBAR의 연혁¹⁹⁾

- 미국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1970년에 신설된 은행비밀보호법(The Bank Secrecy Act)에 기인함

18) 비정기적인 신고기간제도에 대해서는 홍범교·구자은·이형민, 『역외소득에 대한 자발적 신고제도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1.9를 참조하기 바람

19)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연혁은 다음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음

1. Jennifer E. Eller and Michael P. Kreps, "Foreign Account Reporting for Retirement Plans," *Journal of Retirement Planning*, 2010. 2
2. Bradley J. Bondi, "Don't Tread on Me: Has the United States Government's Quest for Customer Records from UBS Sounded the Death Knell for Swiss Bank Secrecy Laws," 30 *Nw. J. Int'l L. & Bus.* 1 (2010)
3. 이은미, 「역외자산의 정보수집 및 정보교환제도에 관한 고찰」, 『조세연구』 제11-3집, 2011.12.
4. 강남규,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FBAR)의 본격적인 시행과 최근 동향」, 『울촌 뉴스레터』, 법무법인 울촌, 2009. 11
5. 홍범교·구자은·마정화,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조세행정상 역외금융정보 확보제도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9.12

- 동법은 금융범죄 예방이 주된 목적으로 재무장관은 미국 거주자(resident)나 시민권자(citizen), 개인(person) 그리고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해외 금융기관(foreign financial agency)과 거래하는 등의 경우 기록을 유지하고 신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²⁰⁾

- 은행비밀보호법이 통과된 직후 미 재무부는 해외의 은행, 증권 기타 금융계좌를 보유한 자에게 매년 국세청에 관련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시행령(regulations)을 공포함

- 그러나 미 재무부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 자 중 20%만이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²¹⁾

- 한편, 2001년 발생한 9·11테러 이후 미국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자금세탁(money laundering)과 해외 절세 방안의 남용(abusive foreign tax schemes)의 방지를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재조명받음
 - 이와 관련하여 2001년 PATRIOT ACT(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에서는 미국 재무부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한 신고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음

- 이후 2003년 1월 과거에 미신고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경우 관련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한시적인 신고기간제도를 운영함
 -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1,299명이 신고를 하였다고 함²²⁾

- 또한 2003년 4월 FBAR에 대한 집행과 관리의 주된 권한을 국세청이 가지게 됨

20) Pub. L. No. 91-508(1970); 31 U.S.C. § 5314(a)

21) US Treasury Department, A REPORT TO CONGRESS IN ACCORDANCE WITH §361(b) OF THE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 April 26, 2002, Treasury Report.

22) 홍범교·구자은·마정화,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조세행정상 역외금융정보 확보제도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9.12 재인용

- 과거 FBAR에 대한 집행과 관리의 권한은 재무부 내의 금융범죄처벌기구(The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와 국세청에서 나누어서 가지고 있었음
- 동 조치를 통해 미 국세청 내에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였고, 이후 미 국세청이 납세자에 대한 FBAR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됨
 - American Jobs Creation Act: 2004년 고의성 여부를 불문하고 FBAR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의성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부담시키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
 - FBAR에 대한 홍보: 2007년 국세청 National Phone Forum에서 FBAR를 주제에 포함하는 등 세무전문가와 일반 납세자를 상대로 한 지속적인 홍보를 수행함
- 이후 국세청은 2008년 발생한 UBS²³⁾ 사건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성공적으로 수집하였고, 탈세혐의자에 대한 징역형과 가택구금형을 선고받게 하였는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세청에서는 FBAR에 따른 자발적 신고를 대대적으로 권유하게 됨
- UBS 사건의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07년 캘리포니아의 억만장자 Igor Olenicoff가 자신의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하여 미국 내에서 세금 부정사건으로 인해 유죄를 인정하였음
 - 동 해외금융계좌는 UBS의 PB인 Bradley Birkenfeld에 의해 관리되던 계좌였는데, 2008년 4월 미 국세청은 이와 관련된 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토대로 Birkenfeld가 탈세를 공모했다는 이유로 기소하였음
 - 이후 2008년 6월 Birkenfeld는 유죄를 인정하고, 형의 감소를 조건으로 미국 검찰(United States prosecutors)에 협조하기로 합의함
 - Birkenfeld가 제공한 정보를 통해 미국 검찰은 스위스에 있는 UBS를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방향을 선회함
 - 2008년 7월 1일 플로리다 지방 법원(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Florida)은 해외에 계좌를 유지하고 있는 19,000명의 미국 거

23) UBS는 전세계 50개국에서 62,000여 명의 인원이 종사하고 있는 국제적 금융기업임.

주자의 스위스 은행의 정보를 찾기 위해 미 국세청이 UBS를 소환하는 것을 허용하였음

– 당시 법원은 국세청이 UBS에 대하여 John Doe summons²⁴⁾ 교부를 허용함

○ 이에 스위스 법무부(The Swiss Federal Office of Justice)는 동 소환에 응할 경우 UBS는 스위스 은행법을 위반하게 될 수 있고, 스위스 정부당국의 지시를 기다려야 한다고 밝힘²⁵⁾

○ 이와 관련하여 2008년 7월 17일 미국 상원의 조사위원회(the Permanent Subcommittee on Investigations)에서 글로벌 조세피난처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함

○ 한편, 미 검찰은 UBS의 경영진과 회사 자체에 대한 형사고발 등의 움직임을 보였음
– 증언을 요청받은 사람 중 스위스 UBS의 임원이자 USB의 북미 PB를 총괄하던 Martin Liechti는 2008년 4월 스위스에서 남아메리카로 여행을 하던 중 마이애미 공항에서 구금되었고, 그는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의 거부²⁶⁾한 바 있으며, 2008년 8월에 스위스로 돌아가는 것이 허용되었음

– 이와 대조적으로 UBS의 글로벌 자산 관리 및 비즈니스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마크 브랜슨은 역외탈세를 저지른 클라이언트를 식별하기 위해 미국과 스위스 당국에 협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2008년 11월 연방 검찰은 마이애미에서 Raoul Weil(USB의 국제 비즈니스와 전 세계 PB를 총괄하는 CEO)을 역외탈세구조를 만들고, 해외금융계좌를 숨긴 미국의 납세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기소함

○ 이후 2009년 8월 19일에 스위스 UBS는 미 과세당국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4,450명의 미국 거주자의 이름을 제출하되 벌금을 면제한다는 합의를 도출하였음

○ 이에 UBS은행 계좌 보유자들이 스위스 법원에 U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24) IRS 웹사이트(http://www.irs.gov/irm/part25/irm_25-005-007.html)상에서는 조사 등을 통해서도 납세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발부되는 소환장으로 설명하고 있음

25) James Nason, a spokesman for the Swiss Bankers Association, said, “UBS itself cannot decide to hand over client data because then it would be violating Swiss law” and that any Swiss bank “waits for instructions from the Swiss authorities.” Nason added, “Switzerland doesn’t allow fishing expeditions.” Bradley J. Bondi, Don’t Tread on Me: Has the United States Government’s Quest for Customer Records from UBS Sounded the Death Knell for Swiss Bank Secrecy Laws, 30 Nw. J. Int’l L. & Bus. 1(2010)의 주석 47번 재인용

26) 미국 수정헌법 제5조(Fifth Amendment right)

2010년 1월에 위의 합의는 조세조약상 내용이 없으므로 관련 정보를 미국에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함

- 이에 스위스 정부와 미국은 조세조약에 대한 새로운 의정서를 체결하고, 스위스 의회에서 2010년 6월 스위스 의회에서 동 의정서가 체결되었음
- 이를 계기로 2010년 8월 스위스 정부는 4,450명의 미국 거주자의 계좌정보를 미국에 제공하였음

2) FBAR의 세부내용²⁷⁾

가) 신고의무자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를 매년 1회 국세청에 신고하여야함
 - 적어도 하나 이상의 해외금융계좌(financial account located outside of the United States)에 대한 재무적인 지분(financial interest)을 가지고 있거나 서명 권한(signature authority)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the U.S. person)
 - 그 미국인의 해외금융계좌들의 잔액의 합계가 보고대상 기간 중 1만달러를 넘는 순간이 있는 경우

(1) 미국인의 의미

- 여기서 미국인(the U.S. person)이라 함은 다음을 모두 포함함²⁸⁾
 - 미국 시민권자(U.S. citizens), 미국 영주권자(U.S. residents)
 - 국내 기업(a domestic entity)
 - 법인기업(corporations), 파트너십(partnerships),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27) 미국 국세청사이트(<http://www.irs.gov>), Deloitte의 “A wider net Understanding your FBAR reporting requirements”, KPMG의 “What’s News in Tax - Navigating the FBAR Maze”를 참조함

28) United States person includes U.S. citizens; U.S. residents; enti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orporations, partnerships, or limited liability companies, created or organized in the United States or under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and trusts or estates formed under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companies), 신탁(trusts) 등을 포함함

(2) 재무적 지분의 의미

- 수익의 귀속이 미국인에게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외 계좌의 법적인 소유자(holder of legal title)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공공기록상 소유자(the owner of record)가 되는 경우 해당 계좌의 재무적 지분(financial interest)을 가진 자로 봄²⁹⁾
 - 예를 들면 해외증권회사의 위탁계좌(foreign brokerage account)에 대한 공문서상 소유자가 미국인 클라이언트의 대리인 자격으로서 미국 증권 중개인(a US broker) 라면, 미국인 클라이언트와 미국 증권사는 모두 신고의무자에 해당함³⁰⁾

- 만약 두 명이나 그 이상의 명의로 계좌가 유지되고 있다면, 모든 명의자는 각각 재무적 지분을 모두 가지는 것으로 보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다만, 부부명의로인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여 한명만이 신고의무를 이행함

- 한편,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미국인 또한 은행, 증권, 기타 금융관련 계좌의 재무적 지분을 가진 경우로 보아 신고의무를 지게 됨
 - 법률적 소유자가 미국인의 대리인, 법적대리인, 위임받은 자 등으로서 미국인을 대신하는 경우
 - 법률적 소유자가 미국인이 직간접적으로 의결권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업(corporation)인 경우
 - 법률적 소유자가 미국인이 직간접적으로 자본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파트너십(partnership)인 경우
 - 법률적 소유자가 미국인이 직간접적으로 의결권, 지분이나 자산가치, 수익배분권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any other entity)인 경우

29) IRS, "Internal Revenue Manual Ch.26, Bank Secrecy Act, 4.26.16.3.4 (07-01-2008) Financial Interest"

30) Deloitte,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 Reporting Rules, Forms, and Instructions," 2012. 3

○ 예를 들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해외파트너십 지분을 51% 보유하고 있는 미국 기업은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재무적 지분을 보유한 자로 보아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함³¹⁾

□ 한편, 미국에서는 종속기업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50%를 초과하여 보유한 기업 (corporation)의 경우 모기업이 연결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³²⁾

○ 이 경우 연결대상이 되는 종속기업의 신고의무가 없음

○ 연결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모기업은 모기업과 자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각각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함

○ 다만, 이 경우 연결대상기업의 목록을 따로 신고하여야함

(3) 서명권한의 의미

□ 과거에는 서명권한(signature authority)에 대한 의미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는데³³⁾, 2011년 3월부터 시행된 시행령에서 신고대상자에 서명권한(signature authority)을 가진 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음³⁴⁾

□ 서명권한(signature authority)이란 서명이 담긴 문서를 통해 금전, 펀드 또는 금융계좌 상 기타 자산 등에 대한 개인(혹은 타인과 공동으로)의 처분재량권을 의미함³⁵⁾

□ 이에 따르면 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하여 임직원(employees and officers)이 재무적 지분이 없더라도 동 계좌에 대한 서명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위 임직

31) KPMG, "What's News in Tax - Navigating the FBAR Maze," 2013. 4

32) IRS, "Internal Revenue Manual Ch.26, Bank Secrecy Act, 4.26.16.3.1.1 (07-01-2008) U.S. Person: Definition"

33) 강남규,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FBAR)의 본격적인 시행과 최근 동향」, 『울촌 뉴스레터』, 법무법인 울촌, 2009. 11

34) Deloitte, "A wider net Understanding your FBAR reporting requirements," 2013. 3

35) Deloitte,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 Reporting Rules, Forms, and Instructions," 2012. 3

원은 법인의 해외금융계좌신고 여부를 불문하고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하여야 함³⁶⁾

□ 다만, 재무적 지분 없이 서명권한을 가진 자 중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주요한 예는 다음과 같음³⁷⁾

○ 상장법인의 임직원

– 내외국법인 모두 적용되며, 상장시장의 등급과 상관없이 미국 국립증권거래소 (national securities exchanges)에 상장된 법인으로서 자산이 1천만달러를 넘고 주주가 500인 이상이어야 함

– 현재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 미국 국립증권거래소로서 등록된 16개의 증권시장이 있음³⁸⁾

○ 미국 상장법인의 미국 종속기업의 임직원

– 미국 상장법인은 상장시장의 등급과 상관없이 미국 국립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으로서 자산이 1천만달러를 넘고 주주가 500인 이상이어야 함

– 또한 모기업이 종속기업의 해외금융계좌까지 포함하여 연결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한 경우에만 해당됨

○ 연방정부 당국으로부터 조사받은 은행의 임직원

○ 증권거래법 제12조³⁹⁾에 의해 등록된 증권을 가진 법인의 임직원

○ 미국증권거래위원회 또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되고 조사된 금융기관의 임직원

36) Deloitte, "A wider net Understanding your FBAR reporting requirements," 2013. 3

37) IRS, "Internal Revenue Manual Ch.26, Bank Secrecy Act. 4.26.16.3.5 (07-01-2008) Signature or Other Authority Over an Account" 및 Deloitte, "A wider net Understanding your FBAR reporting requirements," 2013. 3 참조

38) 미국증권거래위원회(<http://www.sec.gov/>) 참조하였으며, 이하는 16개 증권시장임 NYSE MKT LLC (formerly NYSE AMEX and the American Stock Exchange) / BATS Exchange, Inc. BATS Y-Exchange, Inc. / BOX Options Exchange LLC /NASDAQ OMX BX, Inc. (formerly the Boston Stock Exchange)/ C2 Options Exchange, Incorporated / Chicago Board Options Exchange, Incorporated Chicago Stock Exchange, Inc./ EDGA Exchange, Inc. / EDGX Exchange, Inc. / International Securities Exchange, LLC / The Nasdaq Stock Market LLC /National Stock Exchange, Inc./ New York Stock Exchange LLC/ NYSE Arca, Inc. /NASDAQ OMX PHLX, Inc. (formerly Philadelphia Stock Exchange)

39) 관련 증권거래법은 <http://www.sec.gov/about/laws/sea34.pdf>를 참조할 것

나) 신고대상

(1)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 해외금융계좌들의 잔액의 합계가 보고대상 기간 중 1만달러를 넘는 순간이 한 번이라도 있는 경우에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해야 함⁴⁰⁾
- 해외금융계좌는 다음의 열거된 사항을 포함함⁴¹⁾
 - 저축(savings), 요구불예금(demand), 수표(checking), 예금(deposit), 정기예금(time deposit)과 같은 은행계좌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유지하고 있는 기타 계좌
 - 신용카드를 위해 개설하는 계좌나 보험정책상 해약환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도 금융계좌에 한 예임
 - 증권(Securities), 파생상품(securities derivatives), 기타 다른 금융계좌
 - 뮤추얼 펀드 같은 여러 자산으로 구성된 펀드계좌
-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는 다음과 같음⁴²⁾
 - 해외금융계좌는 일반적으로 지리적으로 미국 외의 모든 지역에 있는 국가의 계좌를 의미함
 - 계좌가 해외금융계좌인지 여부는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국적이 아닌 계좌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에 따르는 것임
 - 미국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의 계좌는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임
 - 이와 마찬가지로 외국금융기관의 미국 내 지점, 대리인 기타 사무소의 계좌는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가 아님
 - 한편, 미국은 미국의 여러 주뿐만 아니라 워싱턴 DC와 the Indian Gaming

40) The FBAR is required for each calendar year during which the aggregate amount(s) in the account(s) exceeded \$10,000 valued in U.S. dollars at any time during the calendar year

41) IRS, "Internal Revenue Manual Ch.26, Bank Secrecy Act. 4.26.16.3.2 (07-01-2008) Financial Account"

42) IRS, "Internal Revenue Manual Ch.26, Bank Secrecy Act. 4.26.16.3.3 (07-01-2008) Foreign Financial Account"

Regulatory Act에 따른 인디언 지역, 푸에르토리코 연방, 미국 버진아일랜드, 괌, 아메리칸 사모아와 북마리아나제도 연방을 포함함

– 해외 미군의 군대금융시설에 보유한 계좌는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가 아님

□ 해외금융계좌의 가액의 평가는 다음과 같음⁴³⁾

- 해외계좌의 외국환은 연말에 적용되는 공식환율(the official exchange rate in effect at the end of the year)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주식 및 기타 증권이나 여타 비화폐성 자산의 경우 연말의 시장가치로 보고 함
- 만약 해외금융계좌를 1개 이상 25개 미만으로 가지고 있는 납세자가 연중 최고잔액이 1만달러 초과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 중 Part II 부분을 작성한 후 추가적인 필요에 의해 나머지 신고서를 작성하면 됨

(2) 신고서 기재내용⁴⁴⁾

□ 미국 FBAR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파트로 구분되어 있음

- 신고자 정보기재(PART I Filer Information)
- 본인 소유의 계좌정보(PART II Information on Financial Account(s) Owned Separately)
- 공동 명의의 계좌정보(PART III Information on Financial Account(s) Owned Jointly)
- 재무적 지분 없이 서명권한을 가진 계좌정보(PART IV Information on Financial Account(s) Where Filer has Signature Authority but No Financial Interest in the Account(s))
- 연결 신고하는 금융계좌정보(PART V Information on Financial Account(s) Where the Filer is Filing a Consolidated Report)

43) IRS, "Internal Revenue Manual Ch.26, Bank Secrecy Act, 4.26.16.3.6 (07-01-2008) Account Valuation"

44) 2011년 3월 현재의 신고서(TD F 90-22.1)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신고자에 대한 정보는 신고자의 유형, 납세자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명, 거주 국가 및 도시, 상세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PART I 에서는 재무적 지분을 가진 계좌가 25개 이상인지 여부에 대해 체크하도록 하고 있는데, 25개를 넘어가는 경우는 본인 소유의 계좌정보(PART II)를 기재하지 않고, 다른 파트의 정보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토록 함
 - 이에 대하여 국세청의 Internal Revenue Manual 4.26.16.3.9을 살펴보면, 25개 이상의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신고서상 계좌정보는 기재하지 않는 대신 계좌기록 보관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계좌기록 보관의무는 국세청 심사관의 관련자료 요청에 납세자가 반드시 응답해야 하는 의무로서 불응 혹은 허위 대응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이는 많은 해외계좌를 보유함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감안하여 신고 및 기타의무는 부과되지 않고 시 기재되는 정보의 양을 감소시킨 조치로 해석됨

- 본인 소유의 계좌정보(PART II)는 계좌별 연간 최고 잔액, 계좌유형, 계좌개설 금융기관의 명칭, 계좌번호, 금융기관의 계좌가 개설된 도시, 국가, 상세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계좌유형은 은행, 증권, 기타금융계좌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함

- 공동명의 계좌와 관련해서는 본인 소유의 계좌정보(PART II)에서 기재하도록 하는 사항을 모두 기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공동명의자의 수, 공동명의자의 납세자번호(아는 경우에만 기재), 공동명의자의 성명 및 상세주소를 요구하고 있음

- 재무적 지분 없이 서명권한을 가진 계좌와 관련해서도 본인 소유의 계좌정보(PART II)에서 기재하도록 하는 사항을 모두 기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계좌명의자의 이름, 납세자번호, 주소를 요구하고 있음

- 연결신고하는 계좌와 관련해서 서식에서는 본인 소유의 계좌정보(PART II)에서 기재

하도록 하는 사항과 동일한 사항을 요구하고 있음

〈표 Ⅲ-1〉 FBAR 신고서 기재사항

구분	내용	세부내용
FBAR 신고서	○ PART I: 신고자정보	○ 신고자의 유형, 납세자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명, 거주 국가 및 도시, 상세주소
	○ PART II: 본인 소유의 계좌정보	○ 계좌별 연간 최고 잔액, 계좌유형, 계좌개설 금융기관의 명칭, 계좌번호, 금융기관의 계좌가 개설된 도시, 국가, 상세주소
	○ PART III: 공동명의 계좌정보	○ 계좌별 연간 최고 잔액, 계좌유형, 계좌개설 금융기관의 명칭, 계좌번호, 금융기관의 계좌가 개설된 도시, 국가, 상세주소 ○ 공동명의자의 수, 공동명의자의 납세자번호(아는 경우에만 기재), 공동명의자의 성명 및 상세주소
	○ PART IV: 재무적 지원 없이 서명권한을 가진 계좌정보	○ 계좌별 연간 최고 잔액, 계좌유형, 계좌개설 금융기관의 명칭, 계좌번호, 금융기관의 계좌가 개설된 도시, 국가, 상세주소 ○ 계좌 명의자의 이름, 납세자번호, 상세주소
	○ PART V: 연결신고하는 계좌정보	○ 계좌별 연간 최고 잔액, 계좌유형, 계좌개설 금융기관의 명칭, 계좌번호, 금융기관의 계좌가 개설된 도시, 국가, 상세주소

다) 세제상 혜택 및 제재사항⁴⁵⁾

- 미 국세청은 FBAR의 과태료(civil penalties)의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 FBAR 위반시 국세청 심사관은 경고장(FBAR warning letter)을 송부하거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
- 미신고는 신고기한인 6월 30일까지 미신고시 발생하는 것이며, 계좌기록 보관의무 위반은 국세청 심사관의 관련자료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를 의미함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계좌기록 보관의무 위반 시 과실의 일회성이나 고의성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과태료가 부과됨

45) IRS, "Internal Revenue Manual", Ch.26, Bank Secrecy Act.참조

- 다만, 과실의 반복성과 고의성 유무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차등적으로 적용됨
- 과태료는 재무적 지분을 가진 신고의무자나 서명권한을 가진 자에 대해서 각각 부과될 수 있음
 - 즉, 하나의 계정의 신고 누락으로 인해 여러 신고의무자에게 모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과실(negligence), 반복적인 과실(pattern of negligence), 고의성(willful), 비고의성(non-willful)으로 인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됨
- 과태료는 각 계좌별, 위반한 연도별로 부과됨
 - 과태료는 상한선은 있으나, 하한선은 없음
- 과태료의 금액에 대해서는 심사관이 일정 정도의 재량권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며, 국세청 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예시를 두고 있음
 - 예를 들어, 해외금융계좌에 10만달러의 잔액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신고를 누락하였으나, 동 해외계좌로부터의 이자수익을 개인소득세 신고시 신고하였고 동 납세자가 해외금융계좌를 은폐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보다는 경고장 송부가 더 적합함

(1) 과실로 인한 위반일 경우 과태료

- 과실로 인한 미신고 및 계좌기록 보관의무 위반시 500달러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과실로 인한 과태료는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이 아닌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아니함
- 과실로 인한 미신고 및 계좌기록 보관의무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실로 인한 위반의 과태료 500달러에 추가적으로 5만달러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미신고와 계좌기록 보관의무 위반이 과실은 아니지만,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1만달

러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동 과태료는 개인에게도 적용되는데, 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뒤늦게 해외금융계좌 잔액과 관련하여 심사관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동 과태료는 적용되지 않음

(2) 고의적인 위반일 경우 과태료 및 형사처벌

- 고의적인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나 보관의무 위반의 경우 은행비밀보호법에 의해 과태료와 함께 형사상 처벌이 동시에 처해질 수 있음

- 먼저, 고의적으로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거나 보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만 달러와 위반시점 계좌잔액의 50% 중 큰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게 됨
 - 한편, 2004년 10월 이전에는 10만달러를 한도로 2만달러와 위반 시 계좌잔액 중 큰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였는데, 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의 한도를 폐지하였음
 - 그리고 동 과태료는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과태료임

- 그리고 고의적인 위반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소득세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50만달러 이하 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거나, 벌금부과와 징역형이 같이 처해질 수 있음
 - 그것이 아닌 해외금융계좌신고의 누락 등의 경우에는 25만달러 이하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거나, 벌금부과와 징역형이 같이 처해질 수 있음

- 미 국세청에서는 고의성 존재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고 있음
 - 개인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이자 및 배당수입 명세서(SCCHEDULE B)상 해외금융계좌 존재 여부에 대한 문항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에 해외금융계좌신고를 누락한다면 이는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누락으로 봄
 - 신고대상계좌 3개 중 1개를 누락하고 신고한 자가 관련 소득은 신고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조사 시 신고 누락된 계좌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누락된 계좌에

서 의심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의적인 누락으로 보지 않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해외금융계좌신고와 이와 관련된 소득을 동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봄
- 국세청으로부터 경고장(FBAR warning letter)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해외금융계좌신고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봄

□ 한편, 미 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의성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서의 예시를 들고 있음

- 세무조사를 통해 입수된 문서로서 미신고된 해외금융계좌로부터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이자 및 배당수입 명세서(SCCHEDULE B)이 첨부된 소득세신고서류
-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진술서
-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조사관의 인터뷰 기록
- 부정(fraud)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모든 문서
- 과거 신고된 해외금융계좌신고서
- 외국은행의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 계약 및 수수료 관련 문서
- 외국은행이나 투자관리사 또는 대리인과의 계약 및 수수료 관련 문서

□ 위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Ⅲ-2〉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계좌기록 보관의무 위반 시 주요 제재사항

위반사유 (Violation)	과태료 (Civil Penalties)	형사상처벌 (Criminal Penalties)	관련규정
과실로 인한 위반	500달러 이내	없음	31 U.S.C. § 5321(a)(6)(A) 31 C.F.R. 103.57(h)
반복적인 과실 위반	과실로 인한 위반에 추가하여 5만달러 이내	없음	31 U.S.C. 5321(a)(6)(B)
고의성 없는 위반	각 위반사항당 1만달러 이내	없음	31 U.S.C. § 5321(a)(5)(B)
고의성 있는 경우	미신고 또는 기록 미보관	MAX(10만달러, 위반시 계좌잔고의 50%)	25만달러 이하 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병과 31 U.S.C. § 5321(a)(5)(C) 31 U.S.C. § 5322(a) 31 C.F.R. § 103.59(b)
	다른 법률 위반 하면서 미신고, 또는 자료미보관	MAX(10만달러, 위반시 계좌잔고의 50%)	50만달러 이하 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병과 31 U.S.C. § 5322(b) 31 C.F.R. § 103.59(c)
	알고도 고의적인 미신고	MAX(10만달러, 위반시 계좌잔고의 50%)	1만달러 이하 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병과 18 U.S.C. § 1001, 31 C.F.R. § 103.59(d)

출처: <http://www.fbaronline.com/penalty.aspx>

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하의 해외자산 신고의무⁴⁶⁾

- 미국은 매우 포괄적인 해외계좌신고제를 2010년 3월 도입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그 주요 내용임
 - 해외금융기관은 미 국세청과의 정보제공협약을 통해 일정기준 이상의 금융자산에 대해 미국 납세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소유주의 동의하에 미 국세청에 소유주의 이름, 주소, 잔고 등을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짐
 - 만약 정보제공협약을 맺지 않는 해외금융기관과 미 국세청 보고를 동의하지 않는

46) [http://www.irs.gov/Businesses/Corporations/Foreign-Account-Tax-Compliance-Act-\(FATCA\)](http://www.irs.gov/Businesses/Corporations/Foreign-Account-Tax-Compliance-Act-(FATCA))을 참조하여 작성함

소유주가 있다면, 이들의 미국 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들의 소득에서 30%의 원천징수를 하도록 함

– 2014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 해외 특정금융자산을 소유한 투자자는 관련 계좌 정보와 자산의 성격을 신고하여야 함

- 본 보고서에서는 FATCA의 주요 내용 중 해외 특정금융자산을 소유한 투자자의 신고의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1) 신고의무자

- 해외계좌를 보유하고 있거나 해외 특정금융자산을 보유한 미국 시민권자(U.S. citizens), 미국 개인 거주자(U.S. individual residents), 특정한 개인비거주자(a very limited number of nonresident individuals)는 소득세 신고시 이에 대해 신고하여야 함

-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Form 8938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신고함

- 한편, 미 국세청에서 발간한 Instructions for Form 8938(2013.12)에서는 향후 법인 등 기업(domestic corporation, partnership, or trust)에 대해서도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시행령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그 이전에는 개인에게만 신고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2) 신고대상 자산

가) 신고기준금액

- 신고의무자의 해외금융자산이 신고기준금액을 넘을 경우에만 Form 8938에 의한 신고함

- 미국 내에서 거주(living)하는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신고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음
 - 미혼인 납세자의 경우 해외금융자산의 합계가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5만달러를 초과하거나 연중 어느 순간이라도 7만 5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함
 - 개인소득세를 부부합산하여 신고하는 기혼자의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해외금융자산의 합계가 10만달러를 초과하거나 연중 어느 순간이라도 15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함
 - Form 8938은 개인소득세 신고시 첨부되는 양식이므로 부부합산 신고하는 경우 해외금융자산 신고기준금액은 부부합산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기혼자인데 부부합산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미혼인 납세자의 경우와 같이 해외금융자산의 합계가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5만달러를 초과하거나 연중 어느 순간이라도 7만 5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함

- 미국 내에서 거주(living)하지 않는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신고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음
 - 미혼인 납세자의 경우 해외금융자산의 합계가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20만달러를 초과하거나 연중 어느 순간이라도 3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함
 - 개인소득세를 부부합산하여 신고하는 기혼자의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해외금융자산의 합계가 40만달러를 초과하거나 연중 어느 순간이라도 6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함
 - 기혼자인데 부부합산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미혼인 납세자의 경우와 같이 해외금융자산의 합계가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20만달러를 초과하거나 연중 어느 순간이라도 3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함

나) 신고대상자산

- 신고대상 해외금융자산은 다음과 같음
 - 외국금융기관에 의해 유지되는 금융계좌
 - 투자를 목적으로 외국금융기관의 계좌를 사용하여 관리하지 않는 다음의 해외금융 자산

- 미국인이 아닌 자가 발행한 주식 등 유가증권
- 해외 기업체(foreign entity)에 대한 지분
- 거래의 상대방이나 발행자가 미국인이 아닌 금융상품이나 계약

□ 이와 관련하여 미 국세청에서는 여러 해외금융자산을 분류하고 Form 8938에 의해 신고해야 되는 대상에 대해 다음 표를 통해 간략히 설명하고 있음

〈표 Ⅲ-3〉 해외금융자산의 종류별 신고대상 여부 구분

구분	신고대상 여부
외국금융기관에서 개설되는 금융계좌	신고대상임
미국금융기관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되는 금융계좌	신고대상 아님
해외금융기관의 미국지점에서 개설되는 금융계좌	신고대상 아님
서명권한이 있는 해외금융계좌나 자산	신고대상 아님 (예외사항 있음)
해외금융기관의 해외계좌를 통해 보유 중인 외국 주식이나 유가증권	신고대상임 (단, 계좌자체는 신고대상에 해당하나 계좌에 속해있는 개별유가증권의 내역은 신고대상 아님)
해외금융기관의 해외계좌를 통하지 않고 보유 중인 외국 주식이나 유가증권	신고대상임
해외 파트너십 지분	신고대상임
다른 실체(entity)를 통한 간접적인 해외금융자산의 소유 지분	신고대상 아님
해외 뮤추얼 펀드	신고대상임
해외주식과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국내 뮤추얼 펀드	신고대상 아님
위탁자신탁(grantor trust)에 의한 해외계좌 또는 그 밖의 계좌를 통한 투자자산	신고대상임
해외에서 개설된 해약반환금이 있는 생명보험과 연금	신고대상임
해외 헤지펀드(Hedge fund)와 사모펀드(PEF)	신고대상임
직접 소유하고 있는 해외 부동산	신고대상 아님
다른 실체(entity)를 통한 간접적으로 소유한 해외 부동산	신고대상 아님 (단, 해외 entity가 특정금융자산에 속하고, 동 금융자산에서 부동산의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경우에는 신고함)
직접 보유하고 있는 해외 통화	신고대상 아님
직접 보유하고 있는 외국 보석	신고대상 아님
미술품, 보석, 자동차 등 개인적인 소유물	신고대상 아님
외국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보험과 연금	신고대상 아님

자료: <http://www.irs.gov/Businesses/Corporations/FATCA-Information-for-Individuals> 정리

다) 신고서 기재사항

- Form 8938은 총 6개의 파트로 구분되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Part I : 해외 예금 및 수탁계좌(Foreign Deposit and Custodial Account) 개요
 - 예금(Deposit)의 수량 및 연중 최고 잔액
 - 수탁계좌(Custodial Account)의 수량 및 연중 최고 잔액
 - 연중 해지한 예금이나 수탁계좌 유무
 - Part II : 기타 해외자산에 대한 개요
 - 해외자산의 수량 및 연중 자산 합계의 최고 금액
 - 연중 취득하거나 처분한 자산의 유무
 - Part III-1: 해외 예금 및 수탁계좌로부터 받은 이자 등의 기재
 - 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이자, 배당 로열티, 이익, 손실 금액을 기재
 - 또한 소득세 신고시 기재한 서식의 명칭을 기재
 - Part III-2: 기타 해외자산으로부터 받은 이자 등의 기재
 - 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이자, 배당 로열티, 이익, 손실 금액을 기재
 - 또한 소득세 신고시 기재한 서식의 명칭을 기재
 - Part IV: Form 8938에서 신고대상으로 규정한 해외금융자산 외의 해외금융자산 존재 여부 및 관련 소득세 신고서식 명칭 기재
 - Part V : 개별 해외 예금 및 수탁 계좌에 대한 상세 정보
 - 계좌 유형(예금인지 수탁계좌인지 여부 기재)
 - 계좌번호 또는 기타 등록번호
 - 연중에 개설되거나 연중 해지된 계좌인지 여부,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계좌인지 여부, 소득세 신고시 포함된 것인지 여부
 - 연중 최고 잔액 기재
 - 외화표시 자산의 경우 외화금액, 적용한 환율 및 환율 출처
 - 관련 금융기관명과 상세주소(도시, 국가, 우편번호 등)
 - Part VI: 개별 기타 해외 자산에 대한 상세 정보⁴⁷⁾

47) 특정금융자산의 경우, 소득세 신고시 Form 3520, 3520-A, 5471, 8621, 8865 또는 8891에 기재한 경우에는 Form 8938에 기재하지 않아도 됨

- 자산에 대한 설명기재
- 등록번호 등 자산의 식별 가능 정보기재
- 연중 취득이나 처분자산인지 여부

〈표 Ⅲ-4〉 Form 8938 신고서 기재사항

내용	세부내용
○ PART I: 해외 예금 및 수탁계좌개요	○ 예금(Deposit)의 수량 및 연중 최고 잔액 ○ 수탁계좌(Custodial Account)의 수량 및 연중 최고 잔액 ○ 연중 해지한 예금이나 수탁계좌 유무
○ PART II: 기타 해외자산에 대한 개요	○ 해외자산의 수량 및 연중 자산 합계의 최고 금액 ○ 연중 취득하거나 처분한 자산 유무
○ PART III-1: 해외 예금 및 수탁계좌로부터 받은 이자 등의 기재	○ 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이자, 배당 로열티, 이익, 손실 금액을 기재 ○ 소득세 신고시 기재한 서식의 명칭을 기재
○ PART III-2: 기타 해외자산으로부터 받은 이자 등의 기재	○ 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이자, 배당 로열티, 이익, 손실 금액을 기재 ○ 소득세 신고시 기재한 서식의 명칭을 기재
○ PART IV: 소득세신고서 관련 소득에 대해 신고한 해외자산 중 Form 8938 신고대상이 아닌 자산	○ Form 8938에서 신고대상으로 규정한 해외금융자산 외의 해외금융자산 존재여부 및 관련 소득세 신고 서식 명칭 기재
○ PART V: 개별 해외 예금 및 수탁계좌에 대한 상세 정보	○ 계좌 유형(예금인지 수탁계좌인지 여부 기재) ○ 계좌 번호 또는 기타 등록번호 ○ 연중에 개설되거나 연중 해지된 계좌인지 여부,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계좌인지 여부, 소득세 신고시 포함된 것인지 여부 ○ 연중 최고 잔액 기재 ○ 외화 표시 자산의 경우 외화금액, 적용한 환율 및 환율 출처 ○ 관련 금융기관명과 상세주소(도시, 국가, 우편번호 등)
○ PART VI: 개별 기타 해외자산에 대한 상세 정보	○ 자산에 대한 설명기재 ○ 등록번호 등 자산의 식별 가능 정보기재 ○ 연중 취득이나 처분자산인지 여부 ○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인지 여부, 소득세 신고시 불포함 여부 ○ 자산의 연중 최고가액 ○ 외화표시 자산의 경우 외화금액, 적용한 환율 및 환율 출처 ○ 기타 해외자산이 해외법인이나 기업체등의 주식이나 지분인 경우에는 동 기업체의 명칭, 기업체의 법적형식(파트너십, 법인, 신탁 등), 기업체의 상세주소 기재 ○ 주식이나 지분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자가 해당 금융자산의 발행자(issuer)나 거래 상대방(counterparty)의 이름, 법적형식(개인, 파트너십, 법인, 신탁 등), 국적, 상세주소를 기재해야 함

자료: <http://www.irs.gov/pub/irs-pdf/f8938.pdf>

-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인지 여부, 소득세 신고시 불포함 여부
- 자산의 연중 최고가액
- 외화표시 자산의 경우 외화금액, 적용한 환율 및 환율 출처
- 기타 해외자산이 해외법인이나 기업체 등의 주식이나 지분인 경우에는 동 기업체의 명칭, 기업체의 법적형식(파트너십, 법인, 신탁 등), 기업체의 상세주소 기재
- 주식이나 지분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자가 해당금융자산의 발행자(issuer)나 거래 상대방(counterparty)의 이름, 법적 형식(개인, 파트너십, 법인, 신탁 등), 국적, 상세주소를 기재해야 함

3) 재제사항

- Form 8938의 미신고 및 허위신고시 1만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국세청이 Form 8938의 미신고 및 허위신고에 대한 안내장을 송부한 후 90일 이내에 Form 8938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시 위의 미신고 과태료에 30일당 1만달러의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음
- Form 8938에 미신고한 해외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소득세를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과소납부 금액의 40%를 가산세로 낼 수 있음
- 한편, 위의 과태료와 관련된 모든 상황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음

다. FBAR과 FATCA에 따른 Form 8938의 비교

- 우선, Form 8938에 따른 신고는 FBAR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따로 신고해야 하며, 과태료 등의 제재도 각각 부과됨
- 미 국세청에서 Form 8938을 도입하면서, 도입목적이나 활용방법에 대한 FBAR과의 명

시적인 차이점을 설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신고대상자산을 상세히 살펴보면 Form 8938은 해외금융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보유중인 유가증권이나 해외기업체에 대한 지분, 그리고 거래의 상대방이나 발행자가 미국인이 아닌 금융상품이나 계약(헤지펀드, 사모펀드 포함)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신고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음
- 한편, FBAR의 경우에는 신고의무자에 서명권한이 있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지배기업의 신고대상자산에 종속기업의 계좌를 포함시키나 Form 8938의 경우는 그렇지 않음
 - 이에 다른 실체(entity)를 통한 간접적인 해외금융자산의 소유지분에 대해서는 FBAR에 의해서는 신고대상이 되지만 Form 8938에 의해서는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그러므로 신고의무대상자는 FBAR이 넓지만, 신고대상은 Form 8938이 넓은 것으로 이해됨
- 미국의 FBAR제도와 Form 8938을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비교를 하면 다음과 같음

〈표 Ⅲ-5〉 FBAR제도와 FATCA의 Form 8938의 기본사항 비교

구분	Form 8938	FBAR
신고의무자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해외금융자산을 보유한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 특정 비거주 외국인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미국인(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 법인기업, 파트너십, 유한회사, 신탁을 포함함)
기준금액	과세기간(1역년) 말일 5만달러를 넘거나 과세기간 중 7만 5천달러를 넘는 경우 신고함	과세기간(1역년) 중 1만달러를 넘는 경우 신고함
해외금융계좌나 자산에 대한 소유여부에 대한 구분기준	해외금융자산으로부터 수익, 손실, 배당 등이 있거나 소득세 신고시 반영된 경우에는 소유로 봄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재무적 지분이 있거나 서명의 권한이 있는 경우
주요 보고 정보	해외금융자산의 최고액	해외금융계좌의 최고액
보고기한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6월 30일까지
보고방식	소득세 신고시 첨부	개별적인 전자신고

자료: <http://www.irs.gov/Businesses/Comparison-of-Form-8938-and-FBAR-Requirements>

□ 미 국세청에서는 FBAR제도와 Form 8938의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및 자산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음

〈표 Ⅲ-6〉 FBAR과 FATCA의 Form 8938의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및 자산 비교

구분	Form 8938	FBAR
외국금융기관에서 개설되는 금융계좌	신고대상임	신고대상임
미국금융기관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되는 금융계좌	신고대상 아님	신고대상임
해외금융기관의 미국지점에서 개설되는 금융계좌	신고대상 아님	신고대상 아님
서명권한이 있는 해외금융계좌나 자산	신고대상 아님 (예외사항 있음)	신고대상임
해외금융기관의 해외계좌를 통해 보유 중인 외국 주식이나 유가증권	신고대상임 (단, 계좌 자체는 신고대상에 해당하나 계좌에 속해 있는 개별 유가증권 신고대상아님)	계좌자체가 신고대상임 그러나 개별 유가증권 신고대상 아님
해외금융기관의 해외계좌를 통하지 않고 보유 중인 외국 주식이나 유가증권	신고대상임	신고대상 아님
해외 파트너십 지분	신고대상임	신고대상 아님
다른 실체(entity)를 통한 간접적인 해외금융자산의 소유지분	신고대상 아님	신고대상임
해외 뮤추얼 펀드	신고대상임	신고대상임
해외주식과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국내 뮤추얼 펀드	신고대상 아님	신고대상 아님
위탁자신탁(grantor trust)에 의한 해외계좌 또는 그 밖의 계좌를 통한 투자자산	신고대상임	신고대상임 (계좌가 신고대상임)
해외에서 개설된 해약반환금이 있는 생명보험과 연금	신고대상임	신고대상임
해외 헤지펀드(Hedge fund)와 사모펀드(PEF)	신고대상임	신고대상 아님
직접 소유하고 있는 해외 부동산	신고대상 아님	신고대상 아님
다른 실체(entity)를 통한 간접적으로 소유한 해외 부동산	신고대상 아님 (단, 해외 entity가 특정금융자산에 속하고, 동 금융자산에서 부동산의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경우에는 신고함)	신고대상 아님
직접 보유하고 있는 해외 통화	신고대상 아님	신고대상 아님
직접 보유하고 있는 외국 보석	신고대상 아님	신고대상 아님
미술품, 보석, 자동차 등 개인적인 소유물	신고대상 아님	신고대상 아님
외국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보험과 연금	신고대상 아님	신고대상 아님

자료: <http://www.irs.gov/Businesses/Comparison-of-Form-8938-and-FBAR-Requirements>

2. 일본

- 최근 일본에서는 국외에 소재하는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국외 재산에 관한 적정 과세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⁴⁸⁾
- 이에 일본은 2012년도에 세제 개편을 통해 납세자가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뿐 아니라 부동산 및 광업권 등 유무형의 해외 재산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국외재산조서제도(国外財産調書制度)를 도입하였음
 - 동 제도는 2013년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처음 적용되는데, 2014년 3월 15일을 첫 신고기한으로 하고 있음⁴⁹⁾

가. 신고의무자

- 해외에 소재한 재산의 합계액이 당해 연도의 말(12월 31일) 현재 5천만엔을 초과하는 거주자(비영주권자는 제외)는 다음해 3월 15일까지 국외재산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⁵⁰⁾
-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소 유지한 개인을 말하며, 비영주권자란 거주자 중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과거 10년 이내에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고 있던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개인을 의미함⁵¹⁾
 - 주소란 각 사람의 생활의 본거지를 말하며, 주소에 대한 판정은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판정함⁵²⁾
 - 한편, 국내외에 걸쳐 거주지가 이동하는 사람의 주소가 국내에 있는지 여부의 판

48) 일본 국세청, 『国外財産調書の提出制度(FAQ)』, 2013. 11

49) 다만, 일본 국세청은 2014년 3월 15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제출기한은 2014년 3월 17일까지로 한다고 밝히고 있음

50) 국외송금등조사법 제 5조 제1항

51)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52) 일본 국세청, 『国外財産調書の提出制度(FAQ)』, 2013. 11

정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판정함

○ 거소는 생활의 본거지라 볼 수는 없지만, 현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소임⁵³⁾

- 소득세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거주자의 경우 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확정신고가 필요없는 경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⁵⁴⁾

나. 신고대상

- 국외송금등조서법에 따르면 국외에 있는 재산이 신고대상인데, 동 금액은 연도 말 합산하여 5천만엔을 초과하여야 함
- 한편, 재산이 국외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재산의 종류마다 각각 그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재산가액의 산정 방법은 시가 또는 시가에 준하는 것으로 견적가액(見積價額)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국외재산조서는 제출자의 성명, 주소, 국외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소재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1) 재산 소재의 판정

- 재산이 국외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상속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⁵⁵⁾
- 다만, 특정 채권 및 주식 등 유가증권은 상속세법에 따르지 않고 국외송금등조서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소재를 판정함

53) 안종석·구자은·김정아·정경화,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에 대한 외국제도와 시사점』, 2011.12,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54) 국외송금등조서법 제5조 제1항

55) 국외송금등조서법 제5조 제3항

- 유가증권 등이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의 영업소 등에 개설된 계좌에 따른 대체계좌부에 기재된 경우 등에 있어서 그 유가증권 등의 소재에 대해서는 상속세법을 따르지 않고,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의 영업소 등의 소재에 의하여 재산 소재를 판정함⁵⁶⁾
 - － 유가증권 등이라 함은 대출채권, 채권 또는 주식, 법인에 대한 출자, 외국 예탁증권, 집단 투자신탁, 국채 또는 지방채, 저당 증권 또는 옵션을 표시하는 증권, 조합계약 등에 근거한 투자, 신탁에 관한 권리 등을 의미함
 - －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의 영업소 등에 개설된 계좌에 따른 대체계좌부라 함은 채권, 주식 등의 대체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대체계좌 전화번호부를 의미하며, 외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⁵⁷⁾
- 또한, 상속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다음의 재산은 국외송금등조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이 소재를 판정함
 - 예탁금 또는 위탁증거금, 기타 보증금은 예탁금 등을 수용한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판정함⁵⁸⁾
 - 저당증권 또는 옵션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등은 증권 등이 발행된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판정함⁵⁹⁾
 - 조합계약 등에 근거한 출자는 동 계약에 근거하여 사업을 하는 주된 사무소, 사업소 소재지에 따라 판정함⁶⁰⁾
 - 신탁에 관한 권리는 그 신탁의 인수를 한 영업소, 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판정함⁶¹⁾
 - 상기 이외의 재산은 그 재산을 가진 사람의 주소에 따라서 판정함⁶²⁾

56) 국외송금등조사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57) 일본 국세청, 『国外財産調書の提出制度(FAQ)』, 2013. 11

58) 국외송금등조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59) 국외송금등조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증권 등이 발행된 본점에 대한 의미가 발행주체를 의미하는지 발행을 돕는 금융기관을 의미하는지는 해석상의 문제 등으로 불명확함

60) 국외송금등조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61) 국외송금등조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62) 국외송금등조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 한편, 일본 국세청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재산의 소재지 판정은 재산 종류별로 다음과 같음

〈표 Ⅲ-7〉 국외재산의 소재지 판정기준

구분	소재지 판정기준
동산, 부동산,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권리	○ 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재
선박, 항공기	○ 선적 또는 항공기의 등록을 한 기관의 소재 - 선적이 없는 선박에 대해서는 상속세법 기본통지 10-1에 따라 동 선박을 동산으로 보아 그 소재지에 따라 국외재산인지 여부를 판정함
광업권, 조광권, 채석권	○ 광구 또는 채석장의 소재
어업권, 입어권	○ 어장에서 가장 가까운 연안마을 또는 이에 상당하는 행정구역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저축, 적금 또는 기탁금	○ 그 예금 등을 수용한 영업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 상속세법 시행령 제1조의 13에서 규정하는 예적금을 말함
보험(보험계약에 관한 권리포함)	○ 그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회사 등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퇴직수당, 공로금 등의 급여 (연금 또는 일시금에 관한 권리 포함)	○ 그 급여를 지불한 자의 본점 주소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대출채권	○ 그 채무자의 본점주소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대출채권이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의 영업소 등에 개설된 계좌에 따른 대체계좌부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는 계좌가 개설된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의 영업소의 소재지
채권, 주식 (주식관련권리 포함)	○ 채권 또는 주식발행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주식 등이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의 영업소 등에 개설된 계좌에 따른 대체계좌부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는 계좌가 개설된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의 영업소의 소재지

〈표 Ⅲ-7〉의 계속

구분	소재지 판정기준
집단투자신탁	○ 신탁을 인수한 영업소, 사무소 기타 이에 준하는 소재지 - 신탁 등이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의 영업소 등에 개설된 계좌에 따른 대체계좌부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는 계좌가 개설된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의 영업소의 소재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 그 등록을 한 기관의 소재지
저작권, 출판권 등	○ 권리의 목적물이 발행된 영업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기타 영업상 또는 사업상의 권리	○ 영업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국채 또는 지방채	○ 외국 또는 외국의 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한 것: 그 국가 - 채권 등이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의 영업소 등에 개설된 계좌에 따른 대체계좌부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는 계좌가 개설된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의 영업소의 소재지
예탁금 또는 위탁증거금, 기타 보증금	○ 예탁금 또는 증거금등을 수용한 영업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저당증권, 옵션표시증권	○ 증권발행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증권 등이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의 영업소 등에 개설된 계좌에 따른 대체계좌부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는 계좌가 개설된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의 영업소의 소재지
신탁에 관한 권리	○ 그 신탁의 인수를 한 영업소, 사무소 기타 이에 준하는 소재지 - 신탁 등이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의 영업소 등에 개설된 계좌에 따른 대체계좌부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는 계좌가 개설된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의 영업소의 소재지
조합계약 관련 출자	○ 그러한 조합 계약 등에 따라 사업을 하는 주된 사무소, 사업소 기타 이에 준하는 소재지 - 출자 등이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의 영업소 등에 개설된 계좌에 따른 대체계좌부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는 계좌가 개설된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의 영업소의 소재지
기타 재산	○ 그 재산을 가진 사람의 주소(주소가 없는 경우는 거소)

자료: 일본 국세청, 『国外財産調書の提出制度(FAQ)』, 2013. 11

□ 한편, 일본 국세청에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외 재산을 산정하는 사례를 몇 가지 추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아래에 기술하였음

- 유가증권의 소재지 판정 예시
 -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법인의 국내 및 국외 소재지와 이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국내 금융기관의 계좌인지 국외 금융기관의 계좌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음
 - 국내유가증권이라 함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함
 - 국외유가증권은 본점 등이 국외에 소재하는 법인 발행 주식임
 - 국내금융기관의 계좌라 함은 국내에 있는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의 영업소 등에서 개설한 계좌를 의미함
 - 국외금융기관의 계좌라 함은 국외에 있는 금융상품거래업자의 영업소에서 개설한 계좌를 의미함

〈표 Ⅲ-8〉 유가증권의 소재지판정 예시

구분	국내유가증권	국외유가증권
국내금융기관의 계좌	조서제출대상 아님	조서제출대상 아님
국외금융기관의 계좌	조서제출대상	조서제출대상
그 밖의 경우	조서제출대상 아님	조서제출대상

자료: 일본 국세청, 『国外財産調書の提出制度(FAQ)』, 2013. 11

- 일본 거주자가 국외법인에 대한 금전을 대여한 경우의 소재지 판정 예시
 - 대출채권의 소재지는 채무자의 본점 소재지에 따라 판정하므로 조서제출대상임
- 국내 사업자를 통하여 매입한 해외부동산의 소재지 판정 예시
 - 부동산은 그 부동산의 소재지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므로 조서제출대상임

2) 재산의 가액산정방법

- 국외 재산의 가치는 해당 연도의 12월 31일의 시가 또는 시가에 준하는 견적가격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율은 동일의 외국환 매매 시세에 의한 것으로 함

- 한편, 기존의 재산평가기본통달의 방법을 사용하여 재산을 평가하고, 이를 신고서에 기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음⁶³⁾
 - 재산평가기본통달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가격 계산방침으로 각 재산의 평가 방법의 원칙과 평가 단위별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국외재산의 시가라 함은 당해 연도말 국외 재산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 당사자 간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뜻함(통지 5-7 전단)
 - 동 가액은 국외 재산의 종류에 따라 동산 및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감정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거나 상장주식 등에 대해서는 금융상품거래소 등의 연도말 최종가격 등을 시가로 볼 수 있음⁶⁴⁾
 - 금융상품거래소 등이라 함은 금융상품거래소 외에도 공표 가격이 있는 것을 의미함

- 견적가격은 국외 재산의 취득가액과 매매 사례가액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산정해야 하는데, 통지 5-8에서는 견적가격의 예시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음
 - 한편, 견적가격은 시가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관점에서 시가에 준하는 가액을 국세청에서 정하여 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표 Ⅲ-9〉 견적가격의 예시

구분	견적가격
토지	○ 다음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또는 외국의 지방공공단체가 정하는 법령에 따라 재산세에 해당하는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해 12월 31일에 그 속하는 지역에서 부과된 당해 조세의 계산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액 -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그 취득 후의 가액의 변동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하여 산출한 가액: 합리적인 가격 변동률은 해당 국가 통계 기관이 발표하는 부동산 통계 지표 등을 참고로 할 수 있음 - 그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국외 재산조서의 제출기한까지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는 그 양도가액

63) 일본 국세청, 『国外財産調書の提出制度(FAQ)』, 2013. 11

64) 일본 국세청, 『国外財産調書の提出制度(FAQ)』, 2013. 11

〈표 Ⅲ-9〉의 계속

구분	전적가격
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또는 외국의 지방공공단체가 정하는 법령에 따라 재산세에 해당하는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해 12월 31일에 그 속하는 지역에서 부과된 당해 조세의 계산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액 -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그 취득 후의 가액의 변동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하여 산출한 가액: 합리적인 가격 변동률은 해당 국가 통계기관이 발표하는 부동산 통계지표 등을 참고로 할 수 있음 - 그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국외 재산조서의 제출기한까지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는 그 양도가액 - 업무용 건물외의 자산은 취득가액에서 그해 12월 31일까지의 감가상각금액을 공제한 금액 : 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며, 내용연수는 일본의 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예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해 12월 31일 잔액
비상장 유가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해 12월 31일 매매사례가액 또는 그 이전일 중 12월 31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매매사례가액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 - 위의 가액이 없는 경우 그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국외재산조서의 제출 기한까지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가액 - 위의 가액도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채권 (받을 어음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해 12월 31일 미수액의 원금가액
서화, 골동품 및 미술 공예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해 12월 31일 매매사례가액 또는 그 이전일 중 12월 31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매매사례가액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 - 위의 가액이 없는 경우 그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국외재산조서의 제출 기한까지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가액 - 위의 가액도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귀금속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해 12월 31일 매매사례가액 또는 그 이전일 중 12월 31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매매사례가액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 - 위의 가액이 없는 경우 그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국외재산조서의 제출 기한까지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가액 - 위의 가액도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가정용 동산 (현금, 서화 골동품, 미술 공예품, 장신구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집기비품,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동산 등의 취득가액에서 내용연수 경과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며, 내용연수는 일본의 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자료: 일본 국세청, 『国外財産調書の提出制度(FAQ)』, 2013. 11

- 한편, 일본 국세청에서는 국외 재산을 산정하는 사례를 몇 가지 추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아래에 기술하였음

- 생명 보험에 관한 권리 가액 산정방법 예시
 - 보험(공제 포함)에 관한 권리가액은 그해 12월 31일에 그 생명보험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에 지급되는 해약 반려금액을 그 재산가액으로 산정해도 됨
 - 이는 생명보험계약이 만기환급액을 연금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함
 - 손해보험계약에 관한 권리의 가액 산정시에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 연금에 관한 권리 가액 산정방법 예시
 -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생명 보험계약에 대한 평가도 그해 12월 31일에 그 생명보험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에 지급되는 해약 반려금액을 그 재산가액으로 산정해도 됨
 -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권리의 가액 산정시에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 스톡옵션에 대한 산정방법 예시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에 대한 권리는 스톡옵션 대상 주식의 12월 31일 주당가액에서 주당권리 행사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취득가능 주식 수를 곱하여 산정함
 - 스톡옵션 대상 주식의 12월 31일 주당가액은 금융상품거래소 등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 12월 31일의 종가를 사용하고, 비상장주식의 경우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매매 사례가액 등에 의해 가격을 산정함

- 민법에 규정하는 조합계약 등 기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출자가액에 대한 산정방법 예시
 - 우선 일본 국세청은 민법에 규정하는 조합계약 등 기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출자가액의 예로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한 외국의 파트너십 투자계약에 따른 출자가액을 들고 있음

- 그 출자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음
 - 사업자가 실시하는 사업에 관한 계산서 등의 송부가 있는 경우: 그해 12월 31일 또는 이전 일 중 가장 가까운 날에 결산이 완료된 계산서 등에 따라 계산한 그 사업자의 순자산가액에 출자비용을 곱한 가액
 - 사업자가 실시하는 사업에 관한 계산서 등의 송부가 없는 경우: 출자액

□ 신탁에 관한 권리 가액의 산정방법 예시

- 우선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는 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의해 생기는 이익을 받을 권리(수익의 수익권)와 신탁 종료 후에 신탁재산 자체에 대한 권리(원금의 수익권)으로 구분됨
- 수익의 수익권자와 원금의 수익권자가 같을 경우: 신탁재산의 견적가격
- 수익의 수익권자와 원금의 수익권자가 다를 경우
 - 수익의 수익권: 수익자가 미래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현재가치 등으로 평가
 - 원금의 수익권: 신탁재산의 견적가격에서 수익의 수익권가액을 차감한 가액

□ 외화환산의 방법 예시

- 국외 재산의 가액이 외국 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국외 재산의 가액에 그해 12월 31일 금융기관이 공표하는 현물구매시세 종가로 환산함

3) 국외재산조서의 기재사항

- 신고는 국외재산조서와 국외재산조서합계표의 두 가지 신고서식을 통해 이루어짐
- 먼저 국외재산조서는 국외재산보유자의 상세주소와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외재산의 종류(일반용 혹은 상업용), 수량, 가액과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국외재산은 일반용과 상업용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산림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의 경우 상업용으로 분류하고 그 밖의 재산은 일반용으로 구분하고 있음

- 국외재산조서합계표는 국외재산을 12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각 자산종류별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국외재산은 토지, 빌딩, 산림, 현금, 예금, 증권, 대출, 미수금, 서화골동품 및 미술 공예품, 귀금속류, 그 밖의 동산, 기타재산으로 구분됨

〈표 Ⅲ-10〉 국외재산조서의 기재사항

내용	세부내용
○ 국외재산조서	○ 국외재산보유자의 상세주소와 성명 기재 ○ 국외재산의 종류(일반용 혹은 상업용), 수량, 가액과 소재지 기재
○ 국외재산조서 합계표	○ 국외재산을 12가지로 구분하여 각 자산종류별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 ○ 토지, 빌딩, 산림, 현금, 예금, 증권, 대출, 미수금, 서화골동품 및 미술 공예품, 귀금속류, 그 밖의 동산, 기타재산으로 구분됨

다. 미신고 및 과소신고 등에 따른 제재

- 일본의 국외재산조서 신고와 관련하여 미신고와 허위신고시 제재사항뿐 아니라 자발적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세제상 혜택도 있음
- 국외재산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재산으로 인한 소득세 및 상속세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하거나 가중함
 - 국외재산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국외재산조서에 기재된 국외 재산에 관하여 소득세 및 상속세의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의 5%를 감면함⁶⁵⁾
 - 국외재산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기한 내에 제출된 국외재

65) 국외송금등조서법 제6조

산조서에 기재하여야 할 국외재산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국외 재산에 관하여 소득세 및 상속세의 신고누락으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가 5% 가중됨⁶⁶⁾

- 국외재산조서를 허위기재한 경우 또는 국외재산조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⁶⁷⁾
- 국외재산조서의 제출에 관한 조사에 대하여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 답변하거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 한때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⁶⁸⁾
- 국외재산조서의 제출에 관한 조사에 대해 대상이 되는 증빙의 제시 또는 제출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기재 또는 기록을 한 장부 및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⁶⁹⁾

3. 호주

- 호주의 해외금융계좌신고는 소득세법(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 ITAA 1936)의 제161조 및 제162조에 의해 고액자산가전담팀(High Wealth Individuals Taskforce: HWIT)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신고되는 서식인 확장소득신고(expanded income tax returns)에 포함되어 있음
- ITAA 1936의 제161조 및 제162조는 확장세금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66) 국외송금등조서법 제6조 제4항

67) 국외송금등조서법 제10조

68) 국외송금등조서법 제9조

69) 국외송금등조서법 제9조

- 제161조 연차신고(annual returns)는 일반적인 소득신고에 대해 규정
- 제162조 추가 신고 및 정보(further returns and information)는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요구되는 기간 내에 승인된 서식에 따라 다음을 제출해야 함
 - 소득신고 여부와 관련된 신고서 또는 상세한 신고서
 - 재정사항에 관한 여타 정보, 명세서 또는 문서

□ 호주 과세당국(Australia Tax Office: ATO)은 1996년 5월 HWIT을 창설함⁷⁰⁾

- 고액자산가(High Wealth Individuals: HWI)의 조세전략에 대한 이해, 자발적 신고의 촉진, 조세개혁에 기여, 과세체계에 대한 사회적 확신의 증진을 위해 설립됨
- HWI란 3천만호주달러 이상의 순자산을 통제(control)하고 있는 납세자임
 - 통제에 대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개인이 기업에 대해 주요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개인과 기업을 포함하여 모니터링되고 있다고 기술되어 주요 의사결정권한은 하나의 예가 되는 것으로 판단됨
 - 집단(group)의 통제와 소유는 일반적인 공개기업이 부담하지 않는 경제적 세무상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함
 - 통제에 있어서 위험의 부담이란 집단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개인이 자산을 직접 취득하지 않고 집단의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함

가. 신고의무자

- 신고의무자는 HWIT에 의해 확장소득신고의 통보를 받는 납세자와 관련 기업(associated entities)임
 - 납세순응 위험요인평가를 위한 절차 중 하나인 특정 위험평가(specific review)를 수행하는 데 확장소득신고가 요구됨⁷¹⁾

70) ATO, "Wealthy and wise A tax guide for Australia's wealthiest people," ATO, March 2008, pp.4~7.

71) ATO는 납세협력프로세스를 위험평가(risk review)와 조사(audit)을 통해 운영하는데 위험평가는 다시 세부 검토 이전에 위험(또는 가정)을 형성하여 추출하는 절차인 예비적 위험평가(preliminary risk review), 세부 조사 및 대응이 필요한지 여부를 알기 위해 최초 가정을 검증하고 개선하여 위험을 식별하는 포괄적 위험평가(comprehensive risk review), 개별적으로 발견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특정

- 통보는 매년 연방등록공고(Federal register of legislative instruments)에 의한 신고고지(lodgment notice)에 의해 이루어짐
 - 정상적인 신고가 이루어진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ITAA 1936 제162조에 따라 확장소득신고서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나. 신고대상

- 신고대상 거래의 내용은 승인된 양식인 확장소득신고서 서식에 포함되어 있음
- 확장소득신고서는 개인, 법인, 파트너십 및 신탁의 형태로 구분되어 있음
 - 확장소득신고서 서식은 앞에 기본신고서식의 이름의 앞에 H/가 부가되어 있음

〈표 Ⅲ-11〉 확장소득신고서 서식

납세자 구분	신고 서식
법인	H/Company tax return 2013
개인	H/Individual tax return 2013
파트너십	H/Partnership tax return 2013
신탁	H/Trust tax return 2013

- 개인 신고서식 Accompanying schedule no. 1의 3에서는 해외거래(overseas transactions)에 대한 신고내용을 담고 있음
 - 신고서식 3(a)는 국외에서의 5만호주달러 이상의 거래, 3(b)는 국외에서 차입을 통한 이자비용 공제, 3(c)는 국외 서비스 등에 따른 부채, 3(d)는 국외 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지급액의 공제 여부에 대해 정보를 기재하도록 함
 - 신고서식 3(e)에서는 국외에서 금융기관에 계좌를 보유하거나 계좌의 서명인인 경우 다음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함
 - 계좌의 수

평가(specific review)로 나뉜다.

- 계좌가 존재하는 금융기관의 이름 및 주소
 - 외국국가의 코드(사전에 국가별 코드가 부여되어 있음)
 - 계좌명
 - 당 계좌로부터 이자수취 여부
- 신고서식 3(f)에서는 국외에 소재하거나 국외에서 관리되는 펀드, 부동산, 투자자산 등의 유·무형자산에 대한 수익지분을 보유하거나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다음 정보를 기재하도록 함
- 자산의 특성 및 설명
 - 자산이 위치한 국가 및 국가코드
 - 자산의 원가
 - 자산을 보유하거나 통제하게 된 일자
 - 자산을 원가 이외에 평가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평가에 대한 기술(평가일자 및 평가금액 포함)
 - 대리하여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기업의 이름 및 거주국가
 - 자산을 수익활동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 신고서식 3(g)에서는 국외에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보유하거나 이를 제공한 경우 다음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함
- 계좌의 수
 - 카드를 발급한 금융기관의 이름 및 주소
 - 외국국가의 코드
 - 카드를 제공받은 자의 이름
 - 계좌의 이름
 - 계좌를 지급한 자의 이름
 - 계좌와 관련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경우 이에 대한 성격, 금액 및 그 사유
 - 당 계좌로부터 이자수취 여부

□ 법인, 파트너십, 신탁 신고서식 Accompanying schedule no. 1의 3에서도 해외거래 (overseas transactions)에 대한 신고내용을 담고 있음

- 신고대상거래 및 세부신고내용은 개인 신고서식과 동일하나 본문에서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포함하고 있음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존재 여부, 이러한 거래가 유·무형자산 또는 금융약정의 이전과 관계있는지 여부 및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200만호주달러를 초과하는지 여부
- 국외지점이나 국외신탁, 국외기업, 신탁 등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특정 국가와 직·간접적으로 거래가 존재하거나 특정 국가에 펀드나 자산을 이전하거나 수취하였는지 여부 및 특정 국가에 소재하거나 특정 국가에서 관리 또는 통제하는 펀드, 부동산, 자산 또는 투자를 처분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능력을 보유하고거나 통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
 - 2013년 현재 특정 국가는 안도라, 바하마, 바레인, 버뮤다, 케이만군도, 사이프러스,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버진아일랜드 등 총 39개 국가임⁷²⁾

다. 미신고 및 과소신고 등에 따른 제재

- 납세자가 확장소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연장신고, 미신고에 따른 최후통지 또는 추가 집행의 정지에 따른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기소절차가 개시된다는 통지를 함
 - 최후통지에 신고기한이 없으므로 최소 28일간의 준수기간을 허용
 - 납세자에게 접촉하여 즉시 신고되지 않으면 기소절차가 개시된다고 통보
 -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에게 사건을 이첩함
- 소득세징수법(Tax Administration Act 1953: TAA 1953)의 8C(1)에서 과세관청 등에 (a) 승인된 양식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 (b) 세법에 따라 요구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 무과실책임(absolute liability)인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
 - TAA 1953 8E에서는 의무불이행의 반복 정도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음

72) ATO, "Company tax return instructions," 2013, p. 75.

- 의무불이행이 처음인 경우는 20 penalty units 이하, 두 번째는 40 penalty units 이하, 그 이상인 경우는 12개월 이하의 징역 및 50 penalty units 이하의 벌과금을 부여할 수 있음
- penalty unit은 매년 변경되는데 2013년 5월 31일 현재 1 penalty unit은 170호 주달러임

4. 아일랜드

- 아일랜드는 해외금융계좌 등의 신고와 관련된 규정은 조세통합법(Taxes Consolidation Act 1997: TCA 1997)에 포함되어 있음
 - 제895조는 해외계좌와 관련된 신고의무>Returns in relation to foreign accounts)를 규정함
 - 제896조는 특정 역외상품에 대한 신고의무>Returns in relation to certain offshore products)를 규정함

가. 신고의무자

1) 해외계좌 신고의무자

- 해외계좌와 관련해서는 중개인(intermediary)과 거주자(resident)에게 신고의무가 부여됨
 - 신고 대상이 되는 금액 기준은 명시되지 않음
- 중개인이란 국내에서 거주자를 대신하여 해외계좌의 개설 중개하는 활동 또는 예금을 수령하거나 보유하는 영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해외계좌를 개설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정상적인 활동으로 거래나 사업을 수행하는 자임
 - 중개인은 주로 금융기관과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을 의미하지만 폭넓게 적용될

수 있으며 반드시 금융서비스를 의미하지 않음

– 예를 들어 회계사나 경매업자가 주된 영업의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개인이 될 수 있음⁷³⁾

○ 예금을 수령하거나 보유하는 영업을 수행하는 자(relevant person: 관련자)는 국내 금융기관의 외국지점을 포함⁷⁴⁾

□ 거주자는 개인에 대해 거소기준으로 판단함⁷⁵⁾

○ 개인이 당해 기간 동안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는 경우

○ 개인이 당해 기간과 이전기간을 합하여 총 280일 이상의 거소를 두는 경우

– 다만 당해 기간 동안 30일 이하의 거소를 두는 경우 거주자로 보지 않음

○ 개인이 거주자로 위의 조건에 따라 거주자로 판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도와 상황에 따라 국내에 거소를 둔다고 조세공무원(authorized officer)이 판단하는 경우 다음기간에 거주자가 해당됨

– 이러한 조항이 적용되면 당해 기간에도 거주자로 간주 될 수 있음

○ 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일의 종료일에 국내에 거소를 두면 하루로 인정됨

2) 역외상품 신고의무자

□ 역외상품과 관련해서도 중개인(intermediary)과 납세자(person)에게 신고의무가 부여됨

○ 신고대상이 되는 금액 기준은 명시되지 않음

□ 중개인이란 국내에서 거주자를 대신하여 아래와 같은 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정상적인 활동으로 거래나 사업을 수행하는 자임

73) Duty & Tax Manual - Section 16, Income Tax Capital Gains Tax Corporation Tax, Part 38-03-02, Returns to be made by Intermediaries in the Financial Service area. p. 2.

74) Taxes Consolidation Act 1997 Notes for Guidance (Finance (No.2) Act 2013 Edition), Part 38, p. 33.

75) Taxes Consolidation Act 1997, Part 34 Provisions Relating to the Residence of Individuals, §819.

- 역외상품의 판매활동, 거주자나 일상거주자(ordinarily resident)를 대신하여 중개인으로서 역외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득과 처분 활동, 역외상품 처분시 귀속자에게 지급하는 활동
 - 거주자의 개념은 위의 해외계좌 신고의무자에서와 동일함
 - 일상 거주자란 이전 3개 기간 동안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당해 기간에는 일상 거주자에 해당되며, 일상 거주자에 해당되면 이전 3개 기간 동안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만 일상 거주자의 지위가 중단됨⁷⁶⁾

나. 신고대상

1) 해외계좌 신고

가) 신고 대상

- 신고대상은 해외계좌로 국외의 지역에 보유하는 예치금이 존재하는 계좌임

나) 중개인의 신고

- 모든 중개인은 과세기간의 특정 신고일 이전까지 해외계좌의 개설에 중개 역할을 수행한 모든 거주자에 대해 신고해야 함
 - 과세기간의 특정 신고일은 두 가지로 구분됨
 - 과세기간이 평가연도(calendar year를 의미)가 적용되는 경우 10월 31일까지
 - 과세기간이 기업의 회계기간인 경우 회계기간 종료 후 9개월까지
- 중개인은 신고서식은 Form 8B-B(Return of Third Party Information by Intermediaries)을 사용하며 신고대상 정보는 다음과 같음
 - 거주자의 이름과 주소
 - 거주자의 세무상 일련번호

76) Taxes Consolidation Act 1997, Part 34 Provisions Relating to the Residence of Individuals, §820(1).

- 사회보장번호(the Revenue and Social Insurance Number)
 - 소득세 신고서 또는 국세공무원에 의해 고지된 조사통보서에 기재된 일련번호
 - 부가가치세 목적의 등록번호
 - 공동계좌의 여부
 - 해외계좌가 개설된 관련자의 이름과 주소
 - 해외계좌가 개설된 일자
 - 해외계좌 개설시 예치금액
- 중개인의 신고와 관련하여 거주자와 중개인은 각각의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함
- 거주자는 중개인이 신고하는 항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
 - 중개인은 합리적인 주의의무가 부여되어 거주자에 의해 제공된 세부내역이 진실되고 정확한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함
 - 필요할 경우 거주자에 대해 문서화된 증거를 요구할 수 있음

다) 거주자의 신고

- 거주자가 직·간접적으로 해외계좌를 개설하거나 해외계좌의 수익자가 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세의무자로 간주됨
- 이는 원천징수의무(Pay as you earn: PAYE)만을 부담하는 개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로 보지 않아 소득신고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정한 규정임⁷⁷⁾
- 거주자는 납세의무자로서 소득신고시(Form 11: Pay and File Income Tax Return for the year) 본인, 배우자 및 동성배우자(civil partner)가 수익자인 해외계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 해외계좌가 개설된 관련자의 이름과 주소
 - 해외계좌가 개설된 일자

77) Taxes Consolidation Act 1997 Notes for Guidance (Finance (No.2) Act 2013 Edition), Part 38, p. 34.

- 해외계좌 개설시 예치금액
- 해당한다면 해외계좌 개설과 관련하여 관련 활동을 제공한 중개인의 이름과 주소

2) 역외상품의 신고

가) 신고 대상

- 역외상품은 역외펀드에 대한 물질적 지분(material interest in an offshore fund)과 해외보험계약(foreign life policy)으로 구분됨
 - 역외펀드에 대한 물질적 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음⁷⁸⁾
- 역외펀드에 대한 지분이란 다음의 세 가지에 대한 지분을 의미함
 - 국외의 기업
 - 일반적으로 국외 관리 또는 피지배기업을 의미⁷⁹⁾
 -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펀드형태(unit trust scheme)
 - 앞의 두 가지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국외법에 의해 유효하고 공동소유형태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상의 약정
- 다음 항목에서 취득 후 7년 이내에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업, 펀드형태 또는 약정에 대한 지분은 물질적 지분으로 판단함
 - 7년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10년 내의 존속기간을 가지고 있는 벤처캐피털을 제외하기 위한 의도임⁸⁰⁾
 - 7년 이내의 실현은 객관적이어야 하며 보유자의 의도적으로 7년 이내 실현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함⁸¹⁾

78) Taxes Consolidation Act 1997, Part 27 Unit Trusts and Offshore Funds, §743(1).

79) Taxes Consolidation Act 1997 Notes for Guidance (Finance (No.2) Act 2013 Edition), Part 27, p. 37.

80) Taxes Consolidation Act 1997 Notes for Guidance (Finance (No.2) Act 2013 Edition), Part 27, p. 37.

81) Taxes Consolidation Act 1997 Notes for Guidance (Finance (No.2) Act 2013 Edition), Part 27, p. 37.

- 지분이 직·간접적으로 기업 또는 펀드형태 및 계약의 대상자산 시장가치의 해당 부분을 합리적으로 나타내고 있어 이 금액으로 실현할 수 있다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함
 - 금전이나 지분의 가치에 해당하는 다른 자산의 형태로 수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실현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역외펀드의 지분이 시장성이 있어서 대상자산의 시장가치보다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면, 이러한 높은 가치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음
 - 영국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주식의 가치가 기업의 자산가치와 일관되게 변동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예에 해당함⁸²⁾

- 은행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대여형태의 대출채권, 사채 등의 지분이나 보험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는 물질적 지분으로 보지 않음
 - 대출채권이나 사채가 차입자의 자산에 대한 지분을 표방하지 않고 단순히 이자와 원금을 수취하는 형태이기 때문임

- 국외의 기업에 대한 지분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물질적 지분으로 보지 않음
 - 주식이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유지 또는 착수하기 위해 보유
 - 주식이 최소 10%의 의결권과 잔여지분청구권이 부여됨
 - 국외의 기업의 주주가 10명 이하이며 모든 주주가 의결권과 잔여지분청구권이 부여됨
 - 취득 시점에 취득 후 7년 내에 주식을 다른 주주에게 매각할 수 있는 약정 또는 7년 내에 회사가 청산할 것이라는 약정을 통해 회사가 실현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음

- 다음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물질적 지분으로 간주되지 않음
 - 지분 보유자가 회사를 청산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
 - 지분 보유자가 청산시점에 잔여지분의 50% 이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

82) Taxes Consolidation Act 1997 Notes for Guidance (Finance (No.2) Act 2013 Edition), Part 27, p. 37.

- 해외보험계약이란 국외에서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보험회사 혹은 이의 지점·대리인과의 보험계약을 의미함

나) 중개인의 신고

- 신고기간에 대한 내용은 해외계좌와 동일
- 중개인의 신고서식은 Form 8D (Return of Third Party Information by Intermediaries in relation to Offshore Products)를 사용하며 신고내용은 해외계좌와 유사하게 다음의 정보를 포함함
 - 납세자의 이름, 주소
 - 납세자의 세무상 일련번호
 - 역외상품의 명칭
 - 제공된 역외상품의 판매활동, 중개인으로서 취득과 처분 활동, 지급 활동의 설명
 - 관련 역외상품의 설명 및 역외상품을 발행한 자의 이름과 주소를 포함
 - 역외펀드와 관련하여 개인이 불입하거나 개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세부내역

다) 납세자의 신고

- 납세자는 납세의무자로서 소득신고시(Form 11) 신고내용은 해외계좌와 유사하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 역외펀드 보유자 또는 보험자의 이름과 주소
 - 유의적인 지분취득에 대한 원가 또는 보험계약 조건의 설명 등을 포함한 내역
 - 상품을 취득하는 데 있어 중재한 자의 이름과 주소

다. 미신고 및 과소신고 등에 따른 제재

- 제재에 대한 내용은 해외계좌와 역외상품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됨

1) 중개인과 관련된 제재

- 중개인은 다음의 각각의 의무마다 4천파운드의 벌과금이 부과됨
 -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 거주자에 대한 세부정보를 누락하는 경우
 - 거주자에 의해 제공된 세부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 중개인을 이용한 거주자 또는 납세자는 다음의 경우 4천파운드의 벌과금이 부과됨
 - 중개인에게 세부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중개인에게 부정확한 세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해외계좌와 관련해서 위의 민사제재벌금(civil penalty) 이외에 범죄혐의로 기소되는 경우 최대 126,970파운드를 넘지 않는 벌금형 및 징역형이 가해질 수 있음

2) 거주자와 관련된 제재

- 거주자는 소득신고 지연제출과 관련한 가산세(surcharge)와 동일한 규정의 제재인 제 1084조의 적용을 받음
 - 신고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 세액의 5%(최대 1만파운드)의 가산세가 적용됨
 - 신고기간 종료 후 2개월 이후에 신고할 경우 세액의 10%(최대 5만파운드)의 가산세가 적용됨

5. 프랑스

- 1990년 재정법에 따른 조세일반법(Code General Des Impots) 제1649A조에서 해외계좌 등에 대한 신고를 규정하고 있음

- 동조에서는 프랑스에 거주하거나 설립된 개인, 비영리단체, 사업적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는 회사는 해외에 개설, 사용, 폐쇄된 계좌에 대해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세부적인 적용방법은 부칙의 344A와 344B(Voir les articles 344 A et 344 B de l'annexe III)에서 규정하고 있음
- 벌칙규정은 제1736조의 IV에서 규정하고 있음

가. 신고의무자

- 신고의무자는 개인, 비영리단체(associations), 상업적 형태를 가지지 않는 회사(societes n'ayant pas la forme commerciale)임
 - 개인은 거주자 및 가구를 구성하는 세대 등을 포함
 - 법적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비영리단체를 포함
 - 상업적 형태를 가지지 않는 회사란 주식회사(sociétés anonymes: SA), 유한회사(sociétés à responsabilité limitée: SARL), 주식합자회사(sociétés et en commandite par actions) 이외의 회사를 의미함
- 거주자인 수익자를 대리하여 계좌를 개설하였더라도 신고의무대상에 포함됨

나. 신고대상

- 신고대상은 보유자 또는 수익자로서 해당기간에 개설, 폐쇄 또는 사용되고 있는 모든 계좌임
 - 은행 등의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공증인, 중개인과의 관계에서 개설한 계좌를 모두 포함함
 - 일반적으로 신고대상은 저축계좌, 투자계정, 보험증권을 포함한 예금증서 및 증권임
 - 계좌가 1월 1일에 개설되어 있으면 보고되어야 하므로 1일 이후에 폐쇄하였더라도 보고대상이 됨

- 신고대상이 되는 금액 기준은 없음

- 신고시에는 No. 3916 ‘프랑스 이외의 계좌를 개설한 거주자 신고(Declaration Par Un Resident D’un Compte Ouvert Hors De France)’ 양식이 존재하나 별도의 상세내용을 기재한 양식도 가능함
 - 신고서 서식에 포함된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음
 - 금융기관의 이름
 - 계좌의 번호, 이름과 특성(계좌의 약관내용 등)
 - 계좌의 사용목적(개인적 사용 또는 사업 등을 위한 목적), 형태(단독계좌 또는 공동계좌, 부동산계좌 등)
 - 계좌의 수가 다수인 경우 각 계좌별로 작성

- 다만 온라인 구매대금 결제목적계좌이며 결제금액이 연간 1만유로를 초과하지 않으며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 온라인 결제계좌로 이용하는 Paypal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임

다. 미신고 및 과소신고 등에 따른 제재

- 신고는 매 기간마다 소득신고와 동시에 이루어짐

- 미신고 또는 신고내역의 오류시에는 제재가 이루어짐
 - 미신고 계좌당 1,500유로의 벌과금이 부과되며 프랑스가 금융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조세정보교환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 대한 미신고시에는 벌과금이 계좌당 1만유로로 증가함
 - 미신고금액이 5만유로 이상인 경우 위의 벌과금을 하한으로 잔액의 5%를 벌과금으로 부과함
 - 오류나 부정확한 신고시에는 150유로의 벌과금이 부과되지만 총벌과금 합계액이 1만유로를 초과할 수 있음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1. 국제비교

가. 신고의무자

-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거주자와 내국법인 중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의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하는 자가 신고의무자임
 - 당초 제도 도입시 연중 최고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의무를 부여하였으나 2012년 말 신고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당연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10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정됨
 - 동 개정 내용은 2014년 신고분부터 적용됨
 - 한편, 종전에는 국내 및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에 대해서는 모두 신고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었으나, 효과적인 역외탈세방지를 위해서 금융위원회에 미등록한 외국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함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해당 계좌를 개별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관련자 모두에게 각각 신고의무를 부담시킴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를,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을 의미함

- 미국은 은행비밀보호법(The Bank Secrecy Act)에 따른 FBAR와 FATCA에 따른 소득세 신고양식(Form 8938)을 이용한 해외금융자산 신고제도가 병존하며, 신고의무자는 각각 다음과 같음
 - FBAR의 신고의무자는 하나 이상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재무지분이나 서명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국내기업(법인, 파트너십, 유한회사, 신탁) 중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보고대상 기간 중 어느 순간⁸³⁾이라도 1만달러를 넘는 자임

- 신고의무자인 재무지분이 있는 자를 정의하면서 법률적 소유자뿐만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⁸⁴⁾ 수익적 소유자도 법률적 소유자와 함께 신고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미국에서는 명시적으로 “수익적 소유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수익적 소유자로 해석될 만한 신고의무자를 열거하고 있음⁸⁵⁾
- 예를 들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해외파트너십 지분을 51% 보유하고 있는 미국기업은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재무적 지분을 보유한 자로 열거하고 있어서 동 미국기업은 해외계좌신고대상에 해당함
- 또한 서명의 권한이 있는 자를 신고의무자로 규정함으로써 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하여 권한이 있는 임직원도 법인의 신고의무와는 별개로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하였음⁸⁶⁾

- Form 8938의 해외금융자산 신고의무자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특정한 개인비거자 중 신고대상기간 종료일에 5만달러를 넘게 해외금융자산을 보유하거나 연중 어느 순간이라도 7만 5천달러를 넘게 해외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임
 - 미 국세청에서는 향후 기업 등에 대해서도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시행령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그 이전에는 개인에게만 신고의무가 있음
 - 신고기준금액은 부부합산신고 여부에 따라 변경됨

□ 일본은 해외에 소재한 재산의 합계액이 당해 연도의 말(12월 31일) 현재 5천만엔을 초과하게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비영주권자는 제외)는 다음해 3월 15일까지 국외재산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여기서 거주자란 개인거주자만을 의미함⁸⁷⁾

83) 미 국세청에서는 이를 “at any time”으로 표현하고 있어, 매일의 잔액이 아닌 연중 어느 순간이라도 1만달러를 넘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았음

84) 동 규정은 예시규정이 아닌 열거주의로 사료됨

85) IRS, “Internal Revenue Manual”

86) SEC 상장법인 등 예외사항을 두고 있음(본문 참조)

- 호주의 신고의무자는 HWIT에 의해 확장소득신고의 통보를 받는 납세자 및 관련 기업
 - 관련 기업은 법인, 파트너십, 신탁 등을 모두 포괄하며 일반적으로 개인, 가족구성원 및 특수관계자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를 의미함
 - 지배나 소유의 의미는 경제적으로나 세무상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룹의 자금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함⁸⁸⁾
 - 통보는 매년 연방등록공고에 의한 신고고지에 의해 이루어짐
 - 신고의무자의 선정은 HWIT의 포괄적인 위험평가에 일환으로 이루어짐
 - 지침 및 납세프로그램 등에 따르면 3천만호주달러 이상의 순자산을 통제(control)하고 있는 고액자산가 중 선정이 이루어지며 2012~2013년에 2,600여 명의 고액자산가에 대해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음⁸⁹⁾

- 아일랜드에서는 해외계좌 및 역외상품과 관련하여 중개인과 거주자(역외상품에서는 납세자)에게 신고의무가 부여됨
 - 중개인이란 해외계좌의 개설, 역외상품의 판매·취득·처분·소득지급 등의 활동을 중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금융기관에 한정되지 않음

- 프랑스에서는 개인, 비영리단체, 상업적 형태를 가지지 않는 회사 등에 대해 신고의무가 부여
 - 개인은 거주자 및 가구를 구성하는 세대 등을 포함
 - 상업적 형태를 가지지 않는 회사란 주식회사, 유한회사, 주식합자회사 이외의 회사를 의미함
 - 거주자인 수익자를 대리하여 계좌를 개설하였더라도 신고의무대상에 포함됨

87) 일본 국세청, 『国外財産調書の提出制度(FAQ)』, 2013. 11

88) ATO, "Wealthy and wise A tax guide for Australia's wealthiest people," March 2008, p. 5.

89) ATO, "Compliance Program 2012-2013," July 2012, p. 54.

〈표 IV-1〉 신고의무자의 비교

구분	신고의무자
한국	○ 개인 거주자와 법인거주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하는 자
미국	○ FBAR의 경우 - 하나 이상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재무지분이나 서명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국내기업(법인, 파트너십, 유한회사, 신탁) 중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보고대상 기간 중 어느 순간이라도 1만달러를 넘는 자가 신고의무자
	○ Form 8938의 경우 - 시민권자, 영주권자, 특정한 개인비거주자 중 신고기준금액을 넘게 해외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
일본	○ 해외에 소재한 재산의 합계액이 당해 연도의 말(12월 31일) 현재 5천만엔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개인 거주자(비영주권자는 제외)
호주	○ HWIT에 의해 통보받는 고액자산가 및 관련 기업
아일랜드	○ 거주자(또는 납세자) 및 중개인 - 해외계좌는 개인인 거주자에게만 의무가 부여되나 역외상품은 모든 납세자에게 의무가 부여됨 - 중개인은 해외계좌와 역외상품 모든 경우에 의무가 부여됨
프랑스	○ 개인, 비영리단체, 상업적 형태를 가지지 않는 회사 - 수익자의 대리인에게도 의무가 부여

나. 신고대상

-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자산은 해외금융회사에서 개설한 모든 금융자산 관련 계좌임
-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를 의미함
 -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포함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함
 - 당초 제도 도입시에는 은행, 증권 관련 개설 계좌만을 신고의 대상으로 열거하였으나, 2012년 말 세법개정을 통해 신고대상자산에 대한 정의를 사실상 예시규정으로 변경하여, 채권, 파생상품, 보험 등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는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하였음

- 미국의 경우는 FBAR과 FATCA에 따른 Form 8938의 신고대상자산에 차이가 존재함
 - FBAR의 신고대상자산은 다음과 같음
 - 해외금융계좌는 미국 외의 모든 지역⁹⁰⁾에 있는 국가의 계좌를 의미하는데,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국적이 아닌 계좌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에 따르는 것으로 미국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의 계좌는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나, 외국 금융기관의 미국 내 지점은 신고대상이 아님
 - 신고대상 계좌는 은행, 증권, 파생상품, 펀드계좌, 기타 금융계좌임
 - Form 8938의 신고대상자산은 해외금융계좌뿐 아니라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보유중인 유가증권이나 해외기업체에 대한 지분, 그리고 거래의 상대방이나 발행자가 미국인이 아닌 금융상품이나 계약 등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⁹¹⁾

- 일본의 경우는 연도 말 합산하여 5천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국외에 소재하는 모든 재산이 신고대상임
 - 다른 비교대상 국가에 비하여 재산의 소재 판정 및 재산 가액 산정의 방법에 대해 국세청에서 매우 상세히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음
 - 부동산이나 광업권의 경우는 대상물의 소재지, 퇴직수당의 경우는 급여를 지불한 자의 본점 소재지, 대여금의 경우 채무자의 소재지, 특허권은 등록을 한 기관의 소재지, 주식은 주식발행법인의 본점 소재지 등에 따라 해외재산 여부를 결정함
 - 재산의 가치는 해당 연도 말 시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시가에 준하는 견적가격의 예시를 제공하고 있고 상속 및 증여세법상의 과세가격 계산 방침인 재산평가기본통달을 사용할 수 있게 규정하였음

90) 미국은 미국의 여러 주뿐만 아니라 워싱턴 DC, in the Indian Gaming Regulatory Act에 따른 인디언 지역, 푸에르토리코 연방, 미국 버진 아일랜드, 괌, 아메리칸 사모아와 북마리아나제도 연방을 포함

91) 참고로 FBAR의 경우에는 신고의무자에 서명권한이 있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지배기업의 신고대상자산에 종속기업의 계좌를 포함시키나 Form 8938의 경우는 그렇지 않음. 이에 다른 실체(entity)를 통한 간접적인 해외금융자산의 소유지분에 대해서는 FBAR에 의해서는 신고대상이 되나 Form 8938에 의해서는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하 FBAR과 Form 8938의 비교는 본문을 참조할 것

- 호주의 신고대상자산은 해외금융계좌뿐만 아니라 여타 자산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신고대상자산을 해외금융계좌, 수익지분 또는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펀드, 부동산, 투자자산 등의 유·무형자산,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등을 포함함

- 아일랜드의 신고대상자산은 해외계좌와 역외상품으로 구성됨
 - 역외상품은 역외펀드에 대한 물질적 지분과 해외보험계약으로 나누어짐
 - 역외펀드에 대한 물질적 지분은 국외기업, 펀드, 유사 약정에 대한 지분이 7년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 해당됨
 - 물질적 지분을 충족하는 조건과 비충족하는 조건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위의 7년 내의 실현조건 이외에 실현이 지분이 표방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실현인지 지분 자체에 대한 실현인지로 구분되며 전자의 경우 해당됨

- 프랑스의 신고대상자산은 모든 계좌로 금융기관 이외에 대한 계좌를 포함함
 - 일반적으로 신고대상은 저축계좌, 투자계정, 보험증권을 포함한 예금증서 및 증권임
 - 온라인 구매대금 결제목적 계좌인 경우 연간 1만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등의 조건 만족시 신고의무가 면제됨

〈표 IV-2〉 신고대상자산의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아일랜드	프랑스
금융계좌 신고 여부	○	○	○	○	○	○
계좌외 금융자산 신고 여부	×	○	○ ¹⁾	○	○	○
비금융자산 신고 여부	×	×	○	○	×	×
신고대상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업무 관련 개설 계좌 ○ 증권거래 관련 개설 계좌 ○ 채권, 파생상품, 보험 등 계좌 ○ 그 밖의 금융 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B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증권, 파생상품, 펀드 계좌, 기타 금융계좌 ○ Form 89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증권, 파생상품, 펀드 계좌, 기타 금융계좌상 금융자산 - 직접 보유중인 유가증권이나 해외기업체에 대한 지분 - 거래 상대방 미국인이 아닌 금융상품이나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에 소재한 모든 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계좌 ○ 펀드, 부동산, 투자자산 등의 유·무형자산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해외금융계좌 ○ 역외펀드에 대한 물질적 지분 ○ 해외보험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해외금융계좌(저축, 투자, 보험을 포함)

주: 1) 일본의 경우 금융기관에 예치 여부(계좌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국외에 소재한 모든 재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다. 미신고 및 과소신고 등에 따른 제재

- 우리나라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미신고, 허위신고, 허위소명시 과태료 및 벌금 그리고 징역형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국조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과태료 규정과 국조법 제34조의 2에 의한 벌금 및 징역형으로 구분되며, 후자의 벌금 및 징역형이 적

용되는 경우 전자의 과태료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미신고 혹은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미신고금액(과소신고금액)의 금액에 따라 최소 4%에서 최대 10%까지 차등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금액의 10%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 및 징역형은 병과될 수 있음
 - 내국법인의 대표자,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고, 그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함
 - 미신고, 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 초과시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시 시 함께 공개할 수 있음
 - 신고위반행위 적발관련 자료 제공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5~15%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한편, 우리나라는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수정신고일까지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50%에서 최소 10%까지 차등적으로 경감해주고 있으며, 기한후신고의 경우 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20%(1개월 내 50%)의 과태료를 경감해주고 있음
- 미국의 경우 FBAR과 FATCA에 따른 Form 8938 신고는 각각 별개의 의무로서, 신고의 무 위반시 각각의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됨
- 미국의 FBAR과 관련된 신고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를 기본으로 하되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에 추가하여 벌금과 징역형이 병과됨
- 미신고 및 과세당국의 소명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500달러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하나 과실이 반복적일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5만달러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일회성 과실로 인한 과태료는 개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 한편, 미국의 경우 고의적인 미신고 및 과세당국의 소명 요청 불응시 10만달러와 위반시점의 계좌잔고의 50% 중 큰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며, 추가적으로 최대 50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벌금과 징역은 병과가 가능함
 - 한편, 2004년 10월 이전에는 고의적인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규정에 10만달러를 한도로 정하고 있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동 한도를 폐지하였음
- 한편, 미국의 Form 8938과 관련된 신고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미신고 및 허위신고 시 1만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국세청이 이와 관련된 안내장을 신고의무자에게 송부한 후 90일 이내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시에는 추가적으로 30일당 1만달러의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음
- 한편, 이외는 별도로 Form 8938에 미신고한 해외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소득세를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과소납부 금액의 40%를 가산세로 부담하는 중과규정을 두고 있음
 - 또한 국세청에서는 Form 8938의 신고의무위반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 대해서 형사 처벌이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음
- 일본의 경우는 국외재산조서 미신고 및 허위신고시 벌금 및 징역형과는 별도로 관련된 소득세 및 상속세의 가산세를 가중하는 제재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자발적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국외재산조서를 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관련 재산으로 인한 소득세와 상속세 누락이 있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국외재산조서를 지연제출, 미제출, 허위신고, 조사불응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그 재산과 관련된 소득세 및 상속세의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가 5% 가중됨
 - 국외재산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국외재산조서에 기재가 있는 국외 재산에 관하여 소득세 및 상속세의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의 5%를 감면함

- 호주의 경우 별도의 제재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기소절차가 개시될 수 있음
 - 확장소득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여타 관련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준수기간 도과 시 기소절차 개시를 납세자에게 통보하고 검사에게 사건을 이첩함
 - TAA 1953 8E에서는 의무불이행의 반복 정도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음
 - 의무불이행이 처음인 경우는 20 penalty units 이하, 두 번째는 40 penalty units 이하, 그 이상인 경우는 12개월 이하의 징역 및 50 penalty units 이하의 벌과금을 부여할 수 있음
 - penalty unit은 매년 변경되는데 2013년 5월 31일 현재 1 penalty unit은 170호주달러임

- 아일랜드는 중개인과 중개인을 이용한 거주자 또는 납세자, 별도의 신고대상인 거주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음
 - 중개인이 개입되는 경우 중개인과 중개인을 이용한 거주자 또는 납세자에 대해 별도로 벌과금을 부과함
 - 개인은 신고누락, 세부정보 누락, 세부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주의의무 해태 시 각각 4천파운드의 벌과금이 부과
 - 중개인을 이용한 거주자 또는 납세자의 경우 중개인에게 세부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세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천파운드의 벌과금이 부과
 - 해외계좌와 관련해서 범죄혐의로 기소되는 경우 최대 126,970파운드를 넘지 않는 벌금형 및 징역형이 가해질 수 있음
 - 중개인이 개입되지 않는 거주자는 소득신고시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포함하므로 소득세신고 지연제출에 포함하여 제재가 이루어짐

- 프랑스는 계좌별 무신고와 미신고금액의 정도에 따라 벌과금에 부과됨
 - 일반적으로 미신고 계좌당 1,500유로의 벌과금이 부과됨
 - 다만 프랑스와 조세정보교환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국가에 소재한 계좌에 대해서는 계좌당 벌과금이 1만유로으로 증가
 - 미신고금액이 5만유로 이상인 경우 위의 벌과금을 하한으로 잔액의 5%를 벌과금으

로 부과함

○ 오류나 부정확한 신고의 경우에는 1만유로를 한도로 150유로의 벌과금이 부과

〈표 IV-3〉 제재사항의 비교

구분	과태료부과	형사처벌	과태료, 형사처벌 병과가능	과소금액별 차별적 제재	고의적인 경우 중과여부	과태료 등 경감혜택
한국	○	○	○ ¹⁾	○	×	×
미국	○	○	○	×	○	○
일본	○	○	×	×	×	○
호주	○	○	○	×	○	×
아일랜드	○	○	○	○ ²⁾	×	×
프랑스	○	- ³⁾		○	○	×

주: 1) 우리나라의 경우 국조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와 국조법 제34조의2에 따른 벌칙이 있는데, 벌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적용되지 않으며 벌칙은 벌금과 징역형으로 구분되나 병과될 수 있음

2) 금액별이 아닌 신고기간 종료 후 신고시 경과기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함

3) 명확히 언급되고 있지 않음

〈표 IV-4〉 제재사항 세부내역 비교

구분	세부내역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조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신고금액(과소신고금액)에 최소 4%에서 최대 10%까지 차등적 과태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2에 의한 벌금 및 징역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 초과시: 위반액의 10%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형(병과가능) -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이와 관련하여 범칙행위시 동일한 벌금형 부과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BAR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의성이 없는 경우: 500달러 이내 과태료, 반복적인 경우에는 추가로 1만달러 이내 과태료 부과 - 고의성이 있는 경우: 과태료(MAX(10만달러, 위반시 계좌잔고의 50%))와 형사처벌(최대 50만달러와 10년 이하 징역)병과 ○ Form 8938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신고 및 허위신고시 과태료가 1만달러 부과(30일당 1만달러 초과 부과 가능) - Form 8938 미신고 자산과 관련 소득세 과소납부액 40% 가산세 부과 - 형사상 처벌 추가 부과 가능함

〈표 IV-4〉의 계속

구분	세부내역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신고 및 허위신고: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② 관련 재산에 대한 소득세 및 상속세 과소신고분에 과소신고가산세가 5% 가산 ○ 성실신고: 국외재산조서 기재된 자산과 관련하여 소득세 및 상속세 과소신고가산세 5% 감면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x Administration Act 1953에 따라 기소절차의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불이행이 처음인 경우는 20 penalty units 이하, 두 번째는 40 penalty units 이하, 그 이상인 경우는 12개월 이하의 징역 및 50 penalty units 이하의 벌과금을 부여할 수 있음 (1 penalty unit= 170호주달러)
아일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개인 및 중개인을 이용한 거주자 또는 납세자는 의무 미이행시 4천파운드의 벌과금이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또는 세부정보 누락, 중개인의 주의의무 해태, 거주자 등이 중개인에 정보미제공 또는 부정확한 세부정보 제공 ○ 해외계좌와 관련해서 기소시 최대 126,970파운드의 벌금형 및 징역형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신고 계좌당 1,500유로의 벌과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정보교환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계좌는 1만유로 ○ 미신고 금액이 5만유로 이상인 경우는 미신고계좌당 벌과금을 하한으로 잔액의 5%를 벌과금 부여 가능 ○ 오류나 부정확한 신고시 1만유로를 한도로 150유로의 벌과금이 부과

라. 신고서식의 비교

-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신고서는 신고인의 인적사항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현황, 해외 금융계좌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신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여권번호를 기재하도록 함
 - 해외금융계좌 보유 현황은 총신고계좌 수, 보유계좌 잔액의 연중 매월 말일의 최고 금액의 기준일과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기준일이란 보유 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의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했을 때 가장 큰 금액이 되는 날을 기재하도록 함

- 미국 FBAR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파트로 구분되어 있음

- PART I : 신고자 정보기재
 - 신고자의 유형, 납세자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명, 거주국가 및 도시, 상세주소를 기재하도록 함
 - PART II : 본인 소유의 계좌정보
 - 계좌별 연간 최고 잔액, 계좌유형, 계좌개설 금융기관의 명칭, 계좌번호, 금융기관의 계좌가 개설된 도시, 국가, 상세주소를 기재하도록 함
 - 계좌유형은 은행, 증권, 기타금융계좌로 구분하여 기재함
 - PART III : 공동명의로의 계좌정보
 - 공동명의로의 계좌정보에 대하여 PART II 와 동일한 정보기입
 - PART IV : 재무적 지분 없이 서명권한을 가진 계좌정보
 - 재무적 지분 없이 서명권한을 가진 계좌에 대하여 PART II 와 동일한 정보기입
 - PART V : 연결신고하는 계좌정보
 - 연결신고하는 계좌에 대하여 PART II 와 동일한 정보기입
- 한편, 미국 FBAR 신고서에서는 신고대상 계좌가 25개를 넘어가는 경우는 본인 소유의 계좌정보(PART II)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대신, 국세청 심사관의 관련자료 요청에 납세자가 반드시 응답해야 하는 계좌기록 보관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이러한 조치는 많은 해외계좌를 보유로 인한 납세협력비용의 증가를 감안하여 신고 자체에 대한 의무는 부과되지, 기재되는 정보의 양을 감소시킨 조치로 해석됨
 - 한편, 계좌기록 보관의무에 불응 혹은 허위 대응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미국의 FATCA에 따른 Form 8938은 총 6개 파트로 구분되어 있음
- Part I : 해외 예금 및 수탁계좌(Foreign Deposit and Custodial Account) 개요
 - 예금(Deposit)의 수량 및 연중 최고 잔액, 수탁계좌(Custodial Account)의 수량 및 연중 최고 잔액, 연중 해지한 예금이나 수탁계좌 유무
 - Part II : 기타 해외자산에 대한 개요
 - 해외자산의 수량 및 연중 자산 합계의 최고 금액, 연중 취득하거나 처분한 자산의 유무

- Part III-1: 해외 예금 및 수탁계좌로부터 받은 이자 등의 기재
 - 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이자, 배당 로열티, 이익, 손실 금액을 기재하고 관련 소득세 신고서식 명칭 기재
 - Part III-2: 기타 해외자산으로부터 받은 이자 등의 기재
 - 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이자, 배당 로열티, 이익, 손실 금액을 기재하고 관련 소득세 신고서식 명칭 기재
 - Part IV: Form 8938에서 신고대상으로 규정한 해외금융자산 외의 해외금융자산 존재 여부 및 관련 소득세 신고서식 명칭 기재
 - Part V: 개별 해외예금 및 수탁계좌에 대한 상세 정보
 - 계좌 유형(예금인지 수탁계좌인지 여부 기재), 계좌 번호, 연중에 개설되거나 연중 해지된 계좌인지 여부,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계좌인지 여부, 소득세 신고시 포함된 것인지 여부, 연중 최고 잔액, 외화표시 자산의 경우 외화금액, 적용한 환율 및 환율 출처, 관련 금융기관명과 상세주소(국가, 우편번호 등)
 - Part VI: 개별 기타 해외자산에 대한 상세 정보
 - 자산에 대한 설명기재, 등록번호 등 자산의 식별 가능 정보기재, 연중 취득이나 처분자산인지 여부,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인지 여부, 소득세 신고시 불포함 여부, 자산의 연중 최고가액, 외화표시 자산의 경우 외화금액, 적용한 환율 및 환율 출처, 기타 해외자산이 해외법인이나 기업체 등의 주식이나 지분인 경우에는 동 기업체의 명칭, 기업체의 법적 형식(파트너십, 법인, 신탁 등), 기업체의 상세주소, 주식이나 지분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자가 해당 금융자산의 발행자(issuer)나 거래 상대방(counterparty)의 이름, 법적 형식(개인, 파트너십, 법인, 신탁 등), 국적, 상세주소 기재
- 일본의 국외재산신고는 국외재산조서와 국외재산조서합계표의 두 가지 신고서식을 통해 이루어짐
- 국외재산조서는 국외재산보유자의 상세주소와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외재산의 종류(일반용 혹은 상업용), 수량, 가액과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국외재산조서합계표는 국외재산을 12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각 자산종류별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국외재산은 토지, 빌딩, 산림, 현금, 예금, 증권, 대출, 미수금, 서화골동품 및 미술 공예품, 귀금속류, 그 밖의 동산, 기타재산으로 구분됨

호주는 법인, 개인, 파트너십, 신탁 등에 대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내용을 포함한 각각의 확장소득신고서식을 가지고 있음

호주의 개인 신고서식 Accompanying schedule no. 1의 3에서는 해외거래(overseas transactions)에 대한 신고내용을 담고 있음

- 신고서식 3(a)는 국외에서의 5만호주달러 이상의 거래, 3(b)는 국외에서 차입을 통한 이자비용 공제, 3(c)는 국외 서비스 등에 따른 부채, 3(d)는 국외 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지급액의 공제 여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신고서식 3(e)에서는 국외에서 금융기관에 계좌를 보유하거나 계좌의 서명인인 경우 계좌의 수, 계좌가 존재하는 금융기관의 이름 및 주소, 국가의 코드(사전에 국가별 코드가 부여되어 있음), 계좌명, 당 계좌로부터 이자수취 여부를 기재
- 신고서식 3(f)에서는 국외에 소재하거나 국외에서 관리되는 펀드, 부동산, 투자자산 등의 유·무형자산에 대한 수익지분을 보유하거나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자산의 특성 및 설명, 자산이 위치한 국가 및 국가코드, 자산의 원가, 자산을 보유하거나 통제하게 된 일자, 자산을 원가 이외에 평가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평가에 대한 기술(평가일자 및 평가금액 포함), 대리하여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기업의 이름 및 거주국가, 자산을 수익활동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기재
- 신고서식 3(g)에서는 국외에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보유하거나 이를 제공한 경우 계좌의 수, 카드를 발급한 금융기관의 이름 및 주소, 외국국가의 코드, 카드를 제공받은 자의 이름, 계좌의 이름, 계좌를 지급한 자의 이름, 계좌와 관련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경우 이에 대한 성격·금액 및 그 사유, 당 계좌로부터 이자수취 여부

호주의 법인, 파트너십, 신탁 신고서식 Accompanying schedule no. 1의 3에서도 해외거래(overseas transactions)에 대한 신고내용을 담고 있으며 신고대상거래 및 세부

신고내용은 개인 신고서식과 동일하나 본문에서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포함하고 있음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존재 여부 및 이러한 거래가 유·무형자산 또는 금융약정의 이전과 관계있는지 여부 및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200만호주달러를 초과하는지 여부
- 국외지점이나 국외신탁, 국외기업, 신탁 등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특정 국가와 직·간접적으로 거래가 존재하거나 특정 국가에 펀드나 자산을 이전하거나 수취하였는지 여부 및 특정 국가에 소재하거나 특정 국가에서 관리 또는 통제하는 펀드, 부동산, 자산 또는 투자를 처분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능력을 보유하고나 통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

□ 아일랜드는 해외계좌의 개설을 중개하는 중개인, 역외상품의 취득을 중개하는 중개인, 해외계좌나 역외상품을 보유하는 납세자별 각각 별도의 서식을 가지고 있음

- 아일랜드의 해외계좌 중개인의 신고서식은 Form 8B-B를 사용하며 거주자의 이름과 주소, 거주자의 세무상 일련번호(사회보장번호(the Revenue and Social Insurance Number), 소득세 신고서 또는 국세공무원에 의해 고지된 조사통보서에 기재된 일련번호, 부가가치세 목적의 등록번호), 공동계좌의 여부, 해외계좌가 개설된 관련자의 이름과 주소, 해외계좌가 개설된 일자, 해외계좌 개설시 예치금액을 기재
- 아일랜드의 역외상품 중개인의 신고서식은 Form 8D를 사용하며 납세자의 이름, 주소, 세무상 일련번호, 역외상품의 명칭, 제공된 역외상품의 판매활동, 중개인으로서 취득과 처분 활동, 지급 활동의 설명(관련 역외상품의 설명 및 역외상품을 발행한 자의 이름과 주소를 포함), 역외펀드와 관련하여 개인이 불입하거나 개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세부내역을 기재
- 아일랜드의 거주자 또는 납세자는 납세의무자로서 소득신고서식(Form 11)에 해외계좌와 역외상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 해외계좌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동성 배우자가 수익자인 해외계좌에 대해 해외계좌가 개설된 관련자의 이름과 주소, 해외계좌가 개설된 일자, 해외계좌 개설시 예치

금액, 해당한다면 해외계좌 개설과 관련하여 관련 활동을 제공한 중개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

- 역외상품에 대해서는 역외펀드 보유자 또는 보험자의 이름과 주소, 유의적인 지분취득에 대한 원가 또는 보험계약 조건의 설명 등을 포함한 내역, 상품을 취득하는 데 있어 중재한 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

□ 프랑스는 No. 3916 양식이 존재하나 별도의 상세내용을 기재한 양식도 가능하며 서식에서 포함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금융기관의 이름
- 계좌의 번호, 이름과 특성(계좌의 약관내용 등)
- 계좌의 사용목적(개인적 사용 또는 사업 등을 위한 목적), 형태(단독계좌 또는 공동계좌, 부동산계좌 등)

〈표 IV-5〉 신고서 기재사항 비교

구분	기재사항			
	신고인 정보	관련자 등의 정보	계좌 등의 정보	
한국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 신고인 인적사항 - 성명(법인명), 주민번호(사업자등록번호), 여권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 계좌 관련자 유형구분 - 공동명의자인지, 아니면 신고인이 실소유자 혹은 명의자인지 여부	○ 해외금융계좌 보유현황 - 총신고계좌 수, 보유계좌 잔액의 연중 매월 말일의 최고금액 및 그 기준일 ○ 해외금융계좌별 명세 - 보유계좌 일련번호 부여 후 기재 - 계좌관련자 정보 - 금융회사명, 계좌종류, 계좌번호, 표시 통화, 계좌 명의자, 현지기업 고유번호, 기준일잔액(원화, 외화), 개설일, 해지일, 금융회사 소재지(국가, 지역, 도시, 상세주소)
	해외금융계좌관련자명세서	○ 해외금융계좌관련자명세서는 해외금융계좌신고서의 부속서류로 따로 신고인 정보를 기재하지 않음	○ 계좌 관련자 유형구분 - 공동명의자인지, 아니면 신고인이 실소유자 혹은 명의자인지 여부 ○ 관련자 정보: 성명(법인명), 주민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 관련계좌번호의 일련번호 기재

〈표 IV-5〉의 계속

구분	기재사항		
	신고인 정보	관련자 등의 정보	계좌 등의 정보
미국	FBAR	<p>○ PART I: 신고자정보 - 신고자의 유형, 납세자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명, 거주국가 및 도시, 상세주소</p>	<p>○ PART II: 본인 소유의 계좌정보 - 계좌별 연간 최고 잔액, 계좌 유형, 계좌개설 금융기관의 명칭, 계좌번호, 금융기관의 계좌가 개설된 도시, 국가, 상세주소</p> <p>○ PART III: 공동명의 계좌정보 - 계좌별 연간 최고 잔액, 계좌 유형, 계좌개설 금융기관의 명칭, 계좌번호, 금융기관의 계좌가 개설된 도시, 국가, 상세주소</p> <p>○ PART IV: 재무적 지분 없이 서명권한을 가진 계좌정보 - 계좌별 연간 최고 잔액, 계좌 유형, 계좌개설 금융기관의 명칭, 계좌번호, 금융기관의 계좌가 개설된 도시, 국가, 상세주소</p> <p>○ PART V: 연결신고하는 계좌정보 - 계좌별 연간 최고 잔액, 계좌 유형, 계좌개설 금융기관의 명칭, 계좌번호, 금융기관의 계좌가 개설된 도시, 국가, 상세주소</p>
	Form 8938 ¹⁾	<p>○ Form 8938는 소득세신고시 같이 신고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별도로 신고인 정보를 기재하지 않음</p>	<p>○ PART I: 해외예금 및 수탁계좌 개요 - 예금(Deposit)의 수량 및 연중 최고 잔액 - 수탁계좌(Custodial Account)의 수량 및 연중 최고 잔액 - 연중 해지한 예금이나 수탁 계좌 유무</p> <p>○ PART II: 기타 해외자산에 대한 개요 - 해외자산의 수량 및 연중 자산 합계의 최고 금액 - 연중 취득하거나 처분한 자산 유무</p> <p>○ PART III: 해외예금 및 수탁계좌 및 기타자산으로부터 받은 이자 등의 기재 - 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이자, 배당 로열티, 이익, 손실 금액을 기재 - 소득세 신고시 기재한 서식의 명칭을 기재</p>

〈표 IV-5〉의 계속

구분	기재사항			
	신고인 정보	관련자 등의 정보	계좌 등의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RTIV: 소득세신고시 관련 소득에 대해 신고한 해외자산 중 Form 8938 신고대상이 아닌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rm 8938에서 신고대상으로 규정한 해외금융자산 외의 해외 금융자산 존재 여부 및 관련 소득세신고서식 명칭 기재 ○ PARTV: 개별 해외예금 및 수탁계좌에 대한 상세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좌 유형(예금인지 수탁계좌인지 여부 기재) - 계좌 번호 또는 기타 등록번호 - 연중에 개설되거나 연중 해지된 계좌인지 여부,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계좌인지 여부, 소득세 신고시 포함된 것인지 여부 - 연중 최고 잔액 기재 - 외화표시 자산의 경우 외화금액, 적용한 환율 및 환율 출처 - 관련 금융기관명과 상세주소(도시, 국가, 우편번호 등) ○ PARTVI: 개별 기타 해외자산에 대한 상세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에 대한 설명기재 - 등록번호 등 자산의 식별가능 정보기재 - 연중 취득이나 처분자산인지 여부 -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인지 여부, 소득세 신고시 불포함 여부 - 자산의 연중 최고가액 - 외화 표시 자산의 경우 외화금액, 적용한 환율 및 환율 출처 - 기타 해외자산이 해외법인이나 기업체 등의 주식이나 지분인 경우에는 기업체의 명칭, 기업체의 법적형식(파트너십, 법인, 신탁 등), 기업체의 상세주소 기재 - 주식이나 지분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자가 해당금융자산의 발행자(issuer)나 거래상대방(counterparty)의 이름, 법적 형식(개인, 파트너십, 법인, 신탁 등), 국적, 상세주소를 기재해야 함 		
일본	국외 재산 조서	○ 국외재산보유자의 상세주소와 성명 기재	N/A	○ 국외재산의 종류(일반용 혹은 상업용), 수량, 가액과 소재지 기재
	국외 재산 조서 합계표	○ 국외재산조서합계표는 국외재산조서의 부속서류로 따로 신고인 정보를 기재하지 않음	N/A	○ 국외재산을 12가지로 구분하여 각 자산종류별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 ○ 토지, 빌딩, 산림, 현금, 예금, 증권, 대출, 미수금, 서화골동품 및 미술 공예품, 귀금속류, 그 밖의 동산, 기타재산으로 구분됨

〈표 IV-5〉의 계속

구분		기재사항		
		신고인 정보	관련자 등의 정보	계좌 등의 정보
호주	개인 등	○ 개인소득세 신고자료에 부가되는 것이므로 세무신고 번호, 이름, 주소, 생일, 전화번호 등의 일반적인 모든 내용이 기재됨	○ 계좌의 수, 금융기관의 이름과 주소, 국가(코드), 계좌명, 이자수취 여부 ○ 계좌 이외의 수익지분 등에 대한 자산의 특성, 국가(코드), 원가, 보유일자, 평가, 대리자의 이름 및 거주국, 수익활동 여부 ○ 신용카드 등에 대한 계좌의 수, 금융기관의 이름과 주소, 국가(코드), 계좌명, 계좌지급자 이름, 비용에 대한 설명, 이자수취 여부	
	법인 등	○ 법인소득세 신고자료에 부가되는 것이므로 세무신고 번호, 법인번호, 이름, 주소(이전 주소 포함) 등의 일반적인 모든 내용이 기재됨	○ 개인의 신고 정보와 동일하나 아래와 같은 사항이 추가됨 - 국외특수관계자 거래 여부(유·무형자산, 금융약정 여부 및 200만호주달러 초과 여부) - 국외지점 등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특정국가와의 거래 존재 여부 등	
아일랜드	중개인	○ 이름, 주소, 전화번호	○ 계좌주명, 공동계좌 여부, 주소, 세무일련번호, 금융기관 이름과 주소, 개설일자, 개설시 금액 ○ 역외상품의 명칭, 역외상품의 활동 설명, 역외펀드와 관련한 수취 및 지급액	
	납세자 등	○ 소득세 신고자료에 부과되는 것이므로 이름, 주소, 결혼 여부, 부양가족 등의 일반적인 모든 내용이 기재됨	○ 중개인의 이름과 주소	○ 해외계좌의 관련자의 이름과 주소, 개설일자, 개설시 예치 금액 ○ 역외상품 보유자의 이름과 주소, 취득원가 및 조건 설명
프랑스		○ 이름, 주소, 직업, 생일, 회사의 형태 등	○ 보유자인지 수익자인지 구분 ○ 계좌명, 계좌번호, 계좌의 특성, 개설일자, 폐쇄일자, 계좌관리자의 이름과 주소, 개설국가	

주: 1) 미국의 FORM 8983의 경우 관련자 등의 개념이 사용되지 않아, 계좌 등의 정보만을 기재하였음

□ 한편, 과세당국의 과도한 정보요구는 납세협력비용을 증가시켜, 자발적 신고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신고서식상 기재사항이 비교대상국가에도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신고서식에 존재하는 개별 항목들을 다음 〈표 IV-6〉과 같이 열거하고 비교대상국가의 서식에 동 항목이 존재하는지 유무를 살펴보았음²⁾

- <표 IV-6>을 살펴보면,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우리나라와 비교대상국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
 -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여권번호를 요구하고 있는데 비교대상국가에서 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계좌 등 정보에 대한 상세정보는 해외소재 자산 전체를 신고하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미국 등 비교대상국가에서 요구하는 신고내용은 우리나라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임
 - 계좌잔액에 대한 정보를 요구함에 있어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호주가 우리나라와 유사하고, 프랑스와 아일랜드의 경우 신고서식상 계좌 잔액과 관련하여 기입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신고하는 계좌가 해외 현지지점이나 사무소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현지 기업 고유번호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과 호주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었음⁹²⁾
 -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계좌의 개설일과 해지일을 모두 요구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경우가 우리나라와 동일하였고, 아일랜드의 경우 개설일만, 미국의 경우 개설일과 해지일 자체를 요구하지 않고, 연중 개설 여부 혹은 연중 해지 여부에 대해 체크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계좌 관련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신고 의무자에 대한 정보입력의 차원에서 미국이나 아일랜드의 경우와 동일함
 - 우리나라의 경우 계좌관련자는 모두 개별적으로 각각 신고의무를 부담하며, 각기 신고시 관련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음
 - 이는 하나의 계좌에 대해 복수의 신고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 신고의무자 각각의 신

92)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하고자 하는 목적에서는 비교대상 주요국가의 신고서식상 항목이 우리나라의 서식에 존재하는지 여부도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임

93) 우리나라 국세청이 발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작성사례』를 살펴보면, “현지기업 고유번호”란 신고법인의 해외지점에 대해 우리나라 세무서가 부여한 코드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고인 본인 정보를 기입하는 것이며, 미국의 경우도 신고자 본인의 정보 중 납세자번호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고, 해외체류중인 경우 거주국가 및 도시, 상세주소도 기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도 신고자 본인의 세무신고번호 등이 기재되고 있음

〈표 IV-6〉 우리나라의 신고사항을 주요 국가에서도 요구하는지 여부

우리나라 서식상 신고사항		미국 ¹⁾	일본	호주	아일랜드	프랑스
신고인 인적사항	성명(법인명)	○	○	○	○	○
	주민번호(사업자번호)	○	○	○	○	△ ⁹⁾
	여권번호	×	×	×	×	×
	주소(소재지)	○	○	○	○	○
	전화번호	×	○	○	○	×
계좌 등의 정보	총신고계좌 수	×	△ ⁵⁾	○	×	×
	계좌 최고잔액 및 일자	△ ²⁾		×	×	×
	계좌 관련자 유무	○		○	○	×
	금융회사명	○		○	○	○
	계좌종류	○		○	×	○
	계좌번호	○		○	×	○
	표시 통화	○		○	×	×
	계좌 명의자	○		○	○	○
	현지기업 고유번호	○		○	×	×
	기준일 잔액	△ ²⁾		△ ⁶⁾	×	×
	개설일	△ ³⁾		△ ⁷⁾	○	○
	해지일	△ ³⁾		×	×	○
금융회사 주소	○	○	○	○		
계좌 관련자 정보	관련자 유형구분	○ ⁴⁾	×	×	△ ⁸⁾	△ ¹⁰⁾
	관련자 성명(법인명)	○ ⁴⁾	×	×		
	주민번호(사업자번호)	○ ⁴⁾	×	×		
	주소(소재지)	○ ⁴⁾	×	×		
	전화번호	×	×	×		

주: 1) 미국의 비교대상은 FBAR과 Form 8938 모두 포함함
 2)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 중 최고잔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각 계좌별 기준 일 잔액을 기재하도록 하는 데 반해, 미국의 경우 각 계좌별로 연중 최고잔액을 조사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3) 미국의 경우 개설일과 해지일 자체를 요구하지 않고, 연중 개설 여부 혹은 연중 해지 여부에 대해 체크하도록 하고 있음
 4) 미국의 경우 공동 명의자와 서명권한을 가진자 각각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음
 5) 일본의 경우 국외재산을 12가지로 구분하여 각 자산종류별 금액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음
 6) 호주의 경우 금융계좌의 잔액은 요구하지 않으나 이자수취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계좌 이외의 수익지분 등에 대해서는 원가와 후속적인 평가금액의 기재를 요구함
 7) 호주의 경우 금융계좌 이외의 경우 자산의 보유일을 요구하고 있음
 8) 아일랜드의 경우 납세자의 신고시 중개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개인에 게도 별도의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9) 개인은 생년월일, 법인은 사업자번호를 기재
 10) 거주자를 대리한 자에게도 신고의무를 부여

고시 다른 신고의무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여, 향후 신고의무자 간 신고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신고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됨

- 이와 유사하게 미국의 경우 공동 명의자 각각에게 신고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으며, 공동명의자 각각의 신고시 다른 공동명의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미국의 경우 계좌 명의자가 아닌 서명권한을 가진 자에게도 신고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데, 계좌 명의자의 신고시 서명권한을 가진 자에 대해서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아일랜드의 경우에도 중개인에게 해외계좌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계좌명의자가 신고시 중개인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2. 시사점

가. 신고의무 기준금액 적용 방법의 강화

- 우리나라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해당 연도 중에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2014년 신고분부터는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자에게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신고의무자의 신고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것임
- 하지만 신고의무 여부를 월말 잔액만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월말 금융계좌 잔액을 10억원 이하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역외세원관리 및 탈루된 세원의 파악이라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가 무산될 가능성이 존재함
- 이에 반해 미국의 경우는 연중 어느 순간이라도 계좌를 합산하여 1만달러가 넘는 경우가 있으면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⁹⁴⁾, 프랑스와 아일랜드의 경우는 신고의무 기준금액

94) 해외금융자산신고의 경우는 신고대상기간 종료일에 5만달러를 넘게 해외금융자산을 보유하거나

없이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게 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는 연말 잔액을 기준으로 신고의무 기준금액을 적용하고 있는 대신에 해외에 소재한 모든 자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효과성 측면에서 신고기준금액 초과 여부를 “매월 말 일 잔액”으로 판단하는 것에서 미국과 같이 해당연도에 어느 순간이라도 신고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살려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신고자의 신고부담이 우려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신고기준금액 초과 여부를 “매월 10일, 20일, 30일의 잔액 중 하루라도 신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임

나. 신고의무 기준금액의 적정성 고려

□ 신고의무 적용을 위한 기준금액이 있는 국가는 비교대상 국가들 중 우리나라, 미국, 일본이며, 프랑스와 아일랜드의 경우는 신고의무 기준금액 없이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게 하고 있음

□ 2012년 기준 미국의 GDP는 16조 2천억달러로 우리나라의 1조 1천억달러에 비해 14배를 넘어서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5조 9천억달러로 우리나라의 5배가 넘고,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2배 수준임

-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은 우리나라가 10억원임
- 미국은 원화로 환산시 계좌 잔액이 연중 약 1천만원을 넘는 경우에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일본은 약 5억원을 넘는 경우에 해외의 모든 자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연중 어느 순간이라도 7만 5천달러를 넘게 해외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자가 신고의무자임

- 세계 각국의 역외금융이나 해외자산 등을 통한 공식적인 탈세금액의 추산액을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신고의무 기준금액의 크기의 수준을 비교할 수는 없음
-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신고기준금액은 경제규모를 고려했을 때 비교대상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판단되며, 신고의무 기준금액을 낮추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신고기준금액을 일시에 큰 폭으로 낮추는 것이 납세자들에게 갑작스러운 협력비용의 증가를 야기한다면 신고기준금액을 점진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임

다. 신고대상자산의 확대 고려

-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금융계좌가 직접적인 신고대상으로서 금융자산의 일정금액이 동 계좌에 예치되어 있었거나 있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해외에 투자된 비금융자산은 회수 또는 재투자 과정을 통해서 현금을 비롯한 환금성이 높은 금융자산으로 변경될 것이므로 향후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비금융자산이 금융자산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장기간을 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과세당국의 해외세원 추적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심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될 가능성도 있음
- 이는 국내에만 재산을 보유하거나 해외금융자산을 주로 보유하고 있는 성실납세자와 해외에 비금융자산을 주로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 간 과세형평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또한,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비교적 손쉽게 비금융자산이나 금융기관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금융자산으로 변경이 가능하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도입취지를 어렵지 않게 무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FATCA에 의해 해외금융계좌뿐만 아니라 금융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보유중인 유가증권이나 해외기업체에 대한 지분, 그리고 거래의 상대방이나 발행자가 미국인이 아닌 금융상품이나 계약 등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는 해외에 소재한 모든 재산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호주의 경우에도 부동산 등의 유무형자산에 대해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며, 제도의 효과성 제고측면과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향후 주요한 비금융자산과 해외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함
 - 다만, 신고대상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보유한 해외자산의 종류별 비중 등을 추정해보고 이를 근거로 신고대상에 추가할 해외자산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제도의 효과성을 손쉽게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라. 성실신고 유도방안 도입

- 제도의 효과성 측면에서 그동안 해외소득을 지속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에게는 일정 정도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일본의 경우 국외재산조서를 통해 신고된 국외 재산과 관련하여 소득세 및 상속세의 신고 누락이 있는 경우 관련 소득세 및 상속세의 과소신고가산세의 5%를 감면해주고 있음

- 미국의 경우는 미신고 해외소득에 대해 자발적인 신고제도를 운영하면서 관련 가산세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임

- 우리나라도 과거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성실신고를 하는 자에게는 누락된 소득세나 상증세와 관련된 가산세 감면 등 성실신고 유도방안을 도입하거나 미국의 자발적 신고제도 운영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일본이나 미국의 성실신고 유도방안이 탈루세원 정보 확보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효과성을 가지고 있는지 실증된 바가 없고⁹⁵⁾,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한 사람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점도 동시에 감안해야 할 것임

마. 신고의무 해태에 대한 제재수위의 조정

- 현재 국내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는 2013년 개정시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증권, 파생상품 등의 계좌로 확대하였으며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 징역형을 처하고 있음
-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대상금액을 낮추게 되거나 신고대상을 더욱 확대하게 되면 단순한 실수로 인한 미신고의 경우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신고대상금액을 낮추고 일별로 판단하게 되면 신고기간대상 기간 동안 평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신고대상의 확대는 시장성이 없는 자산의 평가 등의 문제가 복잡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대한 과태료 등의 제재수위를 높일 경우 역외조세회피를 위한 납세자와 단순 실수로 인한 납세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과태료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한적이며 임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 벌칙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나 실제 적용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됨

95) 오윤·이진영,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선방안」, 『조세학술논집』 제28권 제1호, 한국국제조세학회, 2012.2

- 형사벌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대해 대법원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에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를 예시하고 있음⁹⁶⁾

□ 따라서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단순착오에 대한 과태료와 벌칙을 경감할 필요성이 있음

바. 납세자의 정보제공방식(서식의 비교)

□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신고서식과 비교대상국가의 신고서식을 비교한 결과,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음

□ 다만,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신고인 인적사항을 기재함에 있어 여권번호를 요구하고 있는데, 비교대상국가에서 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계좌의 개설일과 해지일을 모두 요구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음
 - 아일랜드의 경우 개설일만, 미국의 경우 연중 개설 혹은 해지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만 체크하도록 하고 있음

□ 신고인의 여권번호나 계좌 개설, 해지일과 같은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과세행정상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거나 사후 검증과정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이라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⁹⁷⁾

- 여권번호 요구는 신고서식에서 삭제
- 계좌의 개설일과 해지일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연중 개설 혹은 해지 사실 여부만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선

96) 대법원 2004.7.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97) 이는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낮춰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임

- 한편,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납세협력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면, 미국의 FBAR 신고의 경우 신고대상 계좌가 25개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자의 정보, 신고 대상 계좌가 25개를 초과한다는 사실, 공동명의자 등”의 정보는 기재하여야 하나 소유한 계좌정보에 대해서는 기재를 면하고 있음
 - 다만, 납세자는 국세청 심사관의 관련자료 요구에 대비하여 계좌기록 보관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에 불응 혹은 허위 대응시 과태료를 부과함

- 미국의 경우처럼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도 과세망에서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고사항에 대한 사후적 관리 및 분석 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과세당국이 납세자들의 해외계좌 정보에 대해 일정 정도의 누적된 자료를 보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문헌

- 국세청,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2012. 5.
- 기획재정부, 『2010 간추린 개정세법』, 2011. 6.
- 기획재정부, 『2011 간추린 개정세법』, 2012. 7.
- 기획재정부, 『2012 간추린 개정세법』, 2013. 3.
- 오윤 · 이진영,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선방안」, 『조세학술논집』 제28권 제1호, 한국국제조세협회, 2012. 2.
- 이은미, 「역외자산의 정보수집 및 정보교환제도에 관한 고찰」, 『조세연구』 제11-3집, 2011. 12.
- 홍범교 · 구자은 · 마정화,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조세행정상 역외금융정보 확보제도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9.12.
- 홍범교 · 구자은 · 이형민, 『역외소득에 대한 자발적 신고제도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1. 9.
- 일본 국세청, 『国外財産調書の提出制度(FAQ)』, 2013. 11.
- ATO, “Wealthy and wise A tax guide for Australia’s wealthiest people,” March 2008
- ATO, “Compliance Program 2012-13,” July 2012.
- ATO, “Company tax return instructions,” 2013.
- Jennifer E. Eller and Michael P. Kreps, “Foreign Account Reporting for Retirement Plans,” *Journal of Retirement Planning*, 2010. 2.
- Bradley J. Bondi, “Don’t Tread on Me: Has the United States Government’s Quest for Customer Records from UBS Sounded the Death Knell for Swiss Bank Secrecy Laws,” 30 *Nw. J. Int’l L. & Bus.* 1, 2010.

Deloitte, "A wider net Understanding your FBAR reporting requirements," 2013. 3.

KPMG, "What's News in Tax - Navigating the FBAR Maze," 2013. 4.

IRS, "Internal Revenue Manual"

IRS, "Instructions for Form 8938 (Rev. December 2013)," 2013.

US Treasury Department, "A REPORT TO CONGRESS IN ACCORDANCE WITH §361(b) OF THE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 2002. 4.

미국 국세청, www.irs.gov

미국 재무부, www.treasury.gov

아일랜드 국세청, <http://www.revenue.ie/>

일본 국세청, www.nta.go.jp

삼일인포마인, www.samili.com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taxinfo.nts.go.kr/>

프랑스 공공재정일반총국, <http://www.economie.gouv.fr/dgfip>

프랑스 법령정보시스템, <http://legifrance.gouv.kr/>

호주 국세청, www.ato.gov.au/

호주 법령정보시스템, <http://www.comlaw.gov.au>

[부록 1]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식

[별지 제21호서식] (2013. 2. 23. 개정)

(제1쪽)

신고대상 연도 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신고 구분	<input type="checkbox"/> 정기 <input type="checkbox"/> 수정 <input type="checkbox"/> 기한 후	신고인 유형	<input type="checkbox"/> 거주자 <input type="checkbox"/> 내국법인
--------------	-------------------	----------	---	-----------	---

1. 신고인 인적사항

① 성명 (법인명)	(한글)	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영문)	③ 여권번호	
④ 주소 (소재지)		⑤ 전화번호	

2. 해외금융계좌 보유 현황

⑥ 총 신고계좌 수	보유계좌 잔액의 연중 매월 말일의 최고금액	
	⑦ 기준일	⑧ 금액
개	. . .	원

3. 해외금융계좌별 명세

(단위: 현지 통화, 원)

	⑨ 계좌 관련자 정보	[] 없음, [] 공동명의계좌, []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		
보유 계좌 일련 번호 (1)	⑩ 금융회사명		⑪ 계좌종류	
	⑫ 계좌번호		⑬ 표시 통화	
	⑭ 계좌 명의자		⑮ 현지기업 고유번호	
	⑯ 기준일 잔액	(외화)	⑰ 개설일	. . .
		(원화)	⑱ 해지일	. . .
⑲ 금융회사 소재지	국가	지역[주(州), 성(省) 등]	도시	그 밖의 상세 주소

위 신고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7조에 따라 위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작성방법

- ※ 신고대상 연도(20××년)를 적고 “신고 구분”란, “신고인 유형”란의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처음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정보(수정신고를 2회 이상하는 경우에는 이전 수정신고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위쪽에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고, 수정하려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아래쪽에 검은색 글씨로 작성합니다.
1. ① ~ ⑤: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신고인이 거주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를 적습니다. 신고인이 법인이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2. ①·③: 거주자는 여권 등에 적혀 있는 영문 성명(full name)과 여권번호 등을 “① 성명(영문)”란과 “③ 여권번호”란에 적습니다.
 3. ⑥: 신고계좌의 총 개수를 적고 해당 계좌별 정보를 “3. 해외금융계좌별 명세”에 작성합니다. 신고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보유계좌 일련번호 2번 이하부터는 이 서식 3쪽의 해외금융계좌 명세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4. ⑦·⑧: “⑦ 기준일”란에 보유 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의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했을 때 가장 큰 금액이 되는 날을 적고, 그 금액을 ‘원 단위’로 “⑧ 금액”란에 적습니다. 이 경우 합산하는 금액은 해당 계좌에 반영된 금액이며 기간 이자 등이 실제 해당 계좌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를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5. ⑨: 해당 계좌가 공동명의계좌 또는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인 경우에 해당란에 “√” 표시를 하고 이 서식 4쪽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공동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두 곳에 모두 “√” 표시를 하고 이 서식 4쪽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에 해당 관련자를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6. ⑩: 영문(full name)으로 작성하며, 영문이 없는 경우에는 한글로 작성합니다.
 7. ⑪: 예금, 적금, 주식, 파생상품, 채권, 집합투자증권(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합니다), 보험 등 계좌에 의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종류를 적습니다.
 8. ⑫: 하이픈(-) 표시 없이 연속으로 숫자나 기호를 적습니다.
 9. ⑬: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i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 (예시: 미국 USD)로 작성합니다.
 10. ⑭: 계좌주 명의를 영문으로 작성하며, 영문이 없는 경우에는 한글로 작성합니다. 법인의 지점이나 연락사무소의 경우에는 그 지점 및 연락사무소의 명칭을 포함합니다.
 11. ⑮: 세무서장이 해외현지기업(해외지점, 연락사무소 등)에 부여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12. ⑯: ⑦란의 기준일 현재의 해당 계좌의 외화표시 잔액(외화표시 잔액이 둘 이상의 통화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주된 단일 통화로 환산하여 적습니다)과 이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각각 (외화), (원화)란에 적습니다. ⑨란의 계좌 관련자가 있는 경우 공동명의자 또는 명의자·실소유자는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닌 해당 계좌의 전체 금액을 적습니다.
 13. ⑰: 해당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의 소재지를 국가, 지역[주(州), 성(省) 등], 도시, 그 밖의 상세 주소로 나누어 영문으로 작성하며, 영문으로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한글로 작성합니다.

[별지 제21호서식]

(4쪽)

신고대상 연도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	신고인	[] 거주자
년		유형	[] 내국법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련자 일련번호 ()	보유계좌 일련번호		계좌 관련자 유형	[] 유형1, [] 유형2, [] 유형3
	관련자 정보	성명 (법인명) 주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관련자 일련번호 ()	보유계좌 일련번호		계좌 관련자 유형	[] 유형1, [] 유형2, [] 유형3
	관련자 정보	성명 (법인명) 주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관련자 일련번호 ()	보유계좌 일련번호		계좌 관련자 유형	[] 유형1, [] 유형2, [] 유형3
	관련자 정보	성명 (법인명) 주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관련자 일련번호 ()	보유계좌 일련번호		계좌 관련자 유형	[] 유형1, [] 유형2, [] 유형3
	관련자 정보	성명 (법인명) 주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관련자 일련번호 ()	보유계좌 일련번호		계좌 관련자 유형	[] 유형1, [] 유형2, [] 유형3
	관련자 정보	성명 (법인명) 주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관련자 일련번호 ()	보유계좌 일련번호		계좌 관련자 유형	[] 유형1, [] 유형2, [] 유형3
	관련자 정보	성명 (법인명) 주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작성 방법

1. 이 서식은 신고계좌 중 관련자가 있는 경우(신고서 1쪽과 3쪽의 ㉠번 항목)에만 작성합니다. (/)쪽
2. 관련자가 있는 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관련자 일련번호의 2번 이하를 작성합니다. 이 경우 같은 계좌의 관련자가 둘 이상인 경우(3명의 공동명의자 중 1명이 다른 2명의 공동명의자를 신고하는 경우, 공동명의자와 실소유자가 함께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관련자를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3. 보유계좌 일련번호는 신고서 1쪽 또는 3쪽에 적힌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4. 계좌 관련자 유형은 공동명의자인 경우 "유형1"을, 신고인이 계좌 명의자이고 실소유자 정보를 적는 경우 "유형2"를, 신고인이 실소유자이고 계좌 명의자 정보를 적는 경우 "유형3"을 선택하여 "√" 표시를 합니다.

[부록 2-1]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식(FBAR)

TD F 90-22.1 (Rev. March 2011) Department of the Treasury Do not use previous editions of this form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Do NOT file with your Federal Tax Return		OMB No. 1545-2038 1 This Report is for Calendar Year Ended 12/31 Amended <input type="checkbox"/>	
Part I Filer Information					
2 Type of Filer a <input type="checkbox"/> Individual b <input type="checkbox"/> Partnership c <input type="checkbox"/> Corporation d <input type="checkbox"/> Consolidated e <input type="checkbox"/> Fiduciary or Other—Enter type _____					
3 U.S.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4 Foreign identification (Complete only if item 3 is not applicable.) a Type: <input type="checkbox"/> Passport <input type="checkbox"/> Other _____		5 Individual's Date of Birth MM/DD/YYYY	
If filer has no U.S. Identification Number complete Item 4.					
6 Last Name or Organization Name		7 First Name		8 Middle Initial	
9 Address (Number, Street, and Apt. or Suite No.)					
10 City		11 State	12 Zip/Postal Code	13 Country	
14 Does the filer have a financial interest in 25 or more financial accounts? <input type="checkbox"/> Yes If "Yes" enter total number of accounts _____ (If "Yes" is checked, do not complete Part II or Part III, but retain records of this information) <input type="checkbox"/> No					
Part II Information on Financial Account(s) Owned Separately					
15 Maximum value of account during calendar year reported		16 Type of account a <input type="checkbox"/> Bank b <input type="checkbox"/> Securities c <input type="checkbox"/> Other—Enter type below			
17 Name of Financial Institution in which account is held					
18 Account number or other designation		19 Mailing Address (Number, Street, Suite Number) of financial institution in which account is held			
20 City		21 State, if known	22 Zip/Postal Code, if known	23 Country	
Signature					
44 Filer Signature		45 Filer Title, if not reporting a personal account		46 Date (MM/DD/YYYY)	

File this form with: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P.O. Box 32621, Detroit, MI 48232-0621

This form should be used to report a financial interest in, signature authority, or other authority over one or more financial accounts in foreign countries, as required by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Regulations 31 CFR 1010.350 (formerly 31 CFR 103.24). No report is required if the aggregate value of the accounts did not exceed \$10,000. See Instructions For Definitions.

PRIVACY ACT AND PAPERWORK REDUCTION ACT NOTICE

Pursuant to the requirements of Public Law 93-579 (Privacy Act of 1974), notice is hereby given that the authority to collect information on TD F 90-22.1 in accordance with 5 USC 552a (e) is Public Law 91-508; 31 USC 5314; 5 USC 301; 31 CFR 1010.350 (formerly 31 CFR 103.24).

The principal purpose for collecting the information is to assure maintenance of reports where such reports or records have a high degree of usefulness in criminal, tax, or regulatory investigations or proceedings. The information collected may be provided to those officers and employees of any constituent unit of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who have a need for the records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The records may be referred to any other department or agency of the United States upon the request of the head of such department or agency for use in a criminal, tax, or regulatory investigation or proceeding. The information collected may also be provided to appropriate state, local, and foreign law enforcement and regulatory personnel in the performance of their official duties. Disclosure of this information is mandatory. Civil and criminal penalties, including in certain circumstances a fine of not more than \$500,000 and imprisonment of not more than five years, are provided for failure to file a report, supply information, and for filing a false or fraudulent report. Disclosure of the Social Security number is mandatory. The authority to collect is 31 CFR 1010.350 (formerly 31 CFR 103.24). The Social Security number will be used as a means to identify the individual who files the report.

The estimated average burden associated with this collection of information is 20 minutes per respondent or record keeper, depending on individual circumstances. Comments regarding the accuracy of this burden estimate, and suggestions for reducing the burden should be directed to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Bank Secrecy Act Policy, 5000 Ellin Road C-3-242, Lanham MD 20706.

Part II Continued—Information on Financial Account(s) Owned Separately				Form TD F 90-22.1 Page Number ____ of ____
Complete a Separate Block for Each Account Owned Separately				
This side can be copied as many times as necessary in order to provide information on all accounts.				
1 Filing for calendar year ____ - ____ - ____ - ____	3-4 Check appropriate Identification Number <input type="checkbox"/>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nput type="checkbox"/> Foreign Identification Number Enter identification number here:	6 Last Name or Organization Name		
15 Maximum value of account during calendar year reported		16 Type of account a <input type="checkbox"/> Bank b <input type="checkbox"/> Securities c <input type="checkbox"/> Other—Enter type below		
17 Name of Financial Institution in which account is held				
18 Account number or other designation		19 Mailing Address (Number, Street, Suite Number) of financial institution in which account is held		
20 City	21 State, if known	22 Zip/Postal Code, if known	23 Country	
15 Maximum value of account during calendar year reported		16 Type of account a <input type="checkbox"/> Bank b <input type="checkbox"/> Securities c <input type="checkbox"/> Other—Enter type below		
17 Name of Financial Institution in which account is held				
18 Account number or other designation		19 Mailing Address (Number, Street, Suite Number) of financial institution in which account is held		
20 City	21 State, if known	22 Zip/Postal Code, if known	23 Country	
15 Maximum value of account during calendar year reported		16 Type of account a <input type="checkbox"/> Bank b <input type="checkbox"/> Securities c <input type="checkbox"/> Other—Enter type below		
17 Name of Financial Institution in which account is held				
18 Account number or other designation		19 Mailing Address (Number, Street, Suite Number) of financial institution in which account is held		
20 City	21 State, if known	22 Zip/Postal Code, if known	23 Country	
15 Maximum value of account during calendar year reported		16 Type of account a <input type="checkbox"/> Bank b <input type="checkbox"/> Securities c <input type="checkbox"/> Other—Enter type below		
17 Name of Financial Institution in which account is held				
18 Account number or other designation		19 Mailing Address (Number, Street, Suite Number) of financial institution in which account is held		
20 City	21 State, if known	22 Zip/Postal Code, if known	23 Country	
15 Maximum value of account during calendar year reported		16 Type of account a <input type="checkbox"/> Bank b <input type="checkbox"/> Securities c <input type="checkbox"/> Other—Enter type below		
17 Name of Financial Institution in which account is held				
18 Account number or other designation		19 Mailing Address (Number, Street, Suite Number) of financial institution in which account is held		
20 City	21 State, if known	22 Zip/Postal Code, if known	23 Country	
15 Maximum value of account during calendar year reported		16 Type of account a <input type="checkbox"/> Bank b <input type="checkbox"/> Securities c <input type="checkbox"/> Other—Enter type below		
17 Name of Financial Institution in which account is held				
18 Account number or other designation		19 Mailing Address (Number, Street, Suite Number) of financial institution in which account is held		
20 City	21 State, if known	22 Zip/Postal Code, if known	23 Country	

Part III Information on Financial Account(s) Owned Jointly				Form TD F 90-22.1 Page Number ___ of ___
Complete a Separate Block for Each Account Owned Jointly				
This side can be copied as many times as necessary in order to provide information on all accounts.				
1 Filing for calendar year _ _ _ _	3-4 Check appropriate Identification Number <input type="checkbox"/>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nput type="checkbox"/> Foreign Identification Number Enter identification number here:	6 Last Name or Organization Name		
15 Maximum value of account during calendar year reported		16 Type of account a <input type="checkbox"/> Bank b <input type="checkbox"/> Securities c <input type="checkbox"/> Other—Enter type below		
17 Name of Financial Institution in which account is held				
18 Account number or other designation		19 Mailing Address (Number, Street, Suite Number) of financial institution in which account is held		
20 City	21 State, if known	22 Zip/Postal Code, if known	23 Country	
24 Number of joint owners for this account		25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of principal joint owner, if known. See instructions.		
26 Last Name or Organization Name of principal joint owner		27 First Name of principal joint owner, if known	28 Middle initial, if known	
29 Address (Number, Street, Suite or Apartment) of principal joint owner, if known				
30 City, if known	31 State, if known	32 Zip/Postal Code, if known	33 Country, if known	
15 Maximum value of account during calendar year reported		16 Type of account a <input type="checkbox"/> Bank b <input type="checkbox"/> Securities c <input type="checkbox"/> Other—Enter type below		
17 Name of Financial Institution in which account is held				
18 Account number or other designation		19 Mailing Address (Number, Street, Suite Number) of financial institution in which account is held		
20 City	21 State, if known	22 Zip/Postal Code, if known	23 Country	
24 Number of joint owners for this account		25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of principal joint owner, if known. See instructions.		
26 Last Name or Organization Name of principal joint owner		27 First Name of principal joint owner, if known	28 Middle initial, if known	
29 Address (Number, Street, Suite or Apartment) of principal joint owner, if known				
30 City, if known	31 State, if known	32 Zip/Postal Code, if known	33 Country, if known	
15 Maximum value of account during calendar year reported		16 Type of account a <input type="checkbox"/> Bank b <input type="checkbox"/> Securities c <input type="checkbox"/> Other—Enter type below		
17 Name of Financial Institution in which account is held				
18 Account number or other designation		19 Mailing Address (Number, Street, Suite Number) of financial institution in which account is held		
20 City	21 State, if known	22 Zip/Postal Code, if known	23 Country	
24 Number of joint owners for this account		25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of principal joint owner, if known. See instructions.		
26 Last Name or Organization Name of principal joint owner		27 First Name of principal joint owner, if known	28 Middle initial, if known	
29 Address (Number, Street, Suite or Apartment) of principal joint owner, if known				
30 City, if known	31 State, if known	32 Zip/Postal Code, if known	33 Country, if known	

Part IV Information on Financial Account(s) Where Filer has Signature Authority but No Financial Interest in the Account(s)				Form TD F 90-22.1 Page Number ____ of ____	
Complete a Separate Block for Each Account					
This side can be copied as many times as necessary in order to provide information on all accounts.					
1 Filing for calendar year ____ - ____ - ____ - ____	3-4 Check appropriate Identification Number <input type="checkbox"/>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nput type="checkbox"/> Foreign Identification Number Enter identification number here:	6 Last Name or Organization Name			
15 Maximum value of account during calendar year reported		16 Type of account a <input type="checkbox"/> Bank b <input type="checkbox"/> Securities c <input type="checkbox"/> Other—Enter type below			
17 Name of Financial Institution in which account is held					
18 Account number or other designation		19 Mailing Address (Number, Street, Suite Number) of financial institution in which account is held			
20 City	21 State, if known	22 Zip/Postal Code, if known	23 Country		
34 Last Name or Organization Name of Account Owner			35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of Account Owner		
36 First Name		37 Middle initial	38 Address (Number, Street, and Apt. or Suite No.)		
39 City	40 State	41 Zip/Postal Code	42 Country		
43 Filer's Title with this Owner					
15 Maximum value of account during calendar year reported		16 Type of account a <input type="checkbox"/> Bank b <input type="checkbox"/> Securities c <input type="checkbox"/> Other—Enter type below			
17 Name of Financial Institution in which account is held					
18 Account number or other designation		19 Mailing Address (Number, Street, Suite Number) of financial institution in which account is held			
20 City	21 State, if known	22 Zip/Postal Code, if known	23 Country		
34 Last Name or Organization Name of Account Owner			35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of Account Owner		
36 First Name		37 Middle initial	38 Address (Number, Street, and Apt. or Suite No.)		
39 City	40 State	41 Zip/Postal Code	42 Country		
43 Filer's Title with this Owner					
15 Maximum value of account during calendar year reported		16 Type of account a <input type="checkbox"/> Bank b <input type="checkbox"/> Securities c <input type="checkbox"/> Other—Enter type below			
17 Name of Financial Institution in which account is held					
18 Account number or other designation		19 Mailing Address (Number, Street, Suite Number) of financial institution in which account is held			
20 City	21 State, if known	22 Zip/Postal Code, if known	23 Country		
34 Last Name or Organization Name of Account Owner			35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of Account Owner		
36 First Name		37 Middle initial	38 Address (Number, Street, and Apt. or Suite No.)		
39 City	40 State	41 Zip/Postal Code	42 Country		
43 Filer's Title with this Owner					

Part V Information on Financial Account(s) Where the Filer is Filing a Consolidated Report				Form TD F 90-22.1 Page Number ____ of ____
Complete a Separate Block for Each Account This side can be copied as many times as necessary in order to provide information on all accounts.				
1 Filing for calendar year ____ - ____ - ____ - ____	3-4 Check appropriate Identification Number <input type="checkbox"/>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nput type="checkbox"/> Foreign Identification Number Enter identification number here:	6 Last Name or Organization Name		
15 Maximum value of account during calendar year reported		16 Type of account a <input type="checkbox"/> Bank b <input type="checkbox"/> Securities c <input type="checkbox"/> Other—Enter type below		
17 Name of Financial Institution in which account is held				
18 Account number or other designation		19 Mailing Address (Number, Street, Suite Number) of financial institution in which account is held		
20 City	21 State, if known	22 Zip/Postal Code, if known	23 Country	
34 Corporate Name of Account Owner			35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of Account Owner	
38 Address (Number, Street, and Apt. or Suite No.)				
39 City	40 State	41 Zip/Postal Code	42 Country	
15 Maximum value of account during calendar year reported		16 Type of account a <input type="checkbox"/> Bank b <input type="checkbox"/> Securities c <input type="checkbox"/> Other—Enter type below		
17 Name of Financial Institution in which account is held				
18 Account number or other designation		19 Mailing Address (Number, Street, Suite Number) of financial institution in which account is held		
20 City	21 State, if known	22 Zip/Postal Code, if known	23 Country	
34 Corporate Name of Account Owner			35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of Account Owner	
38 Address (Number, Street, and Apt. or Suite No.)				
39 City	40 State	41 Zip/Postal Code	42 Country	
15 Maximum value of account during calendar year reported		16 Type of account a <input type="checkbox"/> Bank b <input type="checkbox"/> Securities c <input type="checkbox"/> Other—Enter type below		
17 Name of Financial Institution in which account is held				
18 Account number or other designation		19 Mailing Address (Number, Street, Suite Number) of financial institution in which account is held		
20 City	21 State, if known	22 Zip/Postal Code, if known	23 Country	
34 Corporate Name of Account Owner			35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of Account Owner	
38 Address (Number, Street, and Apt. or Suite No.)				
39 City	40 State	41 Zip/Postal Code	42 Country	

General Instructions

Form TD F 90-22.1,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the "FBAR"), is used to report a financial interest in or signature authority over a foreign financial account. The FBAR must be received by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on or before **June 30th** of the year immediately following the calendar year being reported. The June 30th filing date may not be extended.

Who Must File an FBAR. A United States person that has a financial interest in or signature authority over foreign financial accounts must file an FBAR if the aggregate value of the foreign financial accounts exceeds \$10,000 at any time during the calendar year. See General Definitions, to determine who is a United States person.

General Definitions

Financial Account. A financial account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a securities, brokerage, savings, demand, checking, deposit, time deposit, or other account maintained with a financial institution (or other person performing the services of a financial institution). A financial account also includes a commodity futures or options account, an insurance policy with a cash value (such as a whole life insurance policy), an annuity policy with a cash value, and shares in a mutual fund or similar pooled fund (i.e., a fund that is available to the general public with a regular net asset value determination and regular redemptions).

Foreign Financial Account. A foreign financial account is a financial account located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For example, an account maintained with a branch of a United States bank that is physically located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is a foreign financial account. An account maintained with a branch of a foreign bank that is physically located in the United States is not a foreign financial account.

Financial Interest. A United States person has a financial interest in a foreign financial account for which:

- (1) the United States person is the owner of record or holder of legal title, regardless of whether the account is maintained for the benefit of the United States person or for the benefit of another person; or
- (2) the owner of record or holder of legal title is one of the following:
 - (a) An agent, nominee, attorney, or a person acting in some other capacity on behalf of the United States person with respect to the account;
 - (b) A corporation in which the United States person owns directly or indirectly: (i) more than 50 percent of the total value of shares of stock or (ii) more than 50 percent of the voting power of all shares of stock;
 - (c) A partnership in which the United States person owns directly or indirectly: (i) an interest in more than 50 percent of the partnership's profits (e.g., distributive share of partnership income taking into account any special allocation agreement) or (ii) an interest in more than 50 percent of the partnership capital;
 - (d) A trust of which the United States person: (i) is the trust grantor and (ii) has an ownership interest in the trust for United States federal tax purposes. See 26 U.S.C. sections 671-679 to determine if a grantor has an ownership interest in a trust;
 - (e) A trust in which the United States person has a greater than 50 percent present beneficial interest in the assets or income of the trust for the calendar year; or
 - (f) Any other entity in which the United States person owns directly or indirectly more than 50 percent of the voting power, total value of equity interest or assets, or interest in profits.

Person. A person means an individual and legal enti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 limited liability company, corporation, partnership, trust, and estate.

Signature Authority. Signature authority is the authority of an individual (alone or in conjunction with another individual) to control the disposition of assets held in a foreign financial account by direct communication (whether in writing or otherwise) to the bank or other financial institution that maintains the financial account. See Exceptions, Signature Authority.

United States. For FBAR purposes, the United States includes the States, the District of Columbia, all United States territories and possessions (e.g., American Samoa, the Commonwealth of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the Commonwealth of Puerto Rico, Guam, and the United States Virgin Islands), and the Indian lands as defined in the Indian Gaming Regulatory Act. References to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include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federal government and the laws of all places listed in this definition.

United States Person. United States person means United States citizens; United States residents; enti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orporations, partnerships, or limited liability companies created or organized in the United States or under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and trusts or estates formed under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Note. The federal tax treatment of an entity does not determine whether the entity has an FBAR filing requirement. For example, an entity that is disregarded for purposes of Title 26 of the United States Code must file an FBAR, if otherwise required to do so. Similarly, a trust for which the trust income, deductions, or credits are taken into account by another person for purposes of Title 26 of the United States Code must file an FBAR, if otherwise required to do so.

United States Resident. A United States resident is an alien residing in the United States. To determine if the filer is a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pply the residency tests in 26 U.S.C. section 7701(b). When applying the residency tests, use the definition of United States in these instructions.

Exceptions

Certain Accounts Jointly Owned by Spouses. The spouse of an individual who files an FBAR is not required to file a separate FBAR if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1) all the financial accounts that the non-filing spouse is required to report are jointly owned with the filing spouse; (2) the filing spouse reports the jointly owned accounts on a timely filed FBAR; and (3) both spouses sign the FBAR in Item 44. See Explanations for Specific Items, Part III, Items 25-33. Otherwise, both spouses are required to file separate FBARs, and each spouse must report the entire value of the jointly owned accounts.

Consolidated FBAR. If a United States person that is an entity is named in a consolidated FBAR filed by a greater than 50 percent owner, such entity is not required to file a separate FBAR. See Explanations for Specific Items, Part V.

Correspondent/Nostro Account. Correspondent or nostro accounts (which are maintained by banks and used solely for bank-to-bank settlements) are not required to be reported.

Governmental Entity. A foreign financial account of any governmental entity of the United States (as defined above) is not required to be reported by any person. For purposes of this form, governmental entity includes a college or university that is an agency of, an instrumentality of, owned by, or operated by a governmental entity. For purposes of this form, governmental entity also includes an employee retirement or welfare benefit plan of a governmental entity.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 A foreign financial account of any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 (i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s a member) is not required to be reported by any person.

IRA Owners and Beneficiaries. An owner or beneficiary of an IRA is not required to report a foreign financial account held in the IRA.

Participants in and Beneficiaries of Tax-Qualified Retirement Plans. A participant in or beneficiary of a retirement plan described in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401(a), 403(a), or 403(b) is not required to report a foreign financial account held by or on behalf of the retirement plan.

Signature Authority. Individuals who have signature authority over, but no financial interest in, a foreign financial account are not required to report the account in the following situations:

- (1) An officer or employee of a bank that is examined by the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the Office of Thrift Supervision, or the 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is not required to report signature authority over a foreign financial account owned or maintained by the bank.

- (2) An officer or employee of a financial institution that is registered with and examined by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or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is not required to report signature authority over a foreign financial account owned or maintained by the financial institution.

General Instructions

Form TD F 90-22.1,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the "FBAR"), is used to report a financial interest in or signature authority over a foreign financial account. The FBAR must be received by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on or before **June 30th** of the year immediately following the calendar year being reported. The June 30th filing date may not be extended.

Who Must File an FBAR. A United States person that has a financial interest in or signature authority over foreign financial accounts must file an FBAR if the aggregate value of the foreign financial accounts exceeds \$10,000 at any time during the calendar year. See General Definitions, to determine who is a United States person.

General Definitions

Financial Account. A financial account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a securities, brokerage, savings, demand, checking, deposit, time deposit, or other account maintained with a financial institution (or other person performing the services of a financial institution). A financial account also includes a commodity futures or options account, an insurance policy with a cash value (such as a whole life insurance policy), an annuity policy with a cash value, and shares in a mutual fund or similar pooled fund (i.e., a fund that is available to the general public with a regular net asset value determination and regular redemptions).

Foreign Financial Account. A foreign financial account is a financial account located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For example, an account maintained with a branch of a United States bank that is physically located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is a foreign financial account. An account maintained with a branch of a foreign bank that is physically located in the United States is not a foreign financial account.

Financial Interest. A United States person has a financial interest in a foreign financial account for which:

- (1) the United States person is the owner of record or holder of legal title, regardless of whether the account is maintained for the benefit of the United States person or for the benefit of another person; or
- (2) the owner of record or holder of legal title is one of the following:
 - (a) An agent, nominee, attorney, or a person acting in some other capacity on behalf of the United States person with respect to the account;
 - (b) A corporation in which the United States person owns directly or indirectly: (i) more than 50 percent of the total value of shares of stock or (ii) more than 50 percent of the voting power of all shares of stock;
 - (c) A partnership in which the United States person owns directly or indirectly: (i) an interest in more than 50 percent of the partnership's profits (e.g., distributive share of partnership income taking into account any special allocation agreement) or (ii) an interest in more than 50 percent of the partnership capital;
 - (d) A trust of which the United States person: (i) is the trust grantor and (ii) has an ownership interest in the trust for United States federal tax purposes. See 26 U.S.C. sections 671-679 to determine if a grantor has an ownership interest in a trust;
 - (e) A trust in which the United States person has a greater than 50 percent present beneficial interest in the assets or income of the trust for the calendar year; or
 - (f) Any other entity in which the United States person owns directly or indirectly more than 50 percent of the voting power, total value of equity interest or assets, or interest in profits.

Person. A person means an individual and legal enti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 limited liability company, corporation, partnership, trust, and estate.

Signature Authority. Signature authority is the authority of an individual (alone or in conjunction with another individual) to control the disposition of assets held in a foreign financial account by direct communication (whether in writing or otherwise) to the bank or other financial institution that maintains the financial account. See Exceptions, Signature Authority.

United States. For FBAR purposes, the United States includes the States, the District of Columbia, all United States territories and possessions (e.g., American Samoa, the Commonwealth of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the Commonwealth of Puerto Rico, Guam, and the United States Virgin Islands), and the Indian lands as defined in the Indian Gaming Regulatory Act. References to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include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federal government and the laws of all places listed in this definition.

United States Person. United States person means United States citizens; United States residents; enti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orporations, partnerships, or limited liability companies created or organized in the United States or under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and trusts or estates formed under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Note. The federal tax treatment of an entity does not determine whether the entity has an FBAR filing requirement. For example, an entity that is disregarded for purposes of Title 26 of the United States Code must file an FBAR, if otherwise required to do so. Similarly, a trust for which the trust income, deductions, or credits are taken into account by another person for purposes of Title 26 of the United States Code must file an FBAR, if otherwise required to do so.

United States Resident. A United States resident is an alien residing in the United States. To determine if the filer is a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pply the residency tests in 26 U.S.C. section 7701(b). When applying the residency tests, use the definition of United States in these instructions.

Exceptions

Certain Accounts Jointly Owned by Spouses. The spouse of an individual who files an FBAR is not required to file a separate FBAR if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1) all the financial accounts that the non-filing spouse is required to report are jointly owned with the filing spouse; (2) the filing spouse reports the jointly owned accounts on a timely filed FBAR; and (3) both spouses sign the FBAR in Item 44. See Explanations for Specific Items, Part III, Items 25-33. Otherwise, both spouses are required to file separate FBARs, and each spouse must report the entire value of the jointly owned accounts.

Consolidated FBAR. If a United States person that is an entity is named in a consolidated FBAR filed by a greater than 50 percent owner, such entity is not required to file a separate FBAR. See Explanations for Specific Items, Part V.

Correspondent/Nostro Account. Correspondent or nostro accounts (which are maintained by banks and used solely for bank-to-bank settlements) are not required to be reported.

Governmental Entity. A foreign financial account of any governmental entity of the United States (as defined above) is not required to be reported by any person. For purposes of this form, governmental entity includes a college or university that is an agency of, an instrumentality of, owned by, or operated by a governmental entity. For purposes of this form, governmental entity also includes an employee retirement or welfare benefit plan of a governmental entity.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 A foreign financial account of any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 (i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s a member) is not required to be reported by any person.

IRA Owners and Beneficiaries. An owner or beneficiary of an IRA is not required to report a foreign financial account held in the IRA.

Participants in and Beneficiaries of Tax-Qualified Retirement Plans. A participant in or beneficiary of a retirement plan described in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401(a), 403(a), or 403(b) is not required to report a foreign financial account held by or on behalf of the retirement plan.

Signature Authority. Individuals who have signature authority over, but no financial interest in, a foreign financial account are not required to report the account in the following situations:

(1) An officer or employee of a bank that is examined by the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the Office of Thrift Supervision, or the 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is not required to report signature authority over a foreign financial account owned or maintained by the bank.

(2) An officer or employee of a financial institution that is registered with and examined by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or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is not required to report signature authority over a foreign financial account owned or maintained by the financial institution.

(3) An officer or employee of an Authorized Service Provider is not required to report signature authority over a foreign financial account that is owned or maintained by an investment company that is registered with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uthorized Service Provider means an entity that is registered with and examined by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nd provides services to an investment company registered under the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4) An officer or employee of an entity that has a class of equity securities listed (or American depository receipts listed) on any United States national securities exchange is not required to report signature authority over a foreign financial account of such entity.

(5) An officer or employee of a United States subsidiary is not required to report signature authority over a foreign financial account of the subsidiary if its United States parent has a class of equity securities listed on any United States national securities exchange and the subsidiary is included in a consolidated FBAR report of the United States parent.

(6) An officer or employee of an entity that has a class of equity securities registered (or American depository receipts in respect of equity securities registered) under section 12(g)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is not required to report signature authority over a foreign financial account of such entity.

Trust Beneficiaries. A trust beneficiary with a financial interest described in section (2)(e) of the financial interest definition is not required to report the trust's foreign financial accounts on an FBAR if the trust, trustee of the trust, or agent of the trust: (1) is a United States person and (2) files an FBAR disclosing the trust's foreign financial accounts.

United States Military Banking Facility. A financial account maintained with a financial institution located on a United States military installation is not required to be reported, even if that military installation is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Filing Information

When and Where to File. The FBAR is an annual report and must be received by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on or before June 30th of the year following the calendar year being reported. **Do Not file with federal income tax return.**

File by mailing to:

Department of the Treasury
Post Office Box 32621
Detroit, MI 48232-0621

If an express delivery service is used, file by mailing to:

IRS Enterprise Computing Center
ATTN: CTR Operations Mailroom, 4th Floor
985 Michigan Avenue
Detroit, MI 48226

The FBAR may be hand delivered to any local office of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for forwarding to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Detroit, MI. The FBAR may also be delivered to the Internal Revenue Service's tax attaches located in United States embassies and consulates for forwarding to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Detroit, MI. The FBAR is not considered filed until it is received by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 Detroit, MI.

No Extension of Time to File. There is no extension of time available for filing an FBAR. Extensions of time to file federal tax returns do NOT extend the time for filing an FBAR. If a delinquent FBAR is filed, attach a statement explaining the reason for the late filing.

Amending a Previously Filed FBAR. To amend a filed FBAR, check the "Amended" box in the upper right hand corner of the first page of the FBAR, make the needed additions or corrections, attach a statement explaining the additions or corrections, and staple a copy of the original FBAR to the amendment. An amendment should not be made until at least 90 calendar days after the original FBAR is filed. Follow the instructions in "When and Where to File" to file an amendment.

Record Keeping Requirements. Persons required to file an FBAR must retain records that contain the name in which each account is maintained, the number or other designation of the account, the name and address of the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 that maintains the account, the type of account, and the maximum account value of each account during the reporting period. The records must be retained for a

period of 5 years from June 30th of the year following the calendar year reported and must be available for inspection as provided by law. Retaining a copy of the filed FBAR can help to satisfy the record keeping requirements.

An officer or employee who files an FBAR to report signature authority over an employer's foreign financial account is not required to personally retain records regarding these accounts.

Questions. For questions regarding the FBAR, contact the Detroit Computing Center Hotline at 1-800-800-2877, option 2.

Explanations for Specific Items

Part I — Filer Information

Item 1. The FBAR is an annual report. Enter the calendar year being reported. If amending a previously filed FBAR, check the "Amended" box.

Item 2. Check the box that describes the filer. Check only one box. Individuals reporting only signature authority, check box "a". If filing a consolidated FBAR, check box "d". To determine if a consolidated FBAR can be filed, see Part V. If the type of filer is not listed in boxes "a" through "c", check box "e", and enter the type of filer. Persons that should check box "e"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rusts, estates,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nd tax-exempt entities (even if the entity is organized as a corporation). A disregarded entity must check box "e", and enter the type of entity followed by "(D.E.)". For example, a limited liability company that is disregarded for United States federal tax purposes would enter "limited liability company (D.E.)".

Item 3. Provide the filer's United States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Generally, this is the filer's United States social security number (SSN), United States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 or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 Throughout the FBAR, numbers should be entered with no spaces, dashes, or other punctuation. If the filer does NOT have a United States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complete Item 4.

Item 4. Complete Item 4 only if the filer does NOT have a United States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tem 4 requires the filer to provide information from an official foreign government document to verify the filer's nationality or residence. Enter the document number followed by the country of issuance, check the appropriate type of document, and if "other" is checked, provide the type of document.

Item 5. If the filer is an individual, enter the filer's date of birth, using the month, day, and year convention.

Items 9, 10, 11, 12, and 13. Enter the filer's address. An individual residing in the United States must enter the street address of the individual's United States residence, not a post office box. An individual residing outside the United States must enter the individual's United States mailing address. If the individual does not have a United States mailing address, the individual must enter a foreign residence address. An entity must enter its United States mailing address. If the entity does not have a United States mailing address, the entity must enter its foreign mailing address.

Item 14. If the filer has a financial interest in 25 or more foreign financial accounts, check "Yes" and enter the number of accounts. Do not complete Part II or Part III of the FBAR. If filing a consolidated FBAR, only complete Part V, Items 34-42, for each United States entity included in the consolidated FBAR.

Note. If the filer has signature authority over 25 or more foreign financial accounts, only complete Part IV, Items 34-43, for each person for which the filer has signature authority, and check "No" in Part I, Item 14.

Filers must comply with applicable recording keeping requirements. See Record Keeping Requirements.

Part II — Information on Financial Account(s) Owned Separately

Enter information in the applicable parts of the form only. Number the pages used, and mail only those pages. If there is not enough space to provide all account information, copy and complete additional pages of the required Part as necessary. Do not use any attachments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the instructions.

Item 15. Determining Maximum Account Value.

Step 1. Determine the maximum value of each account (in the currency of that account) during the calendar year being reported. The maximum value of an account is a reasonable approximation of the greatest value of currency or nonmonetary assets in the account during the calendar year. Periodic account statements may be relied on to determine the maximum value of the account, provided that the statements fairly reflect the maximum account value during the calendar year. For Item 15, if the filer had a financial interest in more than one account, each account must be valued separately.

Step 2. In the case of non-United States currency, convert the maximum account value for each account into United States dollars. Convert foreign currency by using the Treasury's Financial Management Service rate (this rate may be found at www.fms.treas.gov) from the last day of the calendar year. If no Treasury Financial Management Service rate is available, use another verifiable exchange rate and provide the source of that rate. In valuing currency of a country that uses multiple exchange rates, use the rate that would apply if the currency in the account were converted into United States dollars on the last day of the calendar year.

If the aggregate of the maximum account values exceeds \$10,000, an FBAR must be filed. An FBAR is not required to be filed if the person did not have \$10,000 of aggregate value in foreign financial accounts at any time during the calendar year.

For United States persons with a financial interest in or signature authority over fewer than 25 accounts that are unable to determine if the aggregate maximum account values of the accounts exceeded \$10,000 at any time during the calendar year, complete Part II, III, IV, or V, as appropriate, for each of these accounts and enter "value unknown" in Item 15.

Item 16. Indicate the type of account. Check only one box. If "Other" is selected, describe the account.

Item 17. Provide the name of the financial institution with which the account is held.

Item 18. Provide the account number that the financial institution uses to designate the account.

Items 19-23. Provide the complete mailing address of the financial institution where the account is located. If the foreign address does not include a state (e.g., province) or postal code, leave the box(es) blank.

Part III — Information on Financial Account(s) Owned Jointly

Enter information in the applicable parts of the form only. Number the pages used, and mail only those pages. If there is not enough space to provide all account information, copy and complete additional pages of the required Part as necessary. Do not use any attachments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the instructions.

For Items 15-23, see Part II. Each joint owner must report the entire value of the account as determined under Item 15.

Item 24. Enter the number of joint owners for the account. If the exact number is not known, provide an estimate. Do not count the filer when determining the number of joint owners.

Items 25-33. Use the identifying information of the principal joint owner (excluding the filer) to complete Items 25-33. Leave blank items for which no information is available. If the filer's spouse has an interest in a jointly owned account, the filer's spouse is the principal joint owner. Enter "(spouse)" on line 26 after the last name of the joint spousal owner. See Exceptions, Certain Accounts Jointly Owned by Spouses, to determine if the filer's spouse is required to independently report the jointly owned accounts.

Part IV — Information on Financial Account(s) Where Filer has Signature Authority but No Financial Interest in the Account(s)

Enter information in the applicable parts of the form only. Number the pages used, and mail only those pages. If there is not enough space to provide all account information, copy and complete additional pages of the required Part as necessary. Do not use any attachments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the instructions.

25 or More Foreign Financial Accounts. Filers with signature authority over 25 or more foreign financial accounts must complete only Items 34-43 for each person on whose behalf the filer has signature authority.

Modified Reporting for United States Persons Residing and Employed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A United States person who (1) resides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2) is an officer or employee of an employer who is physically located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and (3) has signature authority over a foreign financial account that is owned or maintained by the individual's employer should only complete Part I and Part IV, Items 34-43 of the FBAR. Part IV, Items 34-43 should only be completed one time with information about the individual's employer.

For Items 15-23, see Part II.

Items 34-42. Provide the name, address, and identifying number of the owner of the foreign financial account for which the individual has signature authority over but no financial interest in the account. If there is more than one owner of the account for which the individual has signature authority, provide the information in Items 34-42 for the principal joint owner (excluding the filer). If account information is completed for more than one account of the same owner, identify the owner only once and write "Same Owner" in Item 34 for the succeeding accounts with the same owner.

Item 43. Enter filer's title for the position that provides signature authority (e.g., treasurer).

Part V — Information on Financial Account(s) Where Corporate Filer Is Filing a Consolidated Report

Enter information in the applicable parts of the form only. Number the pages used, and mail only those pages. If there is not enough space to provide all account information, copy and complete additional pages of the required Part as necessary. Do not use any attachments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the instructions.

Who Can File a Consolidated FBAR. An entity that is a United States person that owns directly or indirectly a greater than 50 percent interest in another entity that is required to file an FBAR is permitted to file a consolidated FBAR on behalf of itself and such other entity. Check box "d" in Part I, Item 2 and complete Part V. If filing a consolidated FBAR and reporting 25 or more foreign financial accounts, complete only Items 34-42 for each entity included in the consolidated FBAR.

For Items 15-23, see Part II.

Items 34-42. Provide the name, United States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and address of the owner of the foreign financial account as shown on the books of the financial institution. If account information is completed for more than one account of the same owner, identify the owner only once and write "Same Owner" in Item 34 for the succeeding accounts of the same owner.

Signatures

Items 44-46. The FBAR must be signed by the filer named in Part I. If the FBAR is being filed on behalf of a partnership, corporation, limited liability company, trust, estate, or other entity, it must be signed by an authorized individual. Enter the authorized individual's title in Item 45.

An individual must leave "Filer's Title" blank, unless the individual is filing an FBAR due to the individual's signature authority. If an individual is filing because the individual has signature authority over a foreign financial account, the individual should enter the title upon which his or her authority is based in Item 45.

A spouse included as a joint owner, who does not file a separate FBAR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in Part III, must also sign the FBAR (in Item 44) for the jointly owned accounts. See the instructions for Part III.

Penalties

A person who is required to file an FBAR and fails to properly file may be subject to a civil penalty not to exceed \$10,000. If there is reasonable cause for the failure and the balance in the account is properly reported, no penalty will be imposed. A person who willfully fails to report an account or account identifying information may be subject to a civil monetary penalty equal to the greater of \$100,000 or 50 percent of the balance in the account at the time of the violation. See 31 U.S.C. section 5321(a)(5). Willful violations may also be subject to criminal penalties under 31 U.S.C. section 5322(a), 31 U.S.C. section 5322(b), or 18 U.S.C. section 1001.

[부록 2-2] 미국의 Form 8938

Form 8938 (12-2013) Page **2**

Part V Detailed Information for Each Foreign Deposit and Custodial Account Included in the Part I Summary
(see instructions) (continued)

7 Name of financial institution in which account is maintained _____

8 Mailing address of financial institution in which account is maintained. Number, street, and room or suite no. _____

9 City or town, state or province, and country (including postal code) _____

Part VI Detailed Information for Each "Other Foreign Asset" Included in the Part II Summary (see instructions)

Note. If you reported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 on Forms 3520, 3520-A, 5471, 8621, 8865, or 8891, you do not have to include the assets on Form 8938. You must complete Part IV. See instructions.

If you have more than one asset to report, attach a continuation statement for each additional asset (see instructions).

1 Description of asset	2 Identifying number or other designation	
3 Complete all that apply. See instructions for reporting of multiple acquisition or disposition dates.		
a Date asset acquired during tax year, if applicable		
b Date asset disposed of during tax year, if applicable		
c <input type="checkbox"/> Check if asset jointly owned with spouse d <input type="checkbox"/> Check if no tax item reported in Part III with respect to this asset		
4 Maximum value of asset during tax year (check box that applies)		
a <input type="checkbox"/> \$0 - \$50,000 b <input type="checkbox"/> \$50,001 - \$100,000 c <input type="checkbox"/> \$100,001 - \$150,000 d <input type="checkbox"/> \$150,001 - \$200,000		
e If more than \$200,000, list value \$		
5 Did you use a foreign currency exchange rate to convert the value of the asset into U.S. dollars?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6 If you answered "Yes" to line 5, complete all that apply.		
(1) Foreign currency in which asset is denominated	(2) Foreign currency exchange rate used to convert to U.S. dollars	(3) Source of exchange rate used if not from U.S. Treasury Financial Management Service
7 If asset reported on line 1 is stock of a foreign entity or an interest in a foreign entity, enter the following information for the asset.		
a Name of foreign entity _____		
b Type of foreign entity (1) <input type="checkbox"/> Partnership (2) <input type="checkbox"/> Corporation (3) <input type="checkbox"/> Trust (4) <input type="checkbox"/> Estate		
c Mailing address of foreign entity. Number, street, and room or suite no. _____		
d City or town, state or province, and country (including postal code) _____		
8 If asset reported on line 1 is not stock of a foreign entity or an interest in a foreign entity, enter the following information for the asset.		
Note. If this asset has more than one issuer or counterparty, attach a continuation statement with the same information for each additional issuer or counterparty (see instructions).		
a Name of issuer or counterparty _____		
Check if information is for <input type="checkbox"/> Issuer <input type="checkbox"/> Counterparty		
b Type of issuer or counterparty		
(1) <input type="checkbox"/> Individual (2) <input type="checkbox"/> Partnership (3) <input type="checkbox"/> Corporation (4) <input type="checkbox"/> Trust (5) <input type="checkbox"/> Estate		
c Check if issuer or counterparty is a <input type="checkbox"/> U.S. person <input type="checkbox"/> Foreign person		
d Mailing address of issuer or counterparty. Number, street, and room or suite no. _____		
e City or town, state or province, and country (including postal code) _____		

Form **8938** (12-2013)

(Continuation Statement)

Name(s) shown on return	Identifying number
-------------------------	--------------------

Part V Detailed Information for Each Foreign Deposit and Custodial Account Included in the Part I Summary (see instructions)

1 Type of account <input type="checkbox"/> Deposit <input type="checkbox"/> Custodial	2 Account number or other designation
3 Check all that apply: a <input type="checkbox"/> Account opened during tax year b <input type="checkbox"/> Account closed during tax year c <input type="checkbox"/> Account jointly owned with spouse d <input type="checkbox"/> No tax item reported in Part III with respect to this asset	
4 Maximum value of account during tax year: _____ \$	
5 Did you use a foreign currency exchange rate to convert the value of the account into U.S. dollars?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6 If you answered "Yes" to line 5, complete all that apply.	
(1) Foreign currency in which account is maintained	(2) Foreign currency exchange rate used to convert to U.S. dollars
(3) Source of exchange rate used if not from U.S. Treasury Financial Management Service	
7 Name of financial institution in which account is maintained	
8 Mailing address of financial institution in which account is maintained. Number, street, and room or suite no.	
9 City or town, state or province, and country (including postal code)	

Part VI Detailed Information for Each "Other Foreign Asset" Included in the Part II Summary (see instructions)

1 Description of asset	2 Identifying number or other designation
3 Complete all that apply. See instructions for reporting of multiple acquisition or disposition dates.	
a Date asset acquired during tax year, if applicable: _____	
b Date asset disposed of during tax year, if applicable: _____	
c <input type="checkbox"/> Check if asset jointly owned with spouse d <input type="checkbox"/> Check if no tax item reported in Part III with respect to this asset	
4 Maximum value of asset during tax year (check box that applies):	
a <input type="checkbox"/> \$0 - \$50,000 b <input type="checkbox"/> \$50,001 - \$100,000 c <input type="checkbox"/> \$100,001 - \$150,000 d <input type="checkbox"/> \$150,001 - \$200,000	
e If more than \$200,000, list value: _____ \$	
5 Did you use a foreign currency exchange rate to convert the value of the asset into U.S. dollars?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6 If you answered "Yes" to line 5, complete all that apply.	
(1) Foreign currency in which asset is denominated	(2) Foreign currency exchange rate used to convert to U.S. dollars
(3) Source of exchange rate used if not from U.S. Treasury Financial Management Service	
7 If asset reported on line 1 is stock of a foreign entity or an interest in a foreign entity, enter the following information for the asset.	
a Name of foreign entity: _____	
b Type of foreign entity: (1) <input type="checkbox"/> Partnership (2) <input type="checkbox"/> Corporation (3) <input type="checkbox"/> Trust (4) <input type="checkbox"/> Estate	
c Mailing address of foreign entity. Number, street, and room or suite no. _____	
d City or town, state or province, and country (including postal code) _____	
8 If asset reported on line 1 is not stock of a foreign entity or an interest in a foreign entity, enter the following information for the asset.	
a Name of issuer or counterparty: _____	
Check if information is for: <input type="checkbox"/> Issuer <input type="checkbox"/> Counterparty	
b Type of issuer or counterparty: (1) <input type="checkbox"/> Individual (2) <input type="checkbox"/> Partnership (3) <input type="checkbox"/> Corporation (4) <input type="checkbox"/> Trust (5) <input type="checkbox"/> Estate	
c Check if issuer or counterparty is a: <input type="checkbox"/> U.S. person <input type="checkbox"/> Foreign person	
d Mailing address of issuer or counterparty. Number, street, and room or suite no. _____	
e City or town, state or province, and country (including postal code) _____	

[부록 3] 일본의 국외재산합계표 및 조서

FA5001

____ 稅務署長
____ 年 ____ 月 ____ 日

平成 ____ 年 12 月 31 日分 国外財産調書合計表

住所 又は 事業所 事務所 その他	〒 _____		フリガナ	_____			
	_____		氏名	_____			
			性別	種別	電話番号	(自宅・勤務先・携帯)	
			男	女	—	—	—
生年月日	_____	財産及び債務の明細書の提出有	○				
		番号	_____				

提出用

(単位は円)

財産の区分		価額	財産の区分		価額
		百万 千 円			百万 千 円
1	土地	_____	12 その 他の 財 産	保険の契約に 関する権利	_____
2	建物	_____		株式に関する 権利	_____
3	山林	_____		預託金等	_____
4	現金	_____		組合等に 対する出資	_____
5	預貯金	_____		信託に 関する権利	_____
6	有価証券	_____		無体財産権	_____
7	貸付金	_____			_____
8	未収入金	_____			_____
9	書画骨とう 美術工芸品	_____			_____
10	貴金属類	_____		その他の財産 (上記以外)	_____
11	動産 (上記4、9、10以外)	_____		合計額	_____

備考

税理士
署名押印

電話番号 _____

整理欄	区分	A	B	C	D	E	F	G	H	I
	異動	□□	年	□□	月	□□	日			
	通信日付印 (年月日)	(. .)								

8938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

Form (December 2013)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OMB No. 1545-2196 Attachment Sequence No. 175

Information about Form 8938 and its separate instructions is at www.irs.gov/form8938. Attach to your tax return.

If you have attached continuation statements, check here Number of continuation statements _____

Name(s) shown on return _____ Identifying number _____

Part I Foreign Deposit and Custodial Accounts Summary

1 Number of Deposit Accounts (reported on Form 8938) _____

2 Maximum Value of All Deposit Accounts \$ _____

3 Number of Custodial Accounts (reported on Form 8938) _____

4 Maximum Value of All Custodial Accounts \$ _____

5 Were any foreign deposit or custodial accounts closed during the tax year? Yes No

Part II Other Foreign Assets Summary

1 Number of Foreign Assets (reported on Form 8938) _____

2 Maximum Value of All Assets \$ _____

3 Were any foreign assets acquired or sold during the tax year? Yes No

Part III Summary of Tax Items Attributable to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 (see instructions)

(a) Asset Category	(b) Tax item	(c) Amount reported on form or schedule	Where reported	
			(d) Form and line	(e) Schedule and line
1 Foreign Deposit and Custodial Accounts	1a Interest	\$		
	1b Dividends	\$		
	1c Royalties	\$		
	1d Other income	\$		
	1e Gains (losses)	\$		
	1f Deductions	\$		
	1g Credits	\$		
2 Other Foreign Assets	2a Interest	\$		
	2b Dividends	\$		
	2c Royalties	\$		
	2d Other income	\$		
	2e Gains (losses)	\$		
	2f Deductions	\$		
	2g Credits	\$		

Part IV Excepted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 (see instructions)

If you reported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 on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forms, enter the number of such forms filed. You do not need to include these assets on Form 8938 for the tax year.

1. Number of Forms 3520 _____ 2. Number of Forms 3520-A _____ 3. Number of Forms 5471 _____

4. Number of Forms 8621 _____ 5. Number of Forms 8865 _____ 6. Number of Forms 8891 _____

Part V Detailed Information for Each Foreign Deposit and Custodial Account Included in the Part I Summary (see instructions)

If you have more than one account to report, attach a continuation statement for each additional account (see instructions).

1 Type of account Deposit Custodial 2 Account number or other designation _____

3 Check all that apply a Account opened during tax year b Account closed during tax year

c Account jointly owned with spouse d No tax item reported in Part III with respect to this asset

4 Maximum value of account during tax year \$ _____

5 Did you use a foreign currency exchange rate to convert the value of the account into U.S. dollars? Yes No

6 If you answered "Yes" to line 5, complete all that apply.

(1) Foreign currency in which account is maintained _____ (2) Foreign currency exchange rate used to convert to U.S. dollars _____ (3) Source of exchange rate used if not from U.S. Treasury Financial Management Service _____

For Paperwork Reduction Act Notice, see the separate instructions. Cat. No. 37753A Form 8938 (12-2013)

[부록 4-1] 호주 신고서식-H/Company Tax Return에서 발췌

Overseas transactions or interests/thin capitalisation

– the following questions must be answered.

If you answer **Yes** at item **25, 26** or **27** complete and attach an *International dealings schedule 2013*.**International related party dealings/transfer pricing**

24 Did you have any transactions or dealings with international related parties (irrespective of whether they were on revenue or capital account)? Such transactions or dealings include the transfer of tangible or intangible property and any new or existing financial arrangements. **X** Yes No

25 Was the aggregate amount of the transactions or dealings with international related parties (including the value of property transferred or the balance outstanding on any loans) greater than \$2 million? **Y** Yes No

26 Overseas interests

Did you have overseas branch operations or a direct or indirect interest in a foreign trust, foreign company, controlled foreign entity or transferor trust?

Z Yes No **27 Thin capitalisation**

Did the thin capitalisation provisions apply?

O Yes No **28 Transactions with specified countries**

Did you directly or indirectly send to, or receive from, one of the countries specified in the instructions, any funds or property OR

Do you have the ability or expectation to control, whether directly or indirectly, the disposition of any funds, property, assets or investments located in, or located elsewhere but controlled or managed from one of those countries?

I Yes No

3 Overseas transactions

3(a) Did the company make or receive payment of any amount greater than \$500,000 (other than receipts listed in answer to question 2(a) on page 15) to or from any person or entity located outside of Australia, which payment was not an allowable deduction or assessable income to the company?

No Yes

If yes,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in respect of each such payment made or received.

The date of the payment / /

Amount of payment made \$ Amount of payment received \$

The full name of the other party to the transaction

The country of residence of the other party to the transaction Provide the foreign country code

The nature and purpose of the payment

The reason for the payment not being an allowable deduction or assessable income to the company

3(b) Did the company pay, or incur a liability to contribute to or bear the cost of, any amount by way of loan; capital contribution; fees for accounting, banking, legal, consulting or other services provided or received; or otherwise in respect of the establishment or maintenance of any person or entity located outside Australia?

No Yes

If yes,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for each such payment or liability.

The nature of the payment or liability Amount \$

The full name of the person or entity for whom the amount of payment or liability was paid or incurred

The country of residence of the person or entity Provide the foreign country code

The nature of any assessable income derived by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ayment or liability Amount \$

The nature of any deduction claimed by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ayment or liability Amount \$

The reason for it being deductible

3(c) Did the company claim a deduction for any expenses incurred (other than salary or wages expenses) in respect of management, consulting, financial, administrative or other services provided to the company by a person or entity (other than an associate listed in answer to question 4(b) on page 18) located outside Australia?

No Yes

If yes,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in respect of each such expense.

The full name of the person or entity

The country of residence of the person or entity Provide the foreign country code

The amount of the expense \$

A description of the services provided to the company

3(d) Did the company make any contributions on behalf of employees to any offshore employee benefit trust, offshore superannuation, pension, retirement, employee welfare, stichting or anstalt or other like offshore funds? No Yes If yes,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in respect of each fund.

The full name of the fund

The country of residence of the fund Provide the foreign country code

The amount of contributions made to the fund \$

3(e) Did the company have any accounts with any bank or other financial institution outside Australia (other than credit cards or debit cards)? No Yes If yes,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in respect of each such account.

The number of the account

The name of the institution at which the account was located

The address of the institution at which the account was located

Provide the foreign country code

The name of the account

Did the company derive any interest income from the account? No Yes

3(f) Did the company own, have a beneficial interest in, or have the ability or expectation to control directly or indirectly, any funds, property, investment or other assets, tangible or intangible, located outside Australia or managed from a location outside Australia? No Yes If yes,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in respect of each such asset.

The nature and a description of the asset

The country in which the asset is located Provide the foreign country code

The cost of the asset \$

The date the company acquired the asset or gained an interest or control / /

If the company has a valuation of the asset at other than cost, provide details of the most recent valuation Date / /

Value \$

The full name of any person or entity holding the asset on the company's behalf

The country of residence of any person or entity holding the asset on the company's behalf Provide the foreign country code

Did the company use the asset for any income-producing activity? No Yes

3(g) Did the company have, or did the company provide any person with, any credit cards or debit cards which were issued from outside Australia? No Yes If yes,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in respect of each such card.

The number of the account

The name of the institution which issued the card

The address of the institution which issued the card

Provide the foreign country code

The full name of any person provided with the card

The name of the account

The full name of the person or entity which paid the accounts

The nature of any deduction claimed by the company for expenses incurred on the account Amount \$

The reason for it being deductible

Did the company derive any interest income in respect of the card? No Yes

4 Transactions with associates

4(a) Did the company derive any assessable income in respect of management, consulting, financial, administrative or other services provided by the company to an associated person or entity? No Yes If yes,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in respect of each such income amount derived.

The full name of the associated person or entity

The country of residence of the associated person or entity Provide the foreign country code

Provide the tax file number of the associated entity (if known)

The amount of the assessable income \$

A description of the services provided by the company

4(b) Did the company claim a deduction for any expenses incurred (other than salary and wages expenses) in respect of management, consulting, financial, administrative or other services provided to the company by an associated person or entity? No Yes If yes,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in respect of each such expense.

The full name of the associated person or entity

The country of residence of the associated person or entity Provide the foreign country code

Provide the tax file number of the associated entity (if known)

The amount of the expense \$

A description of the services provided to the company

H/Company tax return 2013 Sensitive (when completed) PAGE 18

[부록 4-2] 호주 신고서식(H/Individual Tax Return에서 발췌)

2 Non assessable receipts and distributions							
2(a) Did you receive any distributions of capital, capital advancements or distributions of corpus from a trust, or gifts of money or property, from any person or entity with an aggregate value of \$500,000 or more for the year of income, which receipt was not included in your assessable income?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If yes,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for each distribution.	
The full name of the person or entity making the distribution		<input type="text"/>					
The country of residence of the person or entity making the distribution		<input type="text"/>		Provide the foreign country code.		<input type="text"/>	
If an associated entity provide its tax file number (if known).		<input type="text"/>					
The date of the distribution		<input type="text"/>					
		Day		Month		Year	
The nature of the distribution		<input type="text"/>		Amount \$		<input type="text"/>	
The reason for and the source of the distribution (eg from settled funds or asset revaluation reserve)		<input type="text"/>					
The reason for the distribution not being assessable income to you		<input type="text"/>					
3 Overseas transactions							
3(a) Did you make or receive payment of any amount greater than \$500,000 (other than receipts listed in answer to question 2(a) above) to or from any person or entity located outside of Australia, which payment was not an allowable deduction or assessable income to you?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If yes,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for each such payment made or received.	
The date of the payment		<input type="text"/>					
		Day		Month		Year	
Amount of payment made \$		<input type="text"/>		Amount of payment received \$		<input type="text"/>	
The full name of the other party to the transaction		<input type="text"/>					
The country of residence of the other party to the transaction		<input type="text"/>		Provide the foreign country code.		<input type="text"/>	
The nature and purpose of the payment		<input type="text"/>					
The reason for the payment not being an allowable deduction or assessable income to you		<input type="text"/>					
3(b) Did you claim any deduction for interest expenses incurred on money borrowed from overseas sources?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If yes,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in respect of each such expense.	
Full name of lender	Associated (show as A) or non-associated (show as N)	Foreign country code of lender	Amount of interest expense \$	Amount of tax withheld \$	Amount of interest remitted \$	Foreign country code of country of remittance	Amount borrowed outstanding as at year end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Total interest expenses overseas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3(c) Did you pay, or incur a liability to contribute to or bear the cost of, any amount by way of loan; capital contribution; fees for accounting, banking, legal, consulting or other services provided or received; or otherwise in respect of the establishment or maintenance of any person or entity located outside Australia? **NO** **YES** If yes,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for each such payment or liability.

The nature of the payment or liability Amount \$

The full name of the person or entity for whom the amount of payment or liability was paid or incurred

The country of residence of the person or entity Provide the foreign country code.

The nature of any assessable income derived by you in respect of the payment or liability Amount \$

The nature of any deduction claimed by you in respect of the payment or liability Amount \$

The reason for it being deductible

3(d) Did you claim a deduction for any expenses incurred (other than salary or wages expenses) in respect of management, consulting, financial, administrative or other services provided to you by a person or entity (other than an associate listed in answer to question 4(b) on page 21) located outside Australia? **NO** **YES** If yes,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in respect of each such expense.

The full name of the person or entity

The country of residence of the person or entity Provide the foreign country code.

The amount of the expense \$

A description of the services provided to you

3(e) Did you have or were you a signatory to any accounts with any bank or other financial institution outside of Australia (other than credit cards or debit cards)? **NO** **YES** If yes,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in respect of each such account.

The number of the account

The name of the institution at which the account was located

The address of the institution at which the account was located

Provide the foreign country code

The name of the account

Did you derive any interest income from the account? **NO** **YES**

PAGE 19 **Sensitive** (when completed) H/Individual tax return 2013

3(f) Did you own, have a beneficial interest in, or have the ability or expectation to control directly or indirectly, any funds, property, investment or other assets, tangible or intangible, located outside Australia or managed from a location outside Australia?

NO

YES

If yes,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in respect of each such asset.

The nature and a description of the asset

The country in which the asset is located

Provide the foreign country code.

The cost of the asset

\$

The date you acquired the asset or gained an interest or control

Day | Month | Year

If you have a valuation of the asset at other than cost, provide details of the most recent valuation.

Date

Day | Month | Year

Value

\$

The full name of any person or entity holding the asset on your behalf

The country of residence of any person or entity holding the asset on your behalf

Provide the foreign country code.

Did you use the asset for any income-producing activity?

NO

YES

3(g) Did you have, or did you provide any person with, any credit cards or debit cards which were issued from outside Australia?

NO

YES

If yes,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in respect of each such card.

The number of the account

The name of the institution which issued the card

The address of the institution which issued the card

Provide the foreign country code.

The full name of any person provided with the card

The name of the account

The full name of the person or entity which paid the accounts

The nature of any deduction claimed by you for expenses incurred on the account

Amount

\$

The reason for it being deductible

Did you derive any interest income in respect of the card?

NO

YES

4 Transactions with associates

4(a) Did you derive any assessable income (other than salary and wages) in respect of management, consulting, financial, administrative or other services provided by you to an associated person or entity?

NO

YES

If yes,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in respect of each such income amount derived.

The full name of the associated person or entity

The country of residence of the associated person or entity

Provide the foreign country code.

Provide the tax file number of the associated entity (if known).

The amount of the assessable income

\$

A description of the services provided by you

[부록 5-1] 아일랜드 신고서식(Form 8B-B)

Form 8B-B**Return of Third Party Information by Intermediaries**

Tax Reference Number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p>Remember to quote this number in all correspondence or when calling at your Revenue office</p>	
Return Address:	<p>Completed forms should be sent to the company's local Revenue office. If you are unsure of the correct return address use the Contact Locator on Revenue's website www.revenue.ie</p> <p>Use any envelope and write "Freepost" above the address</p> <p>NO STAMP REQUIRED</p>

Read the explanatory notes on Page 4 before completing this form.
You can submit the return in a spreadsheet format via Secure Email if you wish - see explanatory notes on page 4.

Return by Intermediaries who act in or in connection with the Opening of Foreign Accounts with Deposit Holders

Notice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Section 895 Taxes Consolidation Act 1997 this return should be completed by:

- Companies for their accounting period and returned not later than nine months from the end of the accounting period,
- Persons other than companies for the year of assessment (1 January to 31 December) and returned not later than 31 October of the following year.

RELEVANT PERIOD: FROM / / (DD/MM/YYYY) TO / / (DD/MM/YYYY)

Where the accounts are normally made up to a date other than 31 December, the return may be made by reference to the date in the chargeable period to which the accounts are prepared.

YOU MUST SIGN THIS DECLARATION

I DECLARE tha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all the particulars given on this form are correctly stated.

Signature Date / / (DD/MM/YYYY)

Capacity of Signatory Telephone No.

Name of Intermediary

Business Address, if different from above

Tax Reference Number

RETURN BY PERSON ACTING AS AN INTERMEDIARY IN OR IN CONNECTION WITH THE OPENING OF FOREIGN ACCOUNTS

Read the notes on page 4 before completing this form

COMPLETE IN BLOCK LETTERS - DETAILS IN RELATION TO THE PERSONS TO WHOM THE OFFSHORE PRODUCTS BELONG

NAME <i>(Enter - Full title of Company, Firm, etc., or Surname of Individual - if a Joint Account, enter the first named only)</i>		
FIRST NAME <i>(Individual only)</i>		
TICK <input checked="" type="checkbox"/> THE BOX IF JOINT ACCOUNT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ERMANENT ADDRESS IN THE STATE		
TAX REFERENCE NUMBER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NAME OF DEPOSIT HOLDER <i>(Bank, etc.)</i>		
ADDRESS OF DEPOSIT HOLDER		
DATE ACCOUNT WAS OPENED <i>(DD/MM/YYYY)</i>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AMOUNT OF OPENING DEPOSI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0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0

Tax Reference Number

RETURN BY PERSON ACTING AS AN INTERMEDIARY IN OR IN CONNECTION WITH THE OPENING OF FOREIGN ACCOUNTS

Read the notes on page 4 before completing this form

COMPLETE IN BLOCK LETTERS - DETAILS IN RELATION TO THE PERSONS TO WHOM THE OFFSHORE PRODUCTS BELONG

NAME <i>(Enter - Full title of Company, Firm, etc., or Surname of Individual - if a Joint Account, enter the first named only)</i>		
FIRST NAME <i>(Individual only)</i>		
TICK <input checked="" type="checkbox"/> THE BOX IF JOINT ACCOUNT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ERMANENT ADDRESS IN THE STATE		
TAX REFERENCE NUMBER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NAME OF DEPOSIT HOLDER <i>(Bank, etc.)</i>		
ADDRESS OF DEPOSIT HOLDER		
DATE ACCOUNT WAS OPENED <i>(DD/MM/YYYY)</i>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AMOUNT OF OPENING DEPOSI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0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0

NOTES

Form 8B-B should be completed by persons who,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trade or business, provide a service whereby they act as intermediaries on behalf of Irish* residents in, or in connection with, the opening of foreign accounts with banks or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 Where a person operates from a business address or a private address in the State, he/she should be regarded as an Irish resident.

Returns by Financial Institutions paying or crediting interest should be made on Form 8B-A which is available on Revenue's website www.revenue.ie, from Revenue's Forms and Leaflets Service at LoCall 1890 306 706 (Republic of Ireland only) or from any Revenue office.

Secure Email Filing/Specifications

This return can be submitted via Secure Email. A spreadsheet template is available on Revenue's website www.revenue.ie which can be submitted by Secure Email to 3rdPartyReturns@revenue.ie. See www.revenue.ie/en/online/secure-email.html for information on Secure Email.

Additional information is included on Revenue's website - see *Third Party Returns - A guide to the submission of returns in electronic form* at www.revenue.ie/en/tax/it/third-party-return-forms.html which provides technical specifications for the submission of returns in electronic format and via Secure Email.

Audit

- This return may be subject to an Audit by Revenue
- The law provides that Revenue may make enquiries or take such actions as are considered necessary to verify the accuracy of a return

Civil Penalties/Criminal Prosecution

Tax law provides for both civil penalties and criminal sanctions for the failure to make a return, the making of a false return or facilitating the making of a false return. In the event of a criminal prosecution, a person convicted on indictment of an offence may be liable to a fine not exceeding €126,970 and/or to imprisonment.

[부록 5-2] 아일랜드 신고서식(Form 11에서 발췌)

2012120 ANY PANEL(S) OR SECTION(S) THAT DO NOT REQUIRE AN ENTRY SHOULD BE LEFT BLANK.

PPS Number

	Self	Spouse or Civil Partner
315. (a) (i) Foreign Patent Royalty income previously exempted under S. 234 on which foreign tax was deducted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i) Amount of foreign tax deducted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b) (i) Income from all other Foreign non-Deposit Interest, Royalties, Annuities, Dividends, etc. on which foreign tax deducted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i) Amount of foreign tax deducted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316. Irish tax deducted on encashmen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317. Foreign Bank Accounts (S. 895) Give the following details for each foreign bank account opened in 2012 of which you or your spouse or civil partner were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eposits held		
(a) Name & address of deposit holder (bank, etc.)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b) Date account was opened (DD/MM/YYY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c) Amount of money deposited on opening the accoun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d) Name & address of intermediary through whom account was opened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Foreign Life Policies/Offshore Funds/Other Offshore Products [318 - 320]

318. Foreign Life Policies (S. 730H, 730I, 730J, 730K). Give the following details in respect of any policy from any Member State of the EU or EEA, or from a Member State of the OECD with which Ireland has a Double Taxation Agreement

(a) Relevant payment taxable at 30% (S. 730J(a)(i)(I))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b) Non-Relevant payment taxable at 33% (S. 730J(a)(i)(II)(B))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c) Non-Relevant payment (personal portfolio) taxable at 53% (S. 730J(a)(i)(II)(A))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d) Gain (personal portfolio) taxable at 53% (S. 730K(1)(a))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e) Gain taxable at 33% (S. 730K(1)(b))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And in respect of any such policy issued in 2012 give the following additional details:		
(f) Name & address of person who commenced the foreign life polic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g) Terms of the polic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h) Annual premiums payable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 Name & address of the person through whom the foreign life policy was acquired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319. Offshore Funds (Part 27 Ch 4). Give the following details in respect of any material interest in 'regulated offshore fund(s)' (those coming within S. 747B(2A)) in the EU or EEA, or in a Member State of the OECD with which Ireland has a Double Taxation Agreement		
(a) Relevant payment taxable at 30% (S. 747D(a)(i)(I)(B))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b) Relevant payment (personal portfolio) taxable at 53% (S. 747D(a)(i)(I)(A))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c) Non-Relevant payment taxable at 33% (S. 747D(a)(i)(II)(B))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d) Non-Relevant payment (personal portfolio) taxable at 53% (S. 747D(a)(i)(II)(A))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e) Gain taxable at 33% (S. 747E(1)(b)(ii))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f) Gain (personal portfolio) taxable at 53% (S. 747E(1)(b)(i))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And in respect of any such material interest acquired in 2012 give the following additional details:		
(g) Name & address of offshore fund(s)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012120 ANY PANEL(S) OR SECTION(S) THAT DO NOT REQUIRE AN ENTRY SHOULD BE LEFT BLANK.

PPS Number	Self	Spouse or Civil Partner
(h) Date material interest was acquired (DD/MM/YYYY)		
(i) Amount of capital invested in acquiring the material interest	00,000,000.00	00,000,000.00
(j) Name & address of intermediary (if any) through whom the material interest was acquired		
320. Other Offshore Products (S. 896). Give the following details for each material interest acquired in 2012 in (i) other offshore products (including foreign life assurance policies) outside the EU or EEA, or outside a Member State of the OECD with which Ireland has a Double Taxation Agreement and in (ii) 'unregulated funds' (those not coming within S.747B(2A)) within the EU or EEA, or within any Member State of the OECD with which Ireland has a Double Taxation Agreement		
(a) Name & address of offshore product(s)		
(b) Date material interest was acquired (DD/MM/YYYY)		
(c) Amount of payment made in acquiring the material interest	00,000,000.00	00,000,000.00
(d) Name & address of intermediary (if any) through whom the material interest was acquired		
321. (a) Additional Double Taxation Relief due	00,000,000.00	00,000,000.00
(b) Details of income sources on which Double Taxation Relief due		


F - INCOME FROM FEES, COVENANTS, DISTRIBUTIONS, etc. [401 - 409]

401. (a) Amount of Income from Fees, Commissions, etc.	00,000,000.00	00,000,000.00
(b) Description of Income		
402. Irish Untaxed Income		
(a) Irish Government Stocks	00,000,000.00	00,000,000.00
(b) Irish Exchequer Bills	00,000,000.00	00,000,000.00
(c) Irish Credit Union Dividends	00,000,000.00	00,000,000.00
(d) Other Loans and Investments arising in the State	00,000,000.00	00,000,000.00
403. Irish Deposit Interest		
(a) Gross Deposit Interest received on which DIRT was deducted		
(i) Taxable at 30%	00,000,000.00	00,000,000.00
(ii) Taxable at 33%	00,000,000.00	00,000,000.00
(b) Gross Interest received from Special Share Account(s)/Special Term Share Account(s)/Special Savings Account(s) on which DIRT was deducted	00,000,000.00	00,000,000.00
(c) Gross interest received where DIRT was not deducted by virtue of S. 256(1A) or S. 256(1B)	00,000,000.00	00,000,000.00
404. (a) Gross amount of Dividends from Irish Resident Companies (from which Dividend Withholding Tax was deducted)	00,000,000.00	00,000,000.00
(b) Gross amount of Dividends from Irish Resident Companies (from which Dividend Withholding Tax was not deducted)	00,000,000.00	00,000,000.00
405. Settlement, Covenant, Estate Income, Maintenance Payments, etc.		
(a) Gross amount received/receivable, where tax was not deducted	00,000,000.00	00,000,000.00
(b) Gross amount received/receivable, where tax was deducted	00,000,000.00	00,000,000.00

[부록 5-3] 아일랜드 신고서식(Form 8D)

Form 8D

Return of Third Party Information by Intermediaries in relation to Offshore Products



Tax Reference Number	<input style="width: 100%; height: 20px;" type="text"/>
Remember to quote this number in all correspondence or when calling at your Revenue office	Completed forms should be sent to the company's local Revenue office. If you are unsure of the correct return address use the Contact Locator on Revenue's website www.revenue.ie
Return Address:	Use any envelope and write "Freepost" above the address NO STAMP REQUIRED

**Read the explanatory notes on Page 4 before completing this form.
You can submit the return electronically in a spreadsheet format via Secure Email if you wish - see explanatory notes on page 4.**

Return by persons who act as intermediaries and provide Relevant Facilities in relation to Offshore Products

Notice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Sections 896 Taxes Consolidation Act 1997 as amended by Section 232 FA 2001, this return should be completed by:

- Companies for their accounting period and returned not later than nine months from the end of the accounting period,
- Persons other than companies for the year of assessment (1 January to 31 December) and returned not later than 31 October of the following year.

RELEVANT PERIOD: FROM / / (DD/MM/YYYY) TO / / (DD/MM/YYYY)

Where the accounts are normally made up to a date other than 31 December, the return may be made by reference to the date in the basis period to which the accounts are prepared.

YOU MUST SIGN THIS DECLARATION

I DECLARE tha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all the particulars given on this form are correctly stated.

Signature Date / / (DD/MM/YYYY)

Capacity of Signatory Telephone No.

Name of Intermediary

Business Address, if different from above

Tax Reference Number

RETURN BY PERSON(S) ACTING AS AN INTERMEDIARY FOR AN IRISH RESIDENT IN RESPECT OF WHOM "RELEVANT FACILITIES" IN RELATION TO OFFSHORE PRODUCTS WERE PROVIDED

Read the notes on page 4 before completing this form

COMPLETE IN BLOCK LETTERS - DETAILS IN RELATION TO THE PERSONS TO WHOM THE OFFSHORE PRODUCTS BELONG

Full Name of Irish Resident		
Permanent Address of Irish Resident		
PPS Number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Description of Relevant Facilities provided, e.g. an Offshore Product marketed in the state		
Date provided (DD/MM/YYY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Name of the Offshore Product		
Full Name and Permanent Address of the person who provided the Offshore Product		
Amount of payment made directly or indirectly by the person in respect of the Offshore Produc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0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0
Amount of payment made directly or indirectly to the person in respect of the Offshore Produc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0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0

Tax Reference Number

RETURN BY PERSON(S) ACTING AS AN INTERMEDIARY FOR AN IRISH RESIDENT IN RESPECT OF WHOM "RELEVANT FACILITIES" IN RELATION TO OFFSHORE PRODUCTS WERE PROVIDED

Read the notes on page 4 before completing this form

COMPLETE IN BLOCK LETTERS - DETAILS IN RELATION TO THE PERSONS TO WHOM THE OFFSHORE PRODUCTS BELONG

Full Name of Irish Resident		
Permanent Address of Irish Resident		
PPS Number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Description of Relevant Facilities provided, e.g. an Offshore Product marketed in the state		
Date provided (DD/MM/YYY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Name of the Offshore Product		
Full Name and Permanent Address of the person who provided the Offshore Product		
Amount of payment made directly or indirectly by the person in respect of the Offshore Produc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0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0
Amount of payment made directly or indirectly to the person in respect of the Offshore Produc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0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0

NOTES

Persons who should make this return

Any person carrying on a trade or business in the State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 operations of which that person acts as an intermediary in, or in connection with, the acquisition of a material interest in an Offshore Product.

Intermediary

An intermediary means any person carrying on in the State a trade or business in the course of operations of which that person provides relevant facilities.

Relevant Facilities

Relevant Facilities means:

- the marketing in the State of Offshore Products,
- the acting in the State as an intermediary in relation to the acquisition or disposal, in whole or in part, of Offshore Products by or on behalf of persons who are resident or ordinarily resident in the State, or
- the provision in the State of facilities for the making of payments from an Offshore Product to persons who are entitled to the Offshore Product, whether on the disposal, in whole or in part of the Offshore Product, or otherwise.

Offshore Product

An Offshore Product means:

- a material interest in an Offshore Fund, or
- a foreign life policy.

Offshore Fund

An Offshore Fund means a fund not within Section 747B(2A) TCA 1997:

- a company resident outside the State,
- a unit trust scheme the trustees of which are not resident in the State, and
- any arrangements, other than above, which take effect by virtue of the law of a territory outside the State and which, under that law, create rights in the nature of co-ownership.

Foreign Life Policy

Foreign Life Policy means a policy of assurance on the life of a person commenced outside the EU or EEA, or outside a Member State of the OECD with which Ireland has a Double Taxation Agreement:

- by a branch or agency (carrying on business in a State other than the State) of an assurance company, or
- by an assurance company (carrying on business in a State other than the State) other than by its branch or agency carrying on business in the State.

Secure Email Filing/Specifications

This return can be submitted via Secure Email. A spreadsheet template is available on Revenue's website

www.revenue.ie which can be submitted by Secure Email to **3rdPartyReturns@revenue.ie**.

See **www.revenue.ie/en/online/secure-email.html** for information on Secure Email.

Additional information is included on Revenue's website - see *Third Party Returns - A guide to the submission of returns in electronic form* at **www.revenue.ie/en/tax/it/third-party-return-forms.html** which provides technical specifications for the submission of returns in electronic format and via Secure Email.

Penalties

Where an Intermediary fails:

- for any chargeable period to make a return required to be made by the intermediary in accordance with Section 896(2) TCA 1997,
- to include in such a return for a chargeable period details of any person to whom the intermediary provided relevant facilities in the chargeable period, or
- to take reasonable care to confirm the details of the kind referred to in Section 896(2) TCA 1997, furnished to the intermediary by a person to whom the intermediary has provided relevant facilities in the chargeable period,

the intermediary shall in respect of each such failure be liable to a penalty of €4000.

Where a person:

- fails to furnish details of the kind referred to in Section 896(2) TCA 1997 to an intermediary who has provided the person with relevant facilities, or
- furnishes that intermediary with incorrect details of that kind,

the person shall be liable to a penalty of €4000.

NOTICE

En application de l'article 1649 A (2^e al.) du Code général des impôts, issu de la loi de finances pour 1990 (loi n° 89-935 du 29 décembre 1989), les particuliers, les associations et les sociétés n'ayant pas la forme commerciale sont tenus de déclarer, en même temps que leur déclaration de revenus ou de résultats, les références des **comptes** ouverts, utilisés ou clos à l'**étranger** au cours de l'année de déclaration (année *n*).

Une déclaration doit être souscrite **pour chacun** des comptes concernés.

PERSONNES TENUES D'EFFECTUER LA DÉCLARATION

La présente déclaration doit être souscrite par les personnes définies ci-dessous qui sont **domiciliées ou établies en France** :

- les particuliers : c'est-à-dire vous-même, l'un des membres de votre foyer fiscal ou une personne rattachée à votre foyer ;
- les associations, quel que soit leur régime juridique ou fiscal ;
- les sociétés n'ayant pas la forme commerciale, c'est-à-dire toutes les sociétés, autres que les sociétés anonymes (SA), à responsabilité limitée (SARL) et en commandite par actions (SCA).

La France s'entend de la métropole et des départements d'outre-mer (Guadeloupe, Martinique, Guyane et Réunion). Sont également soumises à cette obligation les personnes de nationalité française qui ont établi à Monaco leur résidence habituelle à compter du 14 octobre 1957.

La déclaration concerne tout compte ouvert, clôturé ou utilisé à l'étranger, pendant tout ou partie de l'année *n*, ou de l'exercice clos en *n* en qualité de titulaire ou de bénéficiaire d'une procuration lorsque ce dernier agit pour lui-même ou pour une personne ayant la qualité de résident.

Vous devez obligatoirement remplir les cadres 1 et 4 de la déclaration et, selon votre situation, le cadre 2 ou 3.

CADRE 1 : IDENTITÉ DU (OU DES) DÉCLARANT(S) (À servir dans tous les cas)

- **Identité** du déclarant : en principe, il n'y a qu'un déclarant. Il est fait exception à cette règle lorsque la déclaration est déposée par les époux d'un même foyer fiscal.

- **Qualité** : à remplir dans le cas où le déclarant agit pour le compte d'un membre de son foyer fiscal, d'une personne rattachée à ce foyer ou pour le compte d'un tiers **extérieur** au foyer fiscal en qualité de représentant légal d'une personne physique (tuteur, curateur, mandataire, etc.), d'une entreprise ou d'une personne morale (gérant, mandataire, administrateur, liquidateur, etc.).

CADRE 4 : NATURE DES COMPTES QUI DOIVENT ÊTRE DÉCLARÉS

Les comptes à déclarer sont ceux ouverts hors de France auprès d'un établissement bancaire ou de tout autre organisme, administration publique ou personne (notaire, agent de change, etc.) recevant habituellement en dépôt des valeurs mobilières, titres ou espèces.

La déclaration doit être souscrite pour chacun des comptes ouverts ou utilisés à l'étranger à compter du 1^{er} janvier *n*. On indiquera la désignation de l'établissement, le numéro de compte et ses caractéristiques : nature (compte ordinaire, épargne, à terme...), usage (utilisation à titre privé ou professionnel, à titre privé et professionnel), type (compte simple, compte joint entre époux ou compte collectif, c'est-à-dire ouvert au nom de plusieurs titulaires, compte de succession...) et adresse communiquée au gestionnaire du compte si elle est différente de celles indiquées au cadre 2 ou 3. Le compte sera également déclaré s'il a été clôturé après le 1^{er} janvier *n*.

Vous êtes titulaire d'un compte ouvert ou utilisé hors de France : vous devez remplir les rubriques prévues au cadre 2 (2.1 ou 2.2 selon le cas).

- Le cadre 2.1 est utilisé par les particuliers, l'un des membres de leur foyer fiscal ou personne rattachée à ce foyer qui n'agissent pas en qualité d'exploitants d'une activité donnant lieu à déclaration spécifique de résultats.

- Le cadre 2.2 est utilisé par les particuliers agissant en qualité d'exploitants d'une activité donnant lieu à déclaration spécifique de résultats (activité industrielle, commerciale, artisanale, agricole, non commerciale...) ainsi que par les associations et sociétés visées ci-dessus.

Vous bénéficiez d'une procuration sur un compte ouvert à l'étranger pour vous-même ou pour une personne ayant la qualité de résident : vous devez remplir les rubriques prévues au cadre 3 (3.1 ou 3.2 et 3.3 dans tous les cas).

À la rubrique 3.1 ou 3.2 doivent être mentionnées les indications relatives aux bénéficiaires de procuration.

- Le cadre 3.1 est utilisé par les particuliers ou l'un des membres de leur foyer fiscal ou une personne rattachée à leur foyer qui n'agissent pas en qualité d'exploitants d'une activité donnant lieu à déclaration spécifique de résultats.
- Le cadre 3.2 est utilisé par les particuliers agissant en qualité d'exploitants d'une activité donnant lieu à déclaration spécifique de résultats ainsi que par les associations et sociétés visées ci-dessus.

À la rubrique 3.3 doivent être mentionnées les indications relatives au(x) titulaire(s) du compte ouvert à l'étranger, qu'il(s) soit(en)t Français ou étranger(s).

Lorsque le cadre 2.2 ou 3.2 est utilisé, la forme juridique de l'entreprise doit être précisée selon les codes suivants :

01 Entreprise individuelle	02 Établissement d'une société étrangère	03 SNC	04 SCS	05 ASSOC
06 GIE	07 SCI	08 SCP	09 SCM	10 Autre.

DATE ET LIEU DE DÉPÔT DE LA DÉCLARATION

Pour les particuliers, qu'ils agissent ou non en qualité d'exploitants d'une activité donnant lieu à déclaration spécifique de résultats, la présente déclaration, **datée et signée par le (ou les) déclarant(s) et le (ou les) titulaire(s) du compte, membre(s) ou rattaché(s) au foyer fiscal**, doit être jointe à la déclaration de revenus n° 2042 (normale ou simplifiée) souscrite auprès du service des impôts des particuliers dont dépend leur domicile. Lorsque le déclarant agit pour le compte d'un tiers extérieur au foyer fiscal, la déclaration est déposée auprès du service des impôts des particuliers dont dépend ce tiers.

Pour les associations et sociétés n'ayant pas la forme commerciale, cette déclaration, **datée et signée par leur représentant légal**, doit être jointe à la déclaration de résultats souscrite auprès du service des impôts des entreprises dont dépend le lieu de l'activité, ou, selon le cas, le principal établissement ou le siège social.

Toute omission ou inexactitude dans l'accomplissement de vos obligations vous expose à deux types de sanction :

- Une amende de 1 500 € par compte non déclaré, portée à 10 000 € lorsque l'obligation déclarative concerne un Etat ou un territoire qui n'a pas conclu avec la France une convention d'assistance administrative en vue de lutter contre la fraude et l'évasion fiscales permettant l'accès aux renseignements bancaires. Si le total des soldes créditeurs du ou des comptes à l'étranger non déclarés est égal ou supérieur à 50 000 € au 31 décembre de l'année au titre de laquelle la déclaration devrait être faite, l'amende par compte non déclaré est égale à 5 % du solde créditeur sans pouvoir être inférieure, selon le cas, à 1 500 € ou 10 000 €.
- La possibilité de taxation des sommes, titres ou valeurs transférés par l'intermédiaire de comptes non déclarés, le montant des droits dus étant assorti d'une majoration de 40 %.

Les dispositions des articles 39 et 40 de la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modifiée par la loi n° 2004-801 du 6 août 2004, garantissent les droits des personnes physiques à l'égard des traitements des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세법연구 13-10
주요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

2013년 12월 23일 인쇄
2013년 12월 30일 발행

저 자 박명호 · 최정욱 · 정훈

발행인 옥동석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31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고려씨엔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ISBN 978-89-8191-710-4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